이 보고서 표지는 친환경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사보고서 2025-01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조사보고서 2025-01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제01차(2024년도) 부가조사 기초분석보고서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ISBN 978-89-6338-756-7(93330)

승인번호 제 322001 호 | 조사보고서 2025-01

청렴 채움 국민연금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제10차(2024년도) 부가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중·고령자의 복지태도 및 사회보장제도 인식수준

한신실, 홍정민, 박주혜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조사보고서 2025-01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제10차(2024년도) 부가조사 기초분석보고서

- 중·고령자의 복지태도 및 사회보장제도 인식수준 -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머 리 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22001호)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기초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인 고령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지난 2005년부터 중고령자의 가구 및 개인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제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추적 관찰하여 다양한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오고 있다. 이때 조사 모집단은 50대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50대 이상 가구원과 그 배우자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지난 제10차 본조사에서 전국의 50대 가구원이 있는 1,439가구와 그에 속한 50대 이상 가구원 및 그 배우자 2,548명을 신규 패널로 추가하여 총 5,331가구(개인일부성공 84가구 포함) 8,736명을 23통합표본으로 구축함으로써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번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0차 부가조사는 23통합표본 구축 뒤 처음으로 진행된 추적 조사로 23표본 기준 5,133가구, 8,340명이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표본 유지율은 가구 96.3%, 개인 95.5%이다.

본 보고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려는 연구자와 정책 당국 관계자들이 동 자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조사 과정 및 진행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투명하게 제시하고, 일련의 자료 정선 과정을 마친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 영역별 기본 정보를 제시하였다. 한편, 부가조사는 격년을 주기로 수행되는 본조사의 일정상 발생 가능한 패널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주목적을 두기 때문에, 본조사에 비해 조사 문항이나 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제공된다. 그럼에도 부가조사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본조사에서 조사가 미진한 영역이나 해당 시기에 정책적 관심사로 부상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제10차 부가조사에서는 중고령자 가구의 가계 경제 상태와 공적연금제도와 노후준비지원정책 등과 관련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통계청 고시 제2024-245호). 첫째, 가구에 대한 조사 내용은 가구원 전체의 인적사항과 가구 소득 및 지출, 자산, 주거환경,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등이다. 둘째, 중고령자 개인의 복지태도 및 노후생활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수급여부 및 만족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및 만족도, 노후준비실태 및 노후준비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등이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연구원 패널조사팀의 한신실 부연구위원 책임 하에 홍정민 주임연구원, 박주혜 주임연구원의 참여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실사 과정 전반과 자료 정선, 신규 표본 추출과 가중치 조정 등은 위탁을 통해 수행되었다. 성공리에 조사를 추진한 전문조사기관 입소스의 담당 연구진과 전국의 조사원들, 표본 설계 및 가중치 조정을 담당한 서울대학교 정상아 교수, 그리고 본 보고서 작성과정에 유익한 조언을 해 준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과 여러 전문가에게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원 자료를 정선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최초 베타버전(ver.10.0)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표용 데이터 버전(ver.10.2)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2025. 12.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 성 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한 정 림

목 차 | Contents

요 약 ····· 1

Ⅰ. 들어가며 ····· 9

Ⅱ.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0차 부가조사 개요 ····· 13

1. 조사 개요 ····· 13
   가. 조사 대상 ····· 13
   나. 자료 수집 ····· 17
2. 조사표 구성과 조사 항목 ····· 18
   가. 조사표 구조 및 조사 순서 ····· 18
   나. 조사항목 ····· 19
3. 조사결과: 23통합표본(新통합표본) ····· 27
   가. 응답 현황 ····· 29
   나. 23표본 중 제10차 부가조사 성공가구의 특성 ····· 33
   다. 23표본의 제10차 부가조사 성공 개인의 특성 ····· 35
   라. 횡단면 통합가중치 작성 결과 ····· 37
4. 자료 처리 및 정선 ····· 45
   가. 자료 정선 및 검증 ····· 45
   나. 최종 데이터셋 작성 ····· 47

Ⅲ. 가계 경제 및 사회복지제도 수급 현황 ····· 49

1. 가계 소득 ····· 49
2. 가계지출 ····· 58
3. 자산 및 부채 ····· 72

4. 사회복지관련제도 수급 여부 ····· 75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76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78
5. 기타 노인보건복지사업 ····· 82

Ⅳ. 복지 태도 및 노후준비실태 ····· 83

1. 복지 수준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 83
2. 노후 인식 및 준비 실태 ····· 96

Ⅴ.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 107

1. 공적연금 ····· 107
2. 기초연금 ····· 118

Ⅵ. 노인 일자리 사업 ····· 127

1. 노인일자리 사업 인지 수준 ····· 130
2.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실태 ····· 132
3.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의향 및 정년연장 찬성 여부 ····· 138

Ⅶ. 노후 준비 서비스 ····· 141

1. 노후준비서비스 인지 수준 ····· 143
2. 노후준비서비스 이용 실태 ····· 147
3. 향후, 노후준비서비스 이용 의사 ····· 155

Ⅷ. 부록. 13표본 및 05표본 조사 결과 ····· 157

1. 13표본(舊통합표본) ····· 157
가. 응답 현황 ····· 157
나. 13표본 중 제10차 부가조사 성공 가구의 특성 ····· 162

다. 13표본 중 제10차 부가조사 성공 개인의 특성 ····· 164
2. 05표본(원표본) ····· 166
가. 응답 현황 ····· 166
나. 05표본 중 제10차 부가조사 성공 가구의 특성 ····· 170
다. 05표본 중 제10차 부가조사 성공 개인의 특성 ····· 172

Ⅸ. 부록. 10차 부가조사 조사표 ····· 175

참고문헌 ····· 201

표차례

〈표 Ⅱ-1〉 조사대상 가구의 상황별 조사원칙 ····· 15
〈표 Ⅱ-2〉 조사대상 개인의 상황별 조사원칙 ····· 16
〈표 Ⅱ-3〉 10차 부가조사 조사대상 구축 현황 ····· 16
〈표 Ⅱ-4〉 조사표 구조 및 조사표별 적격응답자 ····· 18
〈표 Ⅱ-5〉 가구용 조사표 - 주요 조사 항목의 차수별 비교 ····· 21
〈표 Ⅱ-6〉 10차 부가조사 개인용 조사표 조사 항목 구성 ····· 25
〈표 Ⅱ-7〉 23표본의 가구 응답현황 ····· 30
〈표 Ⅱ-8〉 23표본의 지역별 원표본유지율 ····· 30
〈표 Ⅱ-9〉 23원표본 가구에 대한 조사 수행 결과 ····· 32
〈표 Ⅱ-10〉 23표본 개인의 응답현황 ····· 33
〈표 Ⅱ-11〉 23표본의 제10차 부가조사 성공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 특성 ····· 34
〈표 Ⅱ-12〉 조사 성공한 23표본 개인의 특성 ····· 36
〈표 Ⅱ-13〉 무응답 층 설정에 사용되는 변수 목록 ····· 38
〈표 Ⅱ-14〉 층별 통합 가구 무응답 보정 승수 ····· 39
〈표 Ⅱ-15〉 제10차 부가조사 가구 가중치 산출 결과 ····· 41
〈표 Ⅱ-16〉 제10차 부가조사 개인 가중치 산출 결과 ····· 44

〈표 Ⅲ-1〉 10차 본조사 기준 가계소득 조사항목과 측정내용 ····· 51
〈표 Ⅲ-2〉 가구 균등화 지수를 사용한 가구주 특성별 가계소득 ····· 55
〈표 Ⅲ-3〉 소득 세부항목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57
〈표 Ⅲ-4〉 소비지출의 측정내용 ····· 59
〈표 Ⅲ-5〉 비소비지출의 측정내용 ····· 62
〈표 Ⅲ-6〉 기타지출의 측정내용 ····· 62
〈표 Ⅲ-7〉 가구 균등화 지수를 사용한 가구주 특성별 가계지출 ····· 66
〈표 Ⅲ-8〉 지출 세부항목이 전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68
〈표 Ⅲ-9〉 가구 균등화 지수를 사용한 가구주 특성별 기타지출 ····· 69

〈표 Ⅲ-10〉 가구주 특성별 타인지출 ····· 70
〈표 Ⅲ-11〉 가구주 특성별 가계지출 및 타인지출 ····· 71
〈표 Ⅲ-12〉 자산 및 부채 측정내용 ····· 72
〈표 Ⅲ-13〉 가구 균등화 지수를 사용한 가구주 특성별 자산 및 부채, 순자산 보유액 ····· 74
〈표 Ⅲ-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 ····· 76
〈표 Ⅲ-1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 특성 ····· 77
〈표 Ⅲ-16〉 장기요양등급별 판정기준 및 인정 점수 ····· 78
〈표 Ⅲ-17〉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관련 ····· 79
〈표 Ⅲ-18〉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종류별 이용률 ····· 81
〈표 Ⅲ-19〉 노인보건복지사업 수급 또는 이용률 ····· 82

〈표 Ⅳ-1〉 현재 우리나라 노인 복지 수준 ····· 85
〈표 Ⅳ-2〉 노인 복지 수준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 축소되어야 할 부문(1순위) 87
〈표 Ⅳ-3〉 노인 복지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확대되어야 할 부문(1순위) 89
〈표 Ⅳ-4〉 노인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 ····· 91
〈표 Ⅳ-5〉 중고령자 복지서비스 재원 마련 방법 ····· 93
〈표 Ⅳ-6〉 조세 기반 중고령자 대상 복지 정책 방향 ····· 95
〈표 Ⅳ-7〉 조사대상자 특성별 주관적 노후시작 연령 ····· 97
〈표 Ⅳ-8〉 조사대상자 특성별 주관적 노후 시작 사건 ····· 99
〈표 Ⅳ-9〉 항목별 노후준비 수준 ····· 101
〈표 Ⅳ-10〉 노후 필요 생활비 계산 경험 여부 ····· 103
〈표 Ⅳ-11〉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 적정 생활비 ····· 105
〈표 Ⅳ-12〉 최소, 적정 생활비 지출항목별 배분 ····· 106

〈표 Ⅴ-1〉 공적연금 적용 상태 ····· 109
〈표 Ⅴ-2〉 공적연금 가입 종류 ····· 110
〈표 Ⅴ-3〉 공적연금 가입자의 수급 계획 ····· 111
〈표 Ⅴ-4〉 수급 시작연령 이전에 신청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 ····· 112
〈표 Ⅴ-5〉 공적연금 가입자의 특성별 예상 수급액 인지 여부 ····· 113

〈표 Ⅴ-6〉 공적연금 예상 수급액의 노후생활비 충족 정도 ····· 114
〈표 Ⅴ-7〉 공적연금 수급액의 노후생활비 충족 정도 ····· 115
〈표 Ⅴ-8〉 국민연금제도 관련 인지 여부 ····· 117
〈표 Ⅴ-9〉 기초연금 수급 여부 ····· 119
〈표 Ⅴ-10〉 기초연금 노후생활비 도움 정도 ····· 120
〈표 Ⅴ-11〉 기초연금 만족도 ····· 121
〈표 Ⅴ-12〉 기초연금 수급신청 경험 여부 ····· 122
〈표 Ⅴ-13〉 기초연금 비수급 이유 ····· 123
〈표 Ⅴ-14〉 기초연금 수급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 125

〈표 Ⅵ-1〉 노인 일자리 사업 내용 ····· 127
〈표 Ⅵ-2〉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여부 ····· 130
〈표 Ⅵ-3〉 노인일자리사업의 인지 경로 ····· 131
〈표 Ⅵ-4〉 노인일자리사업 신청 경험 ····· 132
〈표 Ⅵ-5〉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율 및 만족도 ····· 134
〈표 Ⅵ-6〉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 ····· 135
〈표 Ⅵ-7〉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 ····· 137
〈표 Ⅵ-8〉 신청 경험에 따른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사 ····· 139
〈표 Ⅵ-9〉 정년연장 찬성 여부 ····· 140

〈표 Ⅶ-1〉 노후준비서비스 인지 여부 ····· 144
〈표 Ⅶ-2〉 노후준비서비스의 인지 경로 ····· 146
〈표 Ⅶ-3〉 노후준비서비스 이용 경험 ····· 147
〈표 Ⅶ-4〉 노후준비서비스 참여율 및 만족도 ····· 151
〈표 Ⅶ-5〉 추가로 이용하고 싶은 노후준비서비스 - 1순위 ····· 152
〈표 Ⅶ-6〉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 154
〈표 Ⅶ-7〉 이용 경험에 따른 향후 노후준비서비스 이용 의사 ····· 156

〈표 Ⅷ-1〉 13표본의 가구 응답현황 ····· 157
〈표 Ⅷ-2〉 13표본의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 160
〈표 Ⅷ-3〉 13원표본 가구에 대한 조사 수행 결과 ····· 161

〈표 Ⅷ-4〉 13표본 개인의 응답현황 ····· 162
〈표 Ⅷ-5〉 13표본 제10차 부가조사 성공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 특성 ····· 163
〈표 Ⅷ-6〉 13표본 제10차 부가조사 성공 개인의 특성 ····· 165
〈표 Ⅷ-7〉 05표본 가구 응답현황 ····· 166
〈표 Ⅷ-8〉 05표본의 지역별 원표본유지율 ····· 168
〈표 Ⅷ-9〉 05원표본 가구에 대한 조사 수행 결과 ····· 169
〈표 Ⅷ-10〉 05표본 개인의 응답현황 ····· 169
〈표 Ⅷ-11〉 05표본 제10차 부가조사 성공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 특성 ····· 171
〈표 Ⅷ-12〉 05표본 제10차 부가조사 성공 개인의 특성 ····· 172

그림차례

[그림 Ⅱ-1]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표본별 개요 ····· 28
[그림 Ⅱ-2]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 정선 과정 ····· 45

[그림 Ⅲ-1] 가계소득 및 저축(Hd) 영역 문항 순서도 ····· 53
[그림 Ⅲ-2] 가계지출(Hc) 영역 문항 순서도 ····· 64
[그림 Ⅲ-3] 자산 및 부채(He) 영역 문항 순서도 ····· 73
[그림 Ⅲ-4] 사회복지관련제도(Hf) 영역 문항 순서도 ····· 75

[그림 Ⅳ-1] 복지 수준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영역 문항 순서도 ····· 84
[그림 Ⅳ-2] 노후생활비 영역 문항 순서도 ····· 96

[그림 Ⅴ-1] 공적연금 등 공적연금 영역(Ab) 문항 순서도 ····· 108
[그림 Ⅴ-2] 기초연금 영역(Ac) 문항 순서도 ····· 118

[그림 Ⅵ-1] 노인 일자리 사업 영역 문항 순서도 ····· 129

[그림 Ⅶ-1] 노후 준비 서비스 영역 문항 순서도 ····· 142

[그림 Ⅷ-1] 13표본 원표본가구 응답추이 ····· 159
[그림 Ⅷ-2] 05표본 원표본가구 응답추이 ····· 167

요 약

Ⅰ. 서론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는 중고령자들의 소득 수준 및 노후소득 보장제도 관련 기초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도입함.

○ 제10차 부가조사에서는 본조사에서만 실시하던 가구용, 직업력, 연금력 조사를 추가하였으며, 개인용 조사 또한 대폭 개편함.

- 10차 부가조사부터는 가구의 가계상태, 개인의 직업 변화 및 공적연금 적용상태의 변화를 매해 추적 관찰하기 위하여 가구용·직업력·연금력 조사표를 포함하고,
- 개인용 조사표에 복지 태도 및 노후생활비,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 여부 및 만족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및 만족도, 노후준비서비스 참여 여부 등 만족도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추가함.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0차 부가조사를 통한 기대효과

- 부가조사에서도 가계 경제 상황을 조사함으로써, 가구 단위 주요 항목에 대한 시계열 연속성이 확보되어,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평가 및 연구가 가능해짐.
- 또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장기요양보험, 노후준비 실태 등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실천적인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 중장기적 고령화 대응 및 복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Ⅱ.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0차 부가조사 개요

○ (조사대상) 50세 이상 중고령자와 그 배우자 및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속한 가구로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

- (조사방법) 전문조사원의 가구 방문 면접조사, 종이 조사표를 활용한 조사법(PAPI), 태블릿 PC를 이용한 대인 면접 조사법(TAPI)
- (조사기간) 2024년 6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18주간 실시

○ (조사항목) 가구용, 개인용, 직업력, 연금력 조사표로 구성

- (가구용) 가구원의 인적사항과 가구 공통 사항인 주거 현황, 가구 지출, 가구 소득 및 저축, 가구 자산 및 부채, 사회복지제도 관련 실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 구성
- (개인용) 복지 태도 및 노후준비 실태,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노후 준비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 구성

○ (조사 결과) 23통합표본 기준, 조사 성공 가구는 5,138가구(원표본 5,133가구, 신규 5가구)로 원표본 유지율은 96.3%, 조사 성공 개인은 8,394명(원표본 8,340명, 신규 54명)으로 원표본 유지율은 95.5%임.

- (유효성공률) 원표본에서 사망이나 이민, 장기요양시설 입소 등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게 된 부적격사례를 제외한 유효원표본 대비 조상성공률의 경우, 가구는 96.3%, 개인은 95.5%임.

Ⅲ. 가계 경제 및 사회복지제도 수급 현황

○ (가계 소득) 2023년 한 해 중고령자 가구의 월평균 가구 균등화 총소득은 249.9만원임.

- (원천별 비중) 근로소득 48.2%, 사업소득 31.1%, 재산소득 4.1%, 공적이전소득 13.1%, 사적이전소득 3.2%, 비경상소득 0.3%로 구성

○ (가계 지출) 월평균 가구균등화 총지출은 180.5만원임.
- (원천별 비중) 소비지출은 77.1%, 비소비지출은 22.9%로 구성

○ (자산 및 부채) 중고령자 가구의 순자산 평균은 2억 6,950.1만원이며, 총자산은 평균 2억 8,949.1만원, 부채는 평균 1,999.0만원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원 중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있는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5.1%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등급별 분포는 4등급(57.7%), 3등급(19.5%), 5등급(10.8%) 순이며, 평균 이용개월은 11.4개월임.
- (서비스 이용률) 방문요양(59.7%), 방문목욕(14.4%), 주야간보호(10.6%) 순임.

Ⅳ. 복지 태도 및 노후준비 실태

○ (복지 수준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현재 우리나라 노인 복지 수준이 적당하다는 74.6%. 확대 필요는 21.8%, 축소 필요는 3.6%로 조사됨.
- (축소가 필요한 경우, 축소되어야 할 부문) 노인 빈곤 완화 지원(기초연금 등)(23.7%), 노인 고용/일자리 지원(20.5%), 노후 여가문화 서비스(13.6%) 순임.
- (확대가 필요한 경우, 확대되어야 할 부문) 노인 빈곤 완화 지원(기초연금 등)(29.4%), 노인 고용/일자리 지원(17.9%), 노인 건강서비스(13.5%) 순이었으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은 찬성(대체로 찬성 + 찬성 + 매우찬성)한다는 의견이 66.5%임.

○ (중고령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재원 마련 방법)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43.1%),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19.4%), 모든 기업이 세금 등을 내서(15.0%) 순임.

○ (조세 기반 복지 정책 방향)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되, 저소득층/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56.5%),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제공(33.5%), 선별적으로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만 집중해서 제공(10.1%) 순임.

○ (주관적 노후 시작 연령) 50세 이상 중고령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후 시작 연령은 평균 68.5세임.

-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후시작 사건은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50.1%), 근로 활동을 중단하는 시기(26.7%) 순으로 조사됨.

○ (항목별 노후준비 수준) 전체 노후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2.7점이며, 영역별로는 건강 57.4점, 대인관계 55.8점, 재무 49.7점, 여가활동 47.9점의 순으로 노후 준비 수준이 상이함.

○ (월평균 노후 필요 생활비)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부부기준 216.6만원, 개인기준 139.2만원이고,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부부기준 298.1만원, 개인기준 197.6만원임.

- (최소 및 적정 노후생활비 지출항목별 배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최저생활비 24.2%, 적정생활비 24.7%), 사회보험료(최저생활비 10.6%, 적정 생활비 8.2%), 주택·수도·전기·가스 및 기타 연료(최저생활비 7.1%, 적정 생활비 6.9%) 순으로 나타남.

Ⅴ.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 (공적연금 적용상태)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53.9%(가입하면서 수급 중 0.2% 포함), 수급 중은 9.3%,

비해당(적용제외)은 36.8% 임.

○ (공적연금 가입자 수급 계획) 수급개시 연령부터 급여를 수급할 계획은 49.9%, 수급개시 연령 이후에 받을 계획은 18.0%, 수급개시 연령 이전에 받을 계획은 17.5%, 공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14.6%임.

○ (공적연금 예상 수급액 인지 여부) 공적연금 가입자 중 86.6%는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인지하지 못함.

- (예상 수급액 노후생활비 충족 정도)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알고 있는 경우, 월평균 예상금액은 85.0만원이며, 이는 최소 및 적정 노후생활비의 2.24~2.54점 수준(5점 만점 기준)을 충족한다고 응답함.

○ (공적연금 수급액 노후생활비 충족 정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평균 연금액은 67.3만원, 이에 대한 만족도(5점 만점)는 3.58점, 최소 및 노후생활비의 2.71~2.92점 수준을 충족(5점 만점 기준)한다고 응답함.

○ (국민연금제도 관련 인지 여부) 국민연금의 강제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중고령자는 66.0%,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62.7%, 국민연금 급여의 실질가치보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66.1%, 조기노령연금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63.9%,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65.2%임.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수급률은 72.5%임.

- (노후생활비 도움 정도) 77.1%(도움이 되는 편 63.4%, 매우 도움이 됨 13.7%)로 조사됨.
- (만족도) 수급자의 63.7%(만족함 56.8%, 매우 만족함 6.9%)가 만족하고 있음.

- (수급신청 여부) 응답자의 15.8%는 신청이 수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 84.2%는 수급신청 경험이 없음.

Ⅵ. 노인 일자리 사업

○ (노인 일자리 사업 인지 수준) 65세 이상 중고령자 중 80.6%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인지 경로) 이웃이나 친구 등을 통해 45.7%,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24.1%, 주민센터 직원이나 복지기관을 통해 16.6% 등임.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 65세 이상 중고령자 중 15.5%가 신청 경험이 있음.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 및 만족도) 참여율은 공공형 42.7%, 민간형 5.3%, 사회서비스형 5.1% 순이며, 만족도는 공공형 3.9점, 사회서비스형 4.2점, 민간형 3.6점 순임.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의사) 한번 이라도 신청 경험이 있는 중고령자의 75.5%는 참여 의사가 응답한 반면, 신청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2.9%만이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정년연장) 전체 중고령자의 66.0%가 정년연장에 찬성하였으며, 이 때 희망하는 정년연령은 평균 66.3세임.

Ⅶ. 노후 준비서비스

○ (노후 준비서비스 인지 수준) 전체 중고령자 중 39.1%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인지 경로)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41.7%, 이웃이나 친구 등을 통해 19.5%, 주민센터 직원이나 복지기관을 통해 11.1% 등임.

○ (노후 준비서비스 참여 경험)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1.6%만이 이용한 경험이 있음.

- (노후 준비서비스 참여율 및 만족도) 참여율은 상담 31.6%, 온라인 진단 30.0%, 오프라인 진단 23.3%, 교육 17.8%, 사후관리 14.7%, 관계기관 연계 14.2% 순이며, 만족도는 상담 3.85점, 사후관리 3.82점, 온라인 진단 3.81점, 관계기관 연계 3.67점, 교육 3.55점, 오프라인 진단 3.39점 순임.

○ (노후 준비 서비스 참여 의사) 한번 이라도 신청 경험이 있는 중고령자의 79.4%는 참여 의사가 응답한 반면, 신청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7.5%만이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일러두기]

본 보고서의 결과는 조사 자료에 23표본 횡단가중치(통합 가중치, 가구용 23표본 횡단가중치 변수명 : w24hwt, 개인용 23표본 횡단가중치 변수명 : w24pwt)를 적용하여 분석한 수치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23표본 횡단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는 조사 시점의 가구분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23표본 구축 시점의 분포를 반영하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또한, 50세 미만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본의 대표성이 저하되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그 외 본 보고서에 제시되지 않은 조사 결과에 대한 변수에 대한 빈도 분포는 코드북을 참고하기 바람.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조사항목 및 측정의 기준이 타 조사의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단순한 비교는 금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측정 기준이나 측정항목에 대한 설명은 유저가이드를 참조할 것.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원 자료를 정선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최초 베타버전(ver.10.0)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표용 데이터 버전(ver.10.2)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Ⅰ. 들어가며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이하 'KReIS')』는 한국사회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기초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인 고령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지난 2005년부터 중고령자의 가구 및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추적 관찰함으로써, 이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제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때 조사 대상은 전국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목표 모집단[1]으로 하며, 해당 가구에 속한 가구원 중 50세 이상 가구원과 그 배우자[2]이다.

KReIS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표적 집단으로 조명될 중고령자 패널을 절대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KReIS는 표본의 대표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50대 이상'이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패널을 관리하는 표본 설계상 조사 차수가 누적됨에 따라 특정 연령 구간의 패널이 소실되면서 대표성이 훼손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한다. 이에 지난 2023년 제10차 본조사에서 50대 가구원이 있는 1,439가구를 신규 패널로 구축하여 23통합표본(이후, 23표본)을 구축하였다.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추적 조사인 제10차 부가조사는 23표본 5,331가구, 8,736명이 포함한 총 6,830가구 11,5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하였다. 조사 결과, 제10차 부가조사에서는 23표본을 기준으로 5,133가구, 8,340명이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23표본 기준 표본 유지율은 가구 96.3%, 개인 95.5%이다.[3]

---

1) 국민노후보장패널 표본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2) KReIS는 부부 중 1인이 5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5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조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KReIS는 한국 사회 중고령자에 대한 정확하고 관련성 높은 통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사 설계상 홀수년도에는 본조사를, 짝수년도에는 부가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조사와 부가조사의 측정 문항이 상이하다. 본조사의 경우,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 및 저축, 지출, 자산 및 부채, 사회복지 관련 제도 수급현황과 중고령자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 양태 및 공적연금 수급 실태, 그리고 노후준비 관련 상태 등의 정보를 세밀하게 조사한다.[4] 이에 반해, 부가조사는 격년을 주기로 수행되는 본조사의 일정상 발생 가능한 패널 이탈을 최소화하는 데 주목적을 둔다. 이 때문에 부가조사는 본조사에 비해 조사 문항이나 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진행된다. 그럼에도 부가조사의 활용도를 최대화하고자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본조사에서 조사가 미진한 영역이나 해당 시기에 정책적 관심사로 부상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KReIS의 관련성[5]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6]

제10차 부가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부가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중고령자의 가계 상태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이라는 KReIS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조사표 구성 및 조사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다.[7] 이와

3) 제10차 부가조사에서 조사에 성공한 총 표본은 5,136가구, 8,505명이다.
4) 본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한신실 외(2024)를 참고하면 된다.
5) 관련성(Relevance)은 해당 통계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현재 및 잠재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통계 품질이다(통계청, 2022).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신실 외(2023)을 참고하면 된다.
6) 부가조사의 차수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1차(2006년) 부가조사에서는 본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50대 가구주 가구의 가계지출 및 소득 현황”을 조사하였고, 2차(2008년)에서는 “중고령자의 만 15세 이후 일자리 변동이력과 공적연금 가입·수급 이력”을 추가하여 가구, 개인, 직업력 등으로 구성된 현행 본조사 문항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에는 해당 시점에 정책적 관심도가 높았던 “노후준비 실태와 기대(3차, 2010년)”, “성공적 노후와 노인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용실태(4차, 2012년)”, “일상적 스트레스와 대처전략(5차, 2014년)” 등의 영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으로 노후준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6차(2016년) 부가조사부터 7차(2018년), 8차(2020년), 9차(2022년) 부가조사까지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실태와 관련하여 여가·대인관계·건강 등 비재무 영역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수행하였다. 차수별 부가조사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유저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통계 승인 사항 변동(통계청 고시 제2024-245호)을 통해 공시되었으며 관련된 주요 내용과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용 조사표 추가이다. KReIS는 제9차 부가조사까지 가구용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개인용 조사만 수행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수행한 국가승인 통계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본조사에서만 소득 및 이전 지출, 자산 및 부채 등과 같은 주요 항목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점이 자료 활용의 제약요건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해당 항목을 매해 조사함으로써 주요 항목을 연속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가계 경제 상태에 대한 주요 항목 정보를 시계열 단절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가구용 조사표를 추가하였다. 둘째, 개인용 조사표 변경이다. 10차 부가조사에서는 국민연금을 위시한 공적연금제도와 노후준비지원 정책 등과 관련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KReIS 이용자 및 관련 정책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을 설계하였다. 조사 영역은 복지태도 및 노후생활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수급여부 및 만족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및 만족도, 노후준비 실태 및 노후준비서비스 수급 경험 및 만족도 등이다.

본 보고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노후준비서비스 등과 관련된 정책입안자 및 행정부처 관계자, 국민연금공단 실무자, 그리고 KReIS 10차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10차 부가조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 내용 및 조사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영역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KReIS에서 중점을 두는 중고령자의 가계 경제

7) 6차부터 9차까지 반복해서 추적 조사해 온 여가활동이나 대인관계, 건강 등 노후준비 관련 비재무 영역의 경우, 패널조사로서 자료 구축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표 문항에 대해서는 11차 본조사에 통합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상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10차 부가조사에서 방점을 두고 다룬 노후 소득보장제도 및 장기요양보험, 노후준비 실태 등과 관련하여 보다 정책적으로 시의성 높고,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갖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KReIS 부가조사에 대한 기본 개요 및 실사, 자료처리 및 정선 과정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조사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사에 성공한 23패널을 중심으로 기술 통계 분석 결과와 가중치 산출 결과를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조사 대상 가구의 가계 경제 상태와 사회복지제도 수급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4장부터 7장까지는 조사 영역별 분석 결과를 중고령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활동 참여 상태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즉, 4장의 복지 태도 및 노후생활비, 5장의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6장의 노인 일자리 사업, 7장의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23통합표본 종단 가중치, 그리고 05표본과 13표본 종단 가중치 산출 과정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으며[8], 그리고 조사에 성공한 05표본 및 13표본의 표본 유지율 관련 현황 및 성공 가구 및 개인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다.

8) KReIS는 중고령자, 즉 50대 이상 가구원이 속한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고, 그 가구에 속한 50대 가구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가 이들 모집단의 상태를 적확히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조사 결과의 일반화를 담보하기 위한 가중치 변수를 직접 산출하여 조사 자료와 함께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Ⅱ.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0차 부가조사 개요

본 장은 KReIS 이용자에게 제10차 부가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KReIS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확한 활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통계 작성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소개하고, 다음으로 제10차 부가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횡단면 가중치가 제공되는 23통합표본을 기준으로 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중치 변수 산출 과정 및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1. 조사 개요

가. 조사 대상

제10차 부가조사의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표본 가구와 개인으로, 2005년과 2013년, 2023년도에 진행된 표본 구축 과정에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패널로 선정 및 조사가 완료된 가구와 개인이다. 이때 개인은 표본 구축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 시점에 만 50세 이상 개인 및 그 배우자이다. 둘째, 신규 표본으로 가구는 원표본 가구에서 분가한 것으로 파악된 가구이며, 개인은 원표본 또는 신규표본 가구에 소속된 비조사 대상 가구원 중 본인 또는 배우자의 연령이 만 50세에 도달한 개인,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하여 신규 가구를 형성하였을 경우 배우자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비조사대상이 해당한다. 즉, 조사 년도(2024년) 기준 만 50세 가 된 1973년 출생자와 그 배우자이다.

KReIS는 원표본 유지가 가장 중요한 패널조사로 지난 조사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매해 조사대상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도한다. 다만,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추적해서 조사를

이어나갈 것인지, 조사를 중단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자의 경우는 대개 분가나 합가 등의 사유로 신규 조사 대상이 발생한 사례이고, 후자의 경우는 개인조사대상자의 사망, 이민, 장기요양시설 입소 등 더 이상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조사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사례이다. 이때, 조사부적격 사유는 그 발생시점과 정보수집원천 등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 및 조사대상에서 소멸 처리 되는 조사부적격 가구 또는 개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시점 현재 가구 내 개인 조사 대상자가 모두 사망이나 이민, 장기수용시설 입소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며 나머지 가구원이 부재한 가구이다. 둘째, 조사 시점 현재 개인 조사 대상자가 부재한 가구 중 나머지 가구원이 모두 미성년자인 가구이다.[9] 셋째, 개인 조사대상 중 조사부적격 기준은 사망, 이민, 장기수용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향후 조사가 지속해서 불가능할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가구의 상황별 조사 원칙을 정리하면 〈표 Ⅱ-1〉과 같다. 먼저, 원가구에서 원표본 개인 조사대상자가 분가한 경우, 원가구에 남아 있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원가구의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분가가구는 신규표본으로서 가구와 개인을 모두 추적하여 조사한다. 다음으로 원가구에서 분가한 원표본 개인조사대상자가 재차 분가한 경우, 기존 분가가구에 남아 있는 가구원 중 원표본 개인조사대상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존 분가가구의 추적 조사 및 가구 소멸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재분가가구는 가구와 개인을 모두 추적하여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조사대상자가 사망, 이민, 장기수용시설 입소 등 조사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은 가구원의 상태에 따라 추적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9) 조사대상 가구의 개인조사대상자가 모두 소멸처리 대상이라 하더라도 남은 가구원에 성년이 포함된 경우, 가구는 소멸처리하지 않고 가구원 인적사항표만 작성한다. 그리고 남은 가구원의 연령이 만 50세에 도달하여 개인조사대상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조사대상으로 관리한다.

〈표 Ⅱ-1〉 조사대상 가구의 상황별 조사원칙

조사 상황	가구 상태	조사대상	가구구분	조사원칙
원표본 개인 조사 대상자가 원가구에서 분가	원가구에 개인조사대상자(원표본) 있음	원가구	원표본	추적 조사
		분가가구	신규표본	추적 조사
	원가구에 만50세 미만의 가구원(원표본)만 있음	원가구	원표본	추적 조사
		분가가구	신규표본	추적 조사
	원가구에 미성년자 가구원(원표본)만 남음	원가구	원표본	소멸 처리
		분가가구	신규표본	추적 조사
원표본개인조사 대상자가 분가가구에서 재분가	기존분가가구에 개인조사대상자(원표본) 있음	기존분가가구	신규표본	추적 조사
		재분가가구	신규표본	추적 조사
	기존분가가구에 개인조사대상자(원표본) 없음	기존분가가구	신규표본	소멸 처리
		재분가가구	신규표본	추적 조사
개인조사대상자의 사망, 이민, 장기수용시설 입소	남은 가구원 중 개인조사대상자(원표본) 있음	전체가구	원표본 신규표본	추적 조사
	남은 가구원 중 개인조사대상자(원표본) 없고 미성년이 아닌 경우	전체가구	원표본 신규표본	추적 조사
	남은 가구원이 모두 미성년인 경우	전체가구	전체표본	소멸 처리
	남은 가구원이 없는 경우	전체가구	전체표본	소멸 처리

다음으로 조사대상자 개인과 관계된 상황별 조사 원칙을 정리하면 〈표 Ⅱ-2〉와 같다. 조사대상 가구 방문시 개인조사대상자가 아니었으나 합가나 혼인 등의 사유로 전입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기준 연령 도달 등의 사유가 발생한 비조사대상 가구원이 확인된 경우이다.

〈표 Ⅱ-2〉 조사대상 개인의 상황별 조사원칙

개인 상황	조사원칙
• 기존 조사 이후 전입한 가구원 중 만5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만5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와 함께 개인조사 진행
• 지난 조사에는 개인조사대상이 아니었으나, 금번 조사 당시 만50세 이상이 된 경우	• 배우자와 함께 개인조사 진행
• 기존 조사에서 만50세가 되지 않았으나 배우자로 인해 개인조사를 시행하였음. 현재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남은 배우자는 만50세 미만임	• 1번이라도 개인조사대상자가 된 자는 계속 개인조사 진행
• 기존 조사 이후 개인조사대상자와 혼인하여 전입한 50세 미만인 배우자	• 개인조사 진행

이러한 준거 기준을 통해 선정된 제10차 부가조사의 조사대상은 총 6,830가구, 11,512명이다(〈표 Ⅱ-3〉 참조). 6,830가구 중 원표본은 6,790가구이며, 신규표본은 40가구이고, 11,512명 중 원표본은 11,457명, 신규표본은 55명이다. 이중 23표본은 5,331가구 8,873명이다. 이외에도 10차 부가조사 실사 과정에서 분가가 확인된 원표본 가구원은 신규 가구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10차 부가조사 시점 당시 만 50세 이상 가구원 및 그 배우자와 지난 조사 이후로 전입한 만 50세 이상 가구원 및 그 배우자는 신규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표 Ⅱ-3〉 10차 부가조사 조사대상 구축 현황

(단위: 가구, 명, %, 조사 시작 시점 기준)

구분	가구			개인		
	합계	원표본	신규표본	합계	원표본	신규표본
조사대상	6,830	6,790	40	11,512	11,457	55
(비중)	(100.0)	(99.4)	(0.6)	(100.0)	(99.5)	(0.5)

나. 자료 수집

국민연금연구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외부 전문 조사업체(이하,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수행하고 있다. 이때 업체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실사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선정된다.[10] 위탁 업무는 조사원 교육 및 조사 준비부터 현장조사, 해피콜 등 실사 전반과 1차 자료 정선 등으로 일련의 과정은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었다.

KReIS는 사전 접촉 작업을 통해 연락처 및 조사 가능 여부가 확인된 조사대상가구에 조사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수행하는 면접타계식 조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KReIS는 부가조사에서 '종이조사표를 활용한 조사법(Paper And Pencil Interviewing; 이하, PAPI)'과 '태블릿 PC를 이용한 대인 면접 조사법(Tablet-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PAPI는 직업력과 연금력 등 조사대상자가 응답하기 어렵거나 기존의 응답을 토대로 변경된 정보를 회고해야 하는 경우에 활용한다. TAPI는 기존 응답 정보가 현재 조사해야 하는 문항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또는 타 문항과 논리적 연계가 없는 문항에 한해 활용하였으며, 부가조사에서는 가구용 조사표와 개인용 조사표에 활용하였다.

현장조사는 전체 6,830가구를 대상으로 총 116명의 조사원이 투입되어 2024년 6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18주간 진행되었다. 지난 10차 본조사를 기준으로 동일 조사원에게 동일 패널가구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사원당 평균 59.1가구가 배정되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 성공 가구당 평균 방문 횟수는 1.3회였으며, 최초 방문 시 거절이나 부재로 조사 미성공 가구 중 최종 성공가구는 평균 2.5회 재방문하였다. 조사에

10) 제10차 부가조사의 위탁 업체는 입소스주식회사(이하, 입소스)가 선정되었다.

성공한 가구의 방문 횟수는 1회 방문 81.5%, 2회 방문 10.2%, 3회 방문 6.6%, 4회 방문 1.2%, 5회 방문 0.5%였다.

2. 조사표 구성과 조사 항목

가. 조사표 구조 및 조사 순서

KReIS 10차 부가조사 조사표는 가구용과 개인용, 연금력 및 직업력 조사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사표의 적격응답자는 〈표 Ⅱ-4〉와 같다. 첫째, 가구용 조사표는 가구주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구주가 경제 상황에 잘 모르거나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 가구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구주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가 아닌 가구원이 작성할 수 있다. 둘째, 개인용 조사표는 개인조사대상자 전원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직업력 및 연금력 조사표도 개인용 조사표와 마찬가지로 개인조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10차 본조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용 및 직업력의 경우 본조사에서만 조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직업력과 연금력은 생애 이력에 대한 정보를 추적 조사 및 누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고 응답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정확성 측면에서 직업력과 연금력을 매년 조사 및 관리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10차 부가조사부터 조사하도록 변경하였다.

〈표 Ⅱ-4〉 조사표 구조 및 조사표별 적격응답자

조사표 구분	적격 응답자
가구용	• 가구주. • 단, 가구주가 가계 상황을 잘 모르거나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가구의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구원
개인용·직업력·연금력	• 개인조사대상자 전원

나. 조사항목

1) 가구용 조사표 차수별 조사 항목 구성

KReIS는 패널조사로서 동일 변수에 대해 추적 관찰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 분류 기준의 제·개정과 통계 이용자의 요구사항,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제도 변화 등으로 인해 일부 문항이 추가되거나 수정 및 삭제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차수별 조사 항목이 일부 상이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보 제공은 KReIS 이용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지원 사항이다. 이에 차수별 변동 사항을 10차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때 가장 주목할 사항으로는 9차년도 까지는 매 본조사에만 가구용 조사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10차 년도부터는 본조사와 부가조사 모두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0차 본조사와 부가조사의 가구용 조사표의 변동 사항은 없다.

먼저, 가구용 조사표의 차수별 주요 조사 항목은 〈표 Ⅱ-5〉와 같다(한신실 외, 2024). KReIS는 제10차 부가조사를 포함하여 총 11번의 가구용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조사 항목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제5차 본조사 이후에 대한 정보만 제공한다.[11]

첫째, 가구 및 가구원 정보 영역(Ha)의 경우, 거의 모든 항목이 5차 이후 지속해서 조사되어 왔다. 다만, 종교 유형에 대한 정보는 5차 본조사에서 조사한 뒤, 5차부터 9차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다가 10차 본조사부터 조사를 재개하였다. 조사를 재개한 배경은 종교 유형에 따라 가구의 소비 행태 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같은 비소비 지출 항목과 여가 활동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12]

---

11) 제1차부터 제4차 본조사의 차수별 주요 조사 항목에 대한 정보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유저가이드(Ver.10.1)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홈페이지(http://www.kr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지난 10차 본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사원, 조사업체 담당연구진, 에디터 등

둘째, 주거 현황 영역(Hb)에서는 기존까지 거주 주택의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에만 조사하던 주택 면적에 대한 문항을 모든 조사대상 가구에게 질문하도록 하였다. 노후에 거주하는 주택의 크기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 KReIS 1차부터 9차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구의 자가 외의 전세, 월세 등 거주 주택 점유형태가 전체의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중고령자가 전세 및 월세 등의 형식으로 거주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의 면적에 대한 정보를 특정 점유형태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은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셋째, 가구 지출 영역(Hc)의 경우, 가계수지항목분류를 준용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식비와 보건의료비, 교육비, 기타 비소비지출 등 문항이 병합되거나 조사 내용이 조정되었다. 식비의 경우, 9차까지는 식비 변수에 외식비를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나, 10차부터는 가구 내부에서 소비하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지출과 가구 외부의 음식비로 세분화 하였다. 보건 의료비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의 응답 난이도를 낮추고자 10차부터 입원치료비와 통원 치료 및 의약·의료용품 및 관련 보조용품 비용으로 이분화 하였다. 보육비의 경우, 9차까지는 교육비에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나, 10차부터는 기타 상품 및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도록 조정하였다. 기타비소비지출의 경우, 10차부터 조세관련 지출과 대출이자상환,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이전지출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10차부터 자산축적 또는 구입을 위해 지출한 현금 및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 등 기타지출 항목을 추가하였다.

넷째, 가구 소득 영역(Hd)은 2023년 개정된 가계수지항목분류를 준용하도록 문항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 차수(5-9차)와 비교할 때

조사수행체계 주요 행위자와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가령, 헌금이나 시주 등의 비영리단체 이전 지출, 종교행사 참여와 같은 여가활동 등에서 관찰 가능한 종교에 따른 차이가 해당한다.

10차 본·부가 조사의 문항은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기타수입 등을 세분화하거나 병합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9차와 10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재산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을 이자 및 배당소득과 개인 및 퇴직연금 소득으로 세분화하였다.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비영리단체 이전소득, 기타이전소득을 개별 항목으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가계수지항목분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산변동 수입과 부채증가 수입, 자산이전 수입 등 기타 수입 항목에 대한 문항을 추가 하였다. KReIS는 조사 문항을 세분화한 경우에는 기존 차수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금융소득, 사적이전소득을 생성변수로 작성하여 제공한다.

다섯째, 가구자산 및 부채 영역(He)도 최근 중고령자 가구의 금융자산이 다양화되는 경향을 고려하여, 각 금융자산군별 보유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분류는 가계수지항목분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는데, 금융자산을 현금 및 예금 자산과 직접투자 주식 및 채권, 펀드 관련 자산, 비소멸성 보험 및 개인·퇴직연금 수령권 관련 자산, 기타금융자산 등 각 자산군의 보유 여부 및 보유액을 조사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다. 또한, 기존 차수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금융자산 변수를 생성 및 제공하였다.

여섯째,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관련제도 영역(Hf)이 10차 본조사부터 추가되었다. 이는 중고령자 가구의 사회복지 관련 제도의 이용 및 수급 현황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표 Ⅱ-5〉 가구용 조사표 – 주요 조사 항목의 차수별 비교

○ : 조사, – : 비조사, △ : 항목조정, ★ 생성변수 제공

영역		세부항목	5차	6,7,8차	9차	10차 본·부가
가구원 정보	전체 가구원	인적사항(연령,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	○	○	○
		최종학력(학교급, 이수여부)	○	○	○	○
		혼인상태 및 혼인상태 변동시점	○	○	○	○

영역		세부항목	5차	6,7,8차	9차	10차 본·부가
가구원 정보	전체 가구원	가구원 동거여부 및 비동거 사유	○	○	○	○
		경제활동상태(현재)	○	○	○	○
		평소경제활동상태(작년)	○	○	○	○
		가구원 수(현재 / 작년)	○	○	○	○
		가구원 여부(작년)	○	○	○	○
		종교 유무	○	○	○	○
		종교 유형	○	—	—	○
		종교집회 참석빈도	○	—	—	—
	신규	전입 및 전출 시기	○	○	○	○
주거현황		주택종류 및 점유형태, 주택 및 대지면적	○	○	○	△
		주택의 가격 또는 전월세 보증금	○	○	○	○
가구 지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	★	★	△
		주류 및 담배비	★	★	★	★
		주류	○	○	○	○
		담배	○	○	○	○
		의류 및 신발(피복비)	○	○	○	○
		주택, 수도, 전기, 가수 및 기타연료	★	★	★	★
		주거비	○	○	○	○
		광열수도비	○	○	○	○
		가구, 가사비품 및 기타 생활용품	★	★	★	★
		가구집기 구입비	○	○	○	○
		가사서비스비	○	○	○	○
		보건의료비	★	★	★	★
		교통비	○	○	○	○
		통신비	○	○	○	○
		오락, 스포츠 및 문화	★	★	★	△
		교육서비스	★	★	★	★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	—	—	★
		음식 및 음료서비스	○	○	○	△
		숙박서비스	○	○	○	○

영역	세부항목	5차	6,7,8차	9차	10차 본·부가
가구 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지출	○	○	★	★
	보험 및 금융서비스	—	—	○	○
	개인미용 및 기타 개인용품 및 서비스	—	—	○	○
	사회보장 서비스	—	—	○	○
	비소비지출	★	★	★	★
	기타비소비지출(생성, 9차)	○	○	★	-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달이 있었는지 여부	○	○	○	○
	부족한 생활비 마련 방법	○	○	○	○
일자리 있었던 가구원	일자리 있었던 가구원의 수	○	○	○	○
	무급가족종사자 가구원의 수	○	○	○	○
가구 소득	근로 및 사업 소득	○	○	★	★
	근로소득(조사)	—	—	○	○
	사업소득	—	—	○	○
	재산소득	—	—	—	★
	이자 및 배당소득	—	—	—	○
	금융소득	○	○	○	—
	임대소득	○	○	○	○
	개인 및 퇴직연금 소득	—	—	—	○
	공적이전소득	○	○	★	★
	공적연금	○	○	○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	○	○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포함)	○	○	—	—
	기초연금	—	—	○	○
	기타사회수혜금			○	○
	코로나19지원금			○	-
	사적이전소득	○	○	○	★
	사적이전소득	—	—	—	○
	비영리단체 이전소득	—	—	—	○
	기타 이전소득	—	—	—	○
	비경상소득(기타소득)	○	○	○	○
저축		○	○	○	—
기타수입	자산변동 수입	—	—	—	○
	부채증가 수입	—	—	—	○
	자산이전 수입	—	—	—	○

영역	세부항목		5차	6,7,8차	9차	10차 본·부가
가구자산 및 부채	부동산자산		○	○	○	○
	기타자산		○	○	○	○
	금융자산		○	○	○	★
		현금 및 예금	—	—	—	○
		직접투자 주식 및 채권, 펀드	—	—	—	○
		비소멸성 보험 및 개인·퇴직연금 수령권	—	—	—	○
		기타금융자산	—	—	—	○
	부채		○	○	○	○
사회복지 관련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	○	○
	근로장려금제도		—	—	○	○
	자녀장려금제도		—	—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재가노인서비스		—	—	—	○
	치매 관련 복지서비스		—	—	—	○
	기타 건강보장 서비스		—	—	—	○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	—	—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		—	—	—	○
	민간형 노인일자리 사업		—	—	—	○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	—	○
	무료급식 지원 서비스		—	—	—	○

2) 10차 부가조사 개인용 조사표 조사 항목 구성

10차 부가조사에서는 KReIS의 관련성 차원의 통계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 이용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의성 있는 주제의 문항을 개발 및 추가하였다. 그에 따른 조사표 조사 항목은 〈표 Ⅱ-6〉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조사 영역은 총 5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중고령자의 노후 준비와 복지 욕구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 첫 번째 영역인 '복지 태도 및 노후 생활비'는 노인 복지에 대한 인식과 노후 생활비 관련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은 노인 복지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복지 정책의 확대 및 축소 필요 부문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 노후 시기 인식과 필요 생활비 산정 등 총 세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영역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가입 현황, 수급 계획, 급여 적정성 등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공적연금의 적용 및 가입 상태부터 수급 중인 연금액의 만족도와 노후생활비 충족 정도까지 공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 영역인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 현황과 만족도, 미수급자의 신청 경험 및 미신청 사유 등 6개 항목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평가한다. 네 번째 영역인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 인지도와 참여 경험, 만족도, 향후 참여 의사 및 미참여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정년 연장에 대한 태도까지 포함하여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종합적 시각을 제공한다. 마지막 영역인 '노후준비서비스'는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이용 경험, 만족도 및 향후 이용 의사를 측정하며, 추가 이용 희망 서비스와 미이용 사유까지 파악한다. KReIS는 이번 10차 부가조사를 통해 5개 영역별 세부 항목에 대한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중고령자의 노후 준비 실태와 복지 욕구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표 Ⅱ-6〉 10차 부가조사 개인용 조사표 조사 항목 구성

조사 영역	항목 내용
복지 태도 및 노후 생활비	노인 복지 수준 인식 정도
	노인 복지 축소가 필요한 부문(1, 2순위)
	노인 복지 확대가 필요한 부문(1, 2순위)
	노인 복지 예산 확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중고령자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바람직한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주관적 인식
	노후 시기 연령
	노후 시작 연령에 대한 이유
	노후 시기 해당 여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추측 여부
	주관적인 노후준비 수준(점수)
	최소 및 적정 노후 생활비(부부, 개인)
	응답한 노후생활비의 지출 항목별 생활비 배분 수준

조사 영역	항목 내용
공적 연금	공적연금 적용 상태
	공적연금 가입 상태
	공적연금 수급 계획
	수급개시 연령 이전 신청 이유
	공적연금의 금액 인지 상태(여부, 금액)
	예정 공적연금의 노후생활비 충족 정도(최소, 적정)
	수급 중인 공적연금 금액
	공적연금 수급액 만족도
	공적연금의 노후생활비 충족 정도(최소, 적정)
	국민연금 관련 제도 인식
기초 연금	기초연금 수급 여부
	기초연금의 노후생활비 도움 정도
	기초연금 금액 만족도
	기초연금 수급 신청 경험 유무
	기초연금 비수급 이유
	기초연금 미신청 이유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인지 여부
	노인 일자리 사업 인지 경로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경험 여부
	각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및 만족도
	향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의사
	노인 일자리 사업 미참여 사유
	노인 일자리 사업 미신청 이유
	향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의사
	정년 연장 찬성 여부
노후 준비 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 인지 여부
	노후준비서비스 인지 경로
	노후준비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각 노후준비서비스 이용 여부 및 만족도
	향후 노후준비서비스 이용 의사
	추가로 이용하고 싶은 노후준비서비스(2순위)
	노후준비서비스 이용하지 않은 이유
	향후 노후준비서비스 이용 의사

3. 조사결과: 23통합표본(新통합표본)

KReIS는 2023년 패널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 구축한 23통합표본(新통합표본, 이하 23표본)과 05표본, 13통합표본(舊통합표본, 이하 13표본)등 총 3개의 표본을 관리하고 있다.

각 표본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05표본은 제1차 본조사에서 구축된 최초 패널로서 가구원 중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있는 가구가 조사 모집단이다. 즉, 05표본은 제1차 본조사에서 표집되어 조사에 성공한 가구이며, 자료 정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축된 원가구는 5,109가구이다. 13표본은 05표본 이후 조사 차수가 누적되면서 표본의 연령 증가에 따라 50대 패널이 소멸되는 표본의 한계에 대응하여 2013년 5차 본조사에서 50대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신규로 추가하여 구축한 것이다. 13표본의 원표본 가구는 제5차 본조사에서 기존 05표본 중 조사에 성공한 3,809가구와 신규 가구 1,201가구를 총 5,010가구이다. 23표본도 13표본과 동일하게 50대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패널이다. 23표본의 원 가구는 제10차 본조사에서 기존 표본 중 조사에 성공한 3,892가구와 50대 가구원이 있는 신규 가구 1,439가구를 포함한 5,331가구이다.

제10차 부가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유효표본 총 6,83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5,136가구가 조사에 성공하였다. 제10차 부가조사에서 조사에 성공한 표본별 가구 수는 원표본 기준으로 23표본 5,133가구, 13표본 3,610가구, 05표본 2,814가구이다. 그리고 표본별 원표본 유지율은 가구 기준 05표본 55.1%, 13표본 72.1%, 23표본 96.3%이다. 각 표본의 차수별 조사 성공 가구 수 및 분가(신규) 가구 현황은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II-1]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표본별 개요

(단위: 해당년도 조사성공가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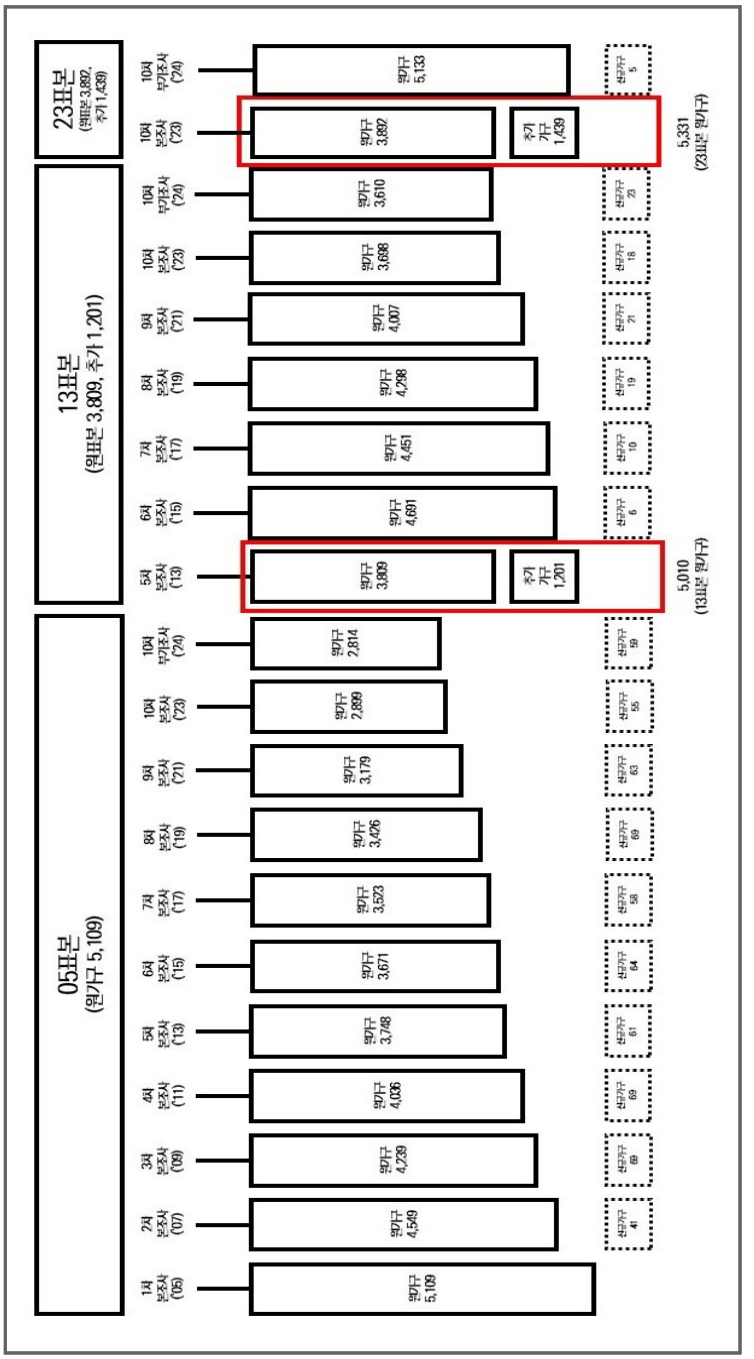

여기에서 살펴볼 조사 결과는 23표본에 대한 것으로, 가구 및 개인 단위의 조사 성공 패널에 대한 기초 통계와 가중치 산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13] 조사 성공 패널에 대한 기초 통계 외에도 가구 및 개인의 표본 유지율, 조사 실패 가구에 대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도 기술하였다. 이때 표본 유지율은 원표본 유지율과 유효표본 유지율을 각각 제시하였다. 전자는 각 표본의 원표본 대비 조사 성공 표본 수의 비율이며, 후자는 사망, 이민, 장기수용시설 입소 등의 조사부적격 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한 표본을 소멸처리한 유효 표본 대비 조사 성공 표본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가. 응답 현황

23표본의 제10차 부가조사 수행 결과는 〈표 Ⅱ-7〉에 제시한 바와 같다.[14] 조사성공 가구는 23표본 5,331가구 중 5,138가구(개인일부성공 67가구 및 신규가구 8가구 포함)로 이중 원표본 가구의 표본 유지율(원표본 유지율)은 96.3%이다. 10차 부가조사는 23표본 구축 이후 최초로 수행되는 후속조사로서 유효 원표본 가구는 원표본 가구와 동일한 5,331가구로 유효 성공률은 96.3%이다. 여기에서 유효 원표본 가구는 원표본 가구 중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원 전원이 사망, 이민, 장기수용시설입소 등으로 조사가 더 이상 불가능 한 경우를 제외한 가구를 의미한다. 유효 성공률은 당해 유효 원표본 가구 중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가구 수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외에 10차 부가조사에서 23표본 가구에서 분가가 확인되어 추적 조사에 성공한 신규 표본은 5가구이다.

13) 05표본과 13표본에 대한 조사 결과는 'Ⅷ. 부록'에 제시하였다.
14) KReIS는 모집단의 표본 단위가 가구이기 때문에, 가구를 단위로 응답현황을 우선 관리하고 있다.

〈표 Ⅱ-7〉 23표본의 가구 응답현황

(단위: 가구, %)

구분		원표본 가구	조사 완료	원표본	신규	원표본 유지율	유효 원표본 가구[1]	유효 성공률[2]
1차 년도	본('23)	5,331	5,331	5,331	0	100.0	5,331	100.0
	부가('24)	5,331	5,138	5,133	5	96.3	5,331	96.3

주 1) 유효 원표본가구=(원표본가구)-(부적격가구:사망, 이민, 장기수용시설입소 등으로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유효 성공률=(조사성공한 원표본가구/유효 원표본가구 대비)*100%
3) 개인일부성공가구가 포함된 수치임.
4)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분석 결과임.

23표본의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살펴보면 〈표 Ⅱ-8〉과 같다. 전국 기준 원표본 유지율(96.3%)보다 원표본 유지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100.3%), 세종(100.0%), 광주(99.5%), 경북(9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표본 유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경남(94.1%), 충북(94.3%), 서울(95.4%), 대전, 경기(95.5%), 인천(95.7%)의 순으로 나타났다. 패널조사는 종단 자료를 누적하여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본 유지율이 낮은 지역, 특히, 서울 및 경기, 인천 등 표본의 약 4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표본 유지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Ⅱ-8〉 23표본의 지역별 원표본유지율

(단위: 가구, %)

지역	1차년도 본조사(2023년) 원표본가구 수	1차년도 부가조사(2024년) 조사성공 가구 수	원표본 유지율
전체	5,331	5,133	96.3
서울	839	800	95.4
부산	380	381	100.3

지역	1차년도 본조사(2023년) 원표본가구 수	1차년도 부가조사(2024년) 조사성공 가구 수	원표본 유지율
전체	5,331	5,133	96.3
대구	231	224	97.0
인천	282	270	95.7
광주	190	189	99.5
대전	177	169	95.5
울산	138	133	96.4
경기	1,199	1,145	95.5
강원	166	162	97.6
충북	193	182	94.3
충남	270	262	97.0
전북	215	207	96.3
전남	235	225	95.7
경북	342	334	97.7
경남	390	367	94.1
제주	58	57	98.3
세종	26	26	100.0

주 1) 조사성공 가구 수의 경우 조사 시점 당시 표본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과임.
2) 지역별 조사성공 가구 수는 조사 시점 당시 패널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제시된 것으로 표본 구축 당시 타 지역에 거주하다 이사 등의 사유로 거주 지역이 변경된 경우, 원 지역이 아닌 이주 지역 통계에 포함됨. 따라서 부산의 원표본 유지율이 100.3%로 나타난 이유는 이러한 배경에 근거함.
3)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분석 결과임.

10차 부가조사에서 23원표본 가구 중 조사에 실패한 198가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Ⅱ-9〉와 같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실패 사유는 지속된 조사에 대한 부담감과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한 거절[15]로서 전체 실패 사유의 4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 거절로 인한 조사 실패 가구 89가구 중 36가구가 23표본 신규 구축 가구로서 연속 조사에 대한 부담 및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과 같은 사유로 조사 참여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재와 사망이 각각 18.2%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소멸 처리 사유에 해당하는 사망(18.2%), 장기수용시설 입소(12.1%) 등의 사유도 전체 실패 사유의 3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9〉 23원표본 가구에 대한 조사 수행 결과

(단위 : 가구, (%))

성공	실패	실패 사유					
		거절	부재	사망	장기수용 시설입소	추적 불가	기타
5,133	198	89	36	36	24	13	0
-	(100.0)	(44.9)	(18.2)	(18.2)	(12.1)	(6.6)	(0.0)

23표본 개인조사 대상자의 응답 현황은 〈표 Ⅱ-10〉에 제시하였다. 10차 본조사에서 조사를 완료한 원표본은 8,340명이며, 신규 개인은 54명이다. 개인조사 대상자 중 원개인은 10차 본조사 결과 구축된 23표본 가구의 가구원 중 개인조사대상자의 자격을 갖춰 조사에 성공한 개인이다. 그리고 개인조사 대상자 중 신규 개인은 만 50세 이상 연령도래자와 만 50세 미만자 중 개인조사대상자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이외에도 기존 가구 중 2023년에 연령 조건을 충족한 기 가구원이나, 조사대상 가구로의 신규 전입, 결혼, 합가 등으로 신규 가구원 자격을 획득한 50세 이상 개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한다. 제10차 부가조사 결과 원개인의 표본 유지율 및 유효 성공률은 95.5%이다.

〈표 Ⅱ-10〉 23표본 개인의 응답현황

(단위 : 명, %)

구분		원개인	조사 완료	원개인	신규	원표본 유지율	유효 원개인	유효 성공률
1차 년도	본('23)	8,736	8,736	8,736	0	100.0	8,736	100.0
	부가('24)	8,736	8,394	8,340	54	95.5	8,736	95.5

나. 23표본 중 제10차 부가조사 성공가구의 특성

제10차 부가조사에서 조사에 성공한 23표본 5,133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 특성은 〈표 Ⅱ-11〉과 같다.

먼저, 가구주 특성은 성별과 배우자 유무, 연령대, 최종학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이 65.6%로 여성(34.4%)보다 많고, 독신가구가 39.3%, 부부가구가 60.7%로 나타났다.[16] 가구주의 연령대는 60대가 33.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70대 23.2%, 50대 22.6%의 순이었고, 가구주의 연령대가 80세 이상인 가구도 2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38.5%), 대학교 이상 졸업자(23.2%), 초등학교 졸업자(18.2%), 중학교 졸업자(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특성은 거주 중인 주택의 형태와 점유방식, 가구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거주 주택은 일반아파트가 43.0%의 비율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반단독주택(32.5%), 연립/다세대주택(14.1%), 다가구용 단독주택(4.5%), 임대아파트(4.0%) 등의 순이었다. 해당 주택의 점유 형태는 자가의 비율이 79.4%였으며, 월세가 8.4%(보증금 있음 7.7%, 보증금 없음 0.7%)였고, 전세는 7.5%로 조사되었다. 가구 구성은 가구원

16) 이는 가구주의 혼인상태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것으로 가구원수나 가구유형에 대한 정보가 아님을 밝힌다.

전체가 조사 대상인 부부가구(36.2%)와 단독가구(31.7%)가 총 67.9%로 2/3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표 II-11〉 23표본의 제10차 부가조사 성공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가구, %, 23표본 기준)

구분		전체	
		case	%
성별	남성	3,368	65.6
	여성	1,765	34.4
배우자 유무	있음	3,115	60.7
	없음	2,018	39.3
연령대	50세 미만	50	1.0
	50대	1,159	22.6
	60대	1,694	33.0
	70대	1,192	23.2
	80세 이상	1,038	20.2
최종 학력	무학	367	7.2
	초졸	934	18.2
	중졸	659	12.8
	고졸	1,978	38.5
	대졸 이상	1,193	23.2
	무응답	2	0.0

구분		전체	
		case	%
주택의 형태	일반단독주택	1,666	32.5
	다가구용 단독주택	229	4.5
	일반아파트	2,209	43.0
	임대아파트	204	4.0
	연립/다세대주택	721	14.1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65	1.3
	비주거용건물내주택(상가, 공장 등)	27	0.5
	기타	12	0.2
주택의 점유 형태	자가	4,073	79.4
	전세	384	7.5
	보증금 있는 월세	394	7.7
	보증금 없는 월세	36	0.7
	기타(무상주택, 사택 등)	246	4.8
가구 구성	단독가구	1,629	31.7
	부부가구	1,856	36.2
	그 외	1,648	32.1
전 체		5,133	100.0

주 1) 성별, 배우자유무, 연령대, 최종학력은 조사성공가구의 가구주 정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며, 주택의 형태, 주택의 점유 형태, 가구 구성은 가구 정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
2)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분석 결과임.

다. 23표본의 제10차 부가조사 성공 개인의 특성

10차 부가조사에서 조사에 성공한 23표본 개인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Ⅱ-12〉와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여성이 57.7%로 남성(42.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경우 60대가 3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50대가 28.8%, 70대가 21.3%, 80세 이상이 16.9%의 순이었으며, 50세 미만인 개인조사대상자도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조사 대상자의 대다수가 가구주(60.7%)였으며, 가구주의 배우자가 35.4%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조사대상자의 최종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41.2%), 대학교 졸업 이상인 자(22.1%), 초등학교 졸업자(1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2〉 조사 성공한 23표본 개인의 특성

(단위: 명, %, 23표본 기준)

구 분		전체	
		사례 수	비중
성별	남성	3,529	42.3
	여성	4,811	57.7
연령대	50세 미만	121	1.5
	50대	2,399	28.8
	60대	2,629	31.5
	70대	1,780	21.3
	80세 이상	1,411	16.9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본인)	5,058	60.7
	배우자	2,949	35.4
	부모	203	2.4
	조부모	1	0.01
	자녀	98	1.2
	형제	12	0.1
	기타	19	0.2

구 분		전체	
		사례 수	비중
최종 학력	무학	510	6.1
	초졸	1,441	17.3
	중졸	1,110	13.3
	고졸	3,434	41.2
	대졸 이상	1,843	22.1
	무응답	2	0.04
전 체		8,340	100.0

주 :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분석 결과임.

라. 횡단면 통합가중치 작성 결과

KReIS는 표본조사로서 조사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면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10차 본조사 이후부터 KReIS의 모집단 대표성은 23표본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17] 따라서 횡단면 가중치(이하, 가중치)는 23표본에 대해서만 산출한다.[18] 여기에서는 23패널 가구 및 개인의 가중치 작성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가구 가중치

10차년도 부가조사의 가중치 산출 대상은 10차 부가조사에서 조사에 성공한 5,133가구이며, 가중치 산출 과정은 아래와 같은 기존의 방식을 준용하였다(김재광·정상아, 2024).

17) KReIS에서 관리하고 있는 05표본과 13표본의 경우, 패널의 연령 증가에 따라 조사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횡단면 가중치는 산출하지 않는다.

18) 이에 반해 종단면 가중치는 05표본, 13표본, 23표본에 대해 각각 산출한다. 부가조사의 경우, 제9차년도까지는 가구 조사를 수행하지 않아 종단 가중치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제10차년도부터는 가구 조사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종단 가중치를 작성 및 배포한다.

무응답 보정 승수를 산출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무응답 보정 승수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10차 부가조사 가중치 산출 대상 가구를 기본 가중치 산출 당시 참조 변수의 값, 즉 10차 본조사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무응답층을 분류한다. 이때 무응답층을 결정하기 위한 변수는 〈표 Ⅱ-13〉과 같다.

〈표 Ⅱ-13〉 무응답 층 설정에 사용되는 변수 목록

변수	설명
지역	1. 서울 / 2. 광역시 / 3. 도
도시여부	1. 동부 / 2. 읍면부
거주 형태	1. 단독주택 / 2. 아파트 / 3. 연립·다세대주택 / 4.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 5.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 6. 기타
가구원 수	명
50세 이상 가구원 수	명
가구주 연령	만 나이
가구주 학력	1. 무학 / 2. 초등학교 재학 이상 / 3. 중학교 재학 이상 / 4. 고등학교 재학 이상/ 5. 대학교(2·4년제) 재학 이상 / 5. 대학원 석사 재학 이상 / 6. 대학원 박사 재학 이상 / 7. 미조사 및 무응답

기준별로 분류된 응답 가구와 무응답 가구의 10차 본조사 당시 산출한 23패널 횡단 가중치를 사용하여 층별 무응답 보정 승수를 계산한다.[19] 무응답층은 가구 자료를 이용하여 설정되며,[20] 이렇게 결정된 무응답층별로 식(2-1)에 따라 무응답 보정 승수(f_g)가 계산된다. 여기에서 d_i는 표본의 기본 가중치이고, R_i는 표본의 해당 연도 조사 응답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 변수이다.

19) 층별 빈도수가 40 이하인 층에 대해서는 적절한 병합을 통해 무응답 보정 승수가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20) 개인의 무응답층은 개인이 속한 가구의 무응답층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는 조사의 특성상, 가구 무응답층에 속한 개인은 그 자체로 무응답층이 되기 때문이다.

$$식(2\text{-}1)\ -\ f_g = \frac{\sum d_i}{\sum d_i R_i}$$

식(2-1)를 통해 각 층에서 조사에 실패한 무응답 가구의 가중치를 보정하기 위한 값을 산출하였으며, 지역과 주요 변수별로 결정된 무응답층과 총 15개의 층별로 계산된 무응답 보정 승수는 〈표 Ⅱ-14〉와 같다.

〈표 Ⅱ-14〉 층별 통합 가구 무응답 보정 승수

(단위 : 가구)

층				Cell No.	표본 수	무응답 보정승수
구분변수	가구주 학력		주거형태			
서울	중등이하		그 외	1	229	1.069
			단독주택	2	111	1.035
	고등이상		아파트	3	289	1.066
			그 외	4	210	1.045
구분변수	가구주 연령대		50대 이상 가구원수			
광역시	50대 이하			5	346	1.033
	60대			6	495	1.013
	70대 이상		1명	7	285	1.126
			2명 이상	8	298	1.014
구분변수	가구주 학력	50대 이상 가구원수	주거형태			
도 (동부)	고졸 이하	1명		9	545	1.066
		2명 이상	단독주택	10	171	1.005
			그 외	11	523	1.026
	대졸 이상			12	481	1.059

층			Cell No.	표본 수	무응답 보정승수
구분변수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대			
도 (읍면부)	1명	60대 이하	13	129	1.013
		70대 이상	14	372	1.109
	2명 이상		15	847	1.011

그리고 식(2-2)와 같이 층별로 계산된 개별 가구의 무응답 보정 승수를 기본 가중치인 10차 본조사 23통합 가구 횡단면 가중치에 곱하면 해당 가구의 무응답 조정 가중치가 산출된다. 무응답 조정을 마친 통합 가구 가중치에 대해서는 가구 벤치마킹 변수를 이용한 최종 가중치 보정 작업을 진행한다. 통합 가구 가중치 보정에서는 2020년의 인구 주택 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모집단 자료를 이용한다.[21)]

식(2-2) - 무응답 조정가중치 = 기본가중치 × 무응답 보정 승수

식(2-2)를 통해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산출하면, 여기에 보정 승수를 곱해 최종 가중치를 산출한다. 이때 보정 승수는 표본틀인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얻은 주요 보조 정보의 참값을 기준(benchmark)으로 조사 결과의 집계값을 조정(alignment)하기 위한 값이다. KReIS는 다수의 기준 변수를 반영하는데 적합한 래킹비 조정법(raking ratio adjustment)을 사용한다. 그리고 가중치 보정을 마친 가중치에 대해 이상점 제거를 위한 가중치 절삭 과정[22)]을 통해 최종 통합 가중치를 얻는다.

---

21) KReIS의 모집단은 주지하다시피 50대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이다. 문제는 이러한 모집단의 정보가 5년 단위의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서만 파악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KReIS의 모집단 정보는 표본 추가시 변경된 표본틀의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가중치 보정시 해당 정보를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

22) 지역별로 평균 가중치의 1/3과 3배가 되는 값을 가중치 이상점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상의 가중치 산출 작업을 통해 계산된 기본가중치와 최종가중치에 대한 산출 결과는 아래의 〈표 Ⅱ-15〉와 같다. 제10차 부가조사 결과, 가구 기본 가중치의 합은 12,220,062가구로 모집단 값인 12,689,026가구의 96.3%이며, 무응답 조정을 통해 최종 산출된 최종 가중치의 합은 12,743,395가구로 모집단의 약 100.4%이다. KReIS 제10차 부가조사 가구 가중치는 대다수 특성에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일부 특성에서는 최종 가중치가 과소 또는 과대 산출되어 분석이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가구주의 연령대가 40대 이하인 경우 또는 70대 이상인 경우,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표 Ⅱ-15〉 제10차 부가조사 가구 가중치 산출 결과

(단위: 가구)

구분			기본가중치 합	최종가중치 합(A)	모집단 값(B)	A/B
지역	소계		12,220,062	12,743,395	12,689,026	100.4
	서울특별시		2,175,515	2,266,141	2,263,604	100.1
	부산광역시		938,130	923,880	925,787	99.8
	대구광역시		590,758	626,845	628,074	99.8
	인천광역시		662,137	701,353	702,753	99.8
	광주광역시		347,643	359,899	343,638	104.7
	대전광역시		346,199	345,292	346,308	99.7
	울산광역시		241,875	268,585	213,910	125.6
	세종특별자치시		58,847	58,718	58,847	99.8
	강원도	동부	211,212	229,015	242,959	94.3
		읍면부	220,876	210,362	197,216	106.7

범위를 벗어난 값에 대해 가중치 절삭을 실시하였다. 가중치 절삭 후 다시 계산된 가중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절삭 전과 절삭 후의 평균의 비를 곱해줌으로써 지역별 가중치 합을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구분			기본가중치 합	최종가중치 합(A)	모집단 값(B)	A/B
지역	경기도	동부	2,206,776	2,352,802	2,408,931	97.7
		읍면부	584,236	608,766	558,462	109.0
	경상남도	동부	480,002	493,339	513,046	96.2
		읍면부	345,713	378,933	360,790	105.0
	경상북도	동부	300,420	338,020	345,357	97.9
		읍면부	445,502	420,987	415,035	101.4
	전라남도	동부	145,803	181,772	195,373	93.0
		읍면부	353,383	354,434	341,735	103.7
	전라북도	동부	245,133	296,467	316,259	93.7
		읍면부	245,205	205,764	186,894	110.1
	충청남도	동부	160,929	197,655	203,329	97.2
		읍면부	362,108	345,730	341,020	101.4
	충청북도	동부	188,465	215,807	223,598	96.5
		읍면부	203,781	202,776	195,774	103.6
	제주도	동부	99,469	106,037	107,935	98.2
		읍면부	59,945	54,016	52,392	103.1
가구주 연령대	소계		12,193,273	12,715,716	12,340,967	103.0
	40대		365,913	403,341	570,339	70.7
	50대		4,163,925	4,608,092	4,809,501	95.8
	60대		3,725,631	3,933,621	3,786,883	103.9
	70대 이상		3,937,804	3,770,662	3,174,244	118.8
주택 유형	소계		12,220,058	12,744,260	12,744,261	100.0
	단독주택		3,892,227	4,249,933	4,321,498	98.3
	아파트		6,012,368	6,332,783	6,342,088	99.9
	다세대 주택		1,839,361	1,613,557	1,467,321	110.0
	기타		476,102	547,987	613,354	89.3
가구원 수	소계		12,220,059	12,744,259	12,744,261	100.0
	1인		3,317,753	3,443,589	3,280,907	105.0
	2인		4,639,680	4,774,166	4,553,525	104.8
	3인		2,333,262	2,436,397	2,700,214	90.2
	4인 이상		1,929,364	2,090,107	2,209,615	94.6

2) 개인 가중치

10차 부가조사에서 개인 가중치 산출 대상이 되는 23표본은 전체 8,736명 중 10차 부가조사에서 조사에 성공한 8,335명이다. 가중치 산출 과정은 가구 가중치 산출 과정과 동일한 단계를 거친다. 즉, 개인 표본 무응답층은 각 개인이 속한 가구에 해당되는 무응답층을 따르고, 층별로 개인 무응답 보정 승수를 계산한다. 이때 개인 가중치 산출에 가구 무응답층을 준용하는 이유는 해당 정보는 가구에 대한 정보이지만 개인이 공유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산된 개인 무응답 보정 승수를 기본 가중치인 10차 본조사 23통합 개인 가중치에 곱하여 개인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산출한다.

기본 가중치에 무응답 조정을 마친 통합 개인 가중치에 대해서는 개인 기준 변수의 값을 이용하여 최종 보정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보정을 위한 모집단 정보는 표집틀인 202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모집단 정보를 활용하였다. 단, 이 과정에서 50세 미만 개인은 모집단 보정에서 제외한 후 최종 단계에서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최종 가중치로 하여 계산된 최종 가중치와 병합하였다. 그리고 가중치의 이상 값을 조정하는 절삭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통합 개인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제10차 부가조사에서 산출한 최종 개인가중치는 다음의 〈표 Ⅱ-16〉과 같다. 제10차 부가조사에서 조사에 성공한 개인의 기본가중치 합은 19,005,142명으로 모집단 19,849,222명의 95.7% 수준이었으나, 가중치 보정 작업을 거친 최종 가중값의 합계는 19,874,497명으로 모집단의 100.1%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특성에서 조사 결과 가중치의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1% 내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KReIS 자료를 활용한 중고령자 개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있어 높은 통계적 타당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표 Ⅱ-16〉 제10차 부가조사 개인 가중치 산출 결과

(단위: 명)

구분			기본가중치 합	최종가중치 합(A)	모집단 값(B)	A/B
지역	소계		19,005,142	19,874,497	19,849,222	100.1
	서울특별시		3,417,918	3,567,598	3,551,291	100.5
	부산광역시		1,435,240	1,436,156	1,436,156	100.0
	대구광역시		944,863	973,793	973,793	100.0
	인천광역시		1,009,342	1,088,153	1,088,153	100.0
	광주광역시		524,724	531,541	522,573	101.7
	대전광역시		500,133	534,563	534,563	100.0
	울산광역시		371,203	421,822	421,822	100.0
	세종특별자치시		89,764	91,442	91,442	100.0
	강원도	동부	344,759	369,865	373,763	99.0
		읍면부	315,786	316,321	312,423	101.2
	경기도	동부	3,512,231	3,767,240	3,769,418	99.9
		읍면부	862,729	886,225	884,047	100.2
	경상남도	동부	780,296	787,150	786,674	100.1
		읍면부	519,370	560,177	560,653	99.9
	경상북도	동부	530,855	535,057	534,040	100.2
		읍면부	626,236	652,161	653,178	99.8
	전라남도	동부	277,761	298,269	298,338	100.0
		읍면부	506,673	528,279	528,210	100.0
	전라북도	동부	466,526	482,822	482,938	100.0
		읍면부	281,756	295,340	295,224	100.0
	충청남도	동부	297,885	309,090	309,744	99.8
		읍면부	530,641	541,355	540,701	100.1
	충청북도	동부	333,896	344,431	343,926	100.1
		읍면부	286,490	307,443	307,948	99.8
	제주도	동부	157,791	164,743	165,345	99.6
		읍면부	80,274	83,461	82,859	100.7
성별	소계		19,005,142	19,874,497	19,849,222	100.1
	남성		8,929,537	9,414,335	9,411,256	100.0
	여성		10,075,605	10,460,162	10,437,966	100.2

구분		기본가중치 합	최종가중치 합(A)	모집단 값(B)	A/B
연령대	소계	19,005,141	19,874,496	19,849,222	100.1
	50대	7,822,355	8,231,739	8,251,105	99.8
	60대	6,207,253	6,418,716	6,405,829	100.2
	70대 이상	4,975,533	5,224,041	5,192,288	100.6

4. 자료 처리 및 정선

가. 자료 정선 및 검증

KReIS는 실사 과정이 마무리되면, [그림 Ⅱ-2]에서 제시된 총 4단계로 설계된 자료 정선(data cleaning)을 진행한다.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정선(精選) 절차 및 오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Ⅱ-2]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 정선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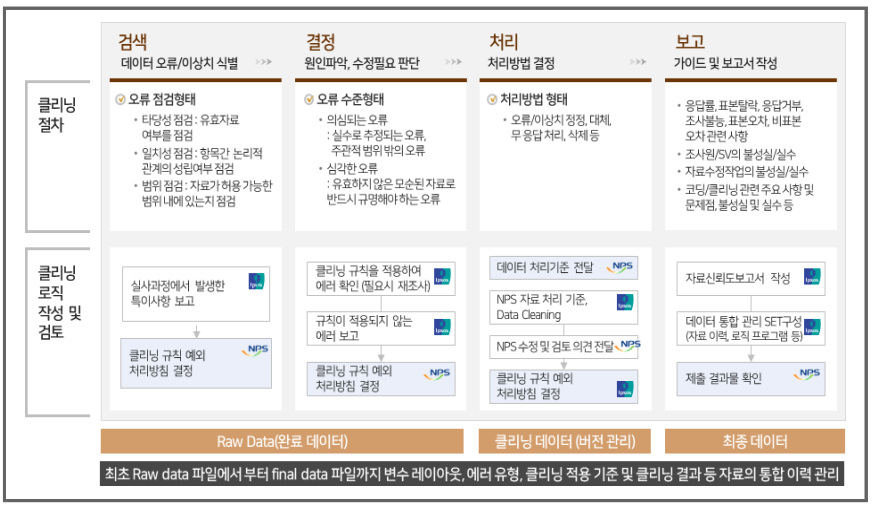

첫 번째 단계는 검색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조사표 내 질문 간 논리 구조를 토대로 응답 간 모순이 발생했는지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총 5종류의 오류를 확인한다. 첫 번째는 조사표 기록상의 오류나 누락된 내용이다. TAPI 특성상 응답이 번복 및 수정되는 과정에서 기록이 덧씌워지지 않을 때 불가능한 답이 기록되거나 응답이 누락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조사의 목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가 제대로 응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는 TAPI 프로그램에서 응답을 제한하고 있는 이상치 값으로 응답한 경우, 해당 응답은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이상치 값이 정확하게 응답된 값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문항 간 로직에 맞지 않는 응답을 점검한다. KReIS 특성상 서로 다른 문항이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각 문항의 응답이 다른 문항의 응답과 연동되어 제한되는 문항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서로 연동되어 있는 문항 간의 응답이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가구 변동사항 및 가구원 인적사항에 대한 종단면의 확인이다. 조사 간에 확인된 가구의 변동사항, 예를 들어 가구주 변동 및 가구원의 전·출입 등이나 가구원 인적사항, 예를 들어 성별이나 학력, 경제활동참여상태 등의 정보를 기존 자료와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답례품 인수증의 서명을 확인함으로써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는 결정 및 처리 단계로서 첫 번째 단계에서 확인된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고, 오류 수준 형태에 따라 처리 방식을 결정하고, 수정 여부를 판단 및 진행한다. 예컨대 조사 과정에서의 실수에 기인한 오류로 그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오류는 자료 처리 규칙에 따라 정선 작업을 수행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논리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모순되어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오류는 보완조사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오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자료 처리 규칙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예외 처리 방침을 작성한다. 이러한 작업은 베타 버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수행되지만, 기초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반복해서 수행된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보고 단계로서 앞선 절차에서 확인된 오류의 정선 과정 일체에 대한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는 10차 부가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차후 진행되는 KReIS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주요 내용은 조사 결과의 표본 및 비표본 오차와 해당 오차의 발생원인,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해당한다.

나. 최종 데이터셋 작성

KReIS는 자료 처리 및 정선 과정을 완료한 후 최종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제10차 부가조사에서는 가구용 조사표의 경우, 자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자료와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생성 변수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부가조사의 최종 데이터셋은 2가지 판(version)으로 작성 및 관리된다. 첫 번째 버전은 베타버전(beta version)으로 국민연금연구원 패널조사팀이 기초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한다. 베타버전을 이용하여 기초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초기 데이터셋의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선 작업을 재차 수행한다. 이때 자료의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재조사(recheck)를 수행하는데, 이때 재조사는 익년 본조사를 수행하면서 해당 정보의 오류를 수정하고 있다. 한편, 베타버전은 최종적으로 작성된 데이터셋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베타 버전을 이용하여 작성한 기초분석 보고서 및 논문에 대해 최종판과 분석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 버전은 베타버전을 수정한 뒤 일반 연구자 및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최종판(final version)이다. 부가조사의 경우, 본조사와 달리

학술대회용 버전이 작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베타 버전을 활용한 기초분석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에 대한 검증 및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판이 작성된다. 또한, 최종판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이후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연구원 패널조사팀에서는 데이터 수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홈페이지(http://www.kries.or.kr)에 이를 공표하여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제공된 데이터셋에 데이터 공개 및 수정이 이루어진 최종 날짜를 “version” 변수로 제공하고 있다.

Ⅲ. 가계 경제 및 사회복지제도 수급 현황

KReIS는 9차 년도까지는 매 본조사마다, 10차 년도부터는 매해 중고령자 가구의 가계 경제 상태와 사회복지제도 수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자산 부채 등에 대한 정보와 중고령자 개인 및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수급 정보를 면밀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설계하였다. 이때, 소득 및 지출, 자산, 부채 등 가계 경제 상태에 대한 정보는 가계수지항목분류(Korean general classification of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이하, KICW)[23] 제1차 개정 사항을 준용하여 하위 항목을 분류 및 조사하였다.

1. 가계 소득

KReIS는 소득을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각 세부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 정보는 조사 시점 기준 직전 년도 한해(1.1.~12.31.) 가구원 전체가 얻은 소득 총액을 파악한다. 이때 가구원은 동거 여부가 아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소득 종류별 조작적 정의는 KICW를 준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23) 가계수지항목분류(KICW)는 가구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관련 국가통계를 작성하는데 활용하는 일반 통계 분류로서, 국민계정체계(SNA),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지역소득통계, 농어가경제조사, 소비자물가조사 등 국가 기본통계 작성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KReIS도 유사 통계와의 정확성 및 비교성을 제고하고자 KICW를 준용하여 가계 경제 상태 관련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KICW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계수지항목분류 제1차 개정해설서』(통계청, 2021)를 참고하면 된다.

항목별 측정 내용은 〈표 Ⅲ-1〉과 같고, [그림 Ⅲ-1]은 소득 조사항목의 순서를 도식화한 것이다.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현금 및 현물 보수를 의미한다. 즉,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고용주 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임금 및 봉급, 현금 보너스 및 수당, 수수료 및 봉사료 등이 해당한다. KReIS에서는 근로소득을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이 공제되기 전 값을 조사한다.

사업소득은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사업 경영을 통해 얻은 사업수입(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대출이자 등 비용을 차감한 값으로서 순수익이다. 이 때문에 사업 또는 자영업을 통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에 관계없이 최종 사업수익은 적자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전의 값을 조사한다.

재산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과 임대소득, 개인 및 퇴직연금 소득으로 구성된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이자 및 주식 및 보험 등 금융자산 운용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다. 임대소득은 주택과 토지, 비금융자산 등에서 발생한 임대료와 사용료이다. 개인 및 퇴직연금 소득은 기존에 가입된 개인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상품을 통해 정기적인 연금 형식으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지급 받는 수령액이다.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기타 사회수혜금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통해 수급 중인 연금 형태의 급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는 모든 현금성 급여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제 및 해산급여가 해당한다. 기타 사회수혜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자격이 충족되면 지급하는 수혜금을 의미한다. 즉, 공적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적 사회보장급여 중 정기적으로 수급하는 급여만 수급하는 급여의 수급액만 조사한다.

사적이전소득은 다른 가구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로부터 받는 이전소득, 그 외 분류 안 된 이전소득의 총액이며, 현물 이전을 제외한 현금 소득만 조사한다.

비경상소득은 일회성이거나 반복되지 않는 소득의 총액으로,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 소득, 퇴직수당(일시 퇴직금 제외), 복권 당첨금, 보험금 수령액 등이 해당된다.

기타소득은 자산변동 수입과 부채증가 수입, 자산이전 수입으로 구분된다. 자산변동 수입은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의 인출, 해지, 판매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이고, 부채 증가 수입은 부동산 및 부동산 항목 이외에 가계대출을 통해 매입한 차입금 등으로 발생한 부채 증가액이며, 자산이전 수입은 자산을 타가구 등으로 이전(증여)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평가금액이 해당한다.

〈표 Ⅲ-1〉 10차 본조사 기준 가계소득 조사항목과 측정내용

조사항목		측정내용
근로소득		기업체 또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일)를 제공한 대가로 고용주 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임금 및 봉급, 현금 보너스 및 수당, 수수료 및 봉사료, 기타 현금 상여금 등
사업소득		개인이 사업(자영업)에 참여하여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받은 소득으로 총생산에서 운영비를 차감한 순이익
재산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은행, 건축조합, 신용조합 및 기타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이자소득과 주식 및 출자금, 보험, 신탁 등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발생하는 배당소득
	임대소득	주택, 토지, 비금융자산 등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 받는 소득(임대료, 사용료 등)
	개인 및 퇴직연금 소득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가구 및 고용주 등의 일정불입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연금과 같은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개인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형)과 고용주 또는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시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 수령액

조사항목		측정내용
공적 이전 소득	공적연금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에서 매월 일정액을 반복적으로 정부가 지원하여 지급받는 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은 모든 현금성 급여(생계, 주거, 교육 등)
	기초연금	기여금 적립 없이 연령, 소득, 부 등의 상태를 평가하여 일정조건을 만족한 경우 지급받는 수혜금
	기타 사회수혜금	특정한 자격이 충족되면 정부로부터 경상적으로 받는 사회적 현물급여를 제외한 수혜금으로, 장애인 수당, 아동 수당, 체육인연금, 근로장려금, 출산장려금, 참전용사수당, 보훈연금, 국가장학급(현금수령) 등이 해당
사적 이전 소득	사적이전소득	가족 지원금(위자료, 자녀양육비 및 부모 부양 등)의 형태로 다른 가구로부터 받는 경상 이전을 의미. 타가구로부터 대가 없이 보조받는 일체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포함. 다만, 경조사에 대한 상호부조나 주택 구입 후 증여 및 구입을 위한 일회성 이전은 제외
	비영리단체 이전소득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자선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장학금이나 구호금 등
	기타 이전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자의 세금 및 건강보험 환급금 등과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면서 일회성이거나 반복되지 않는 방법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소득, 퇴직수당(일시 퇴직금 제외), 복권 당첨금, 보험금 수령액 등 1회성 수입
기타 수입	자산변동 수입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및 금융자산(현금 및 예금 등)에서 자산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축이나 보험 등의 해지·만기에 따른 예금 인출, 보험금 수취,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입, 기타 골동품·귀금속 등의 매각대금 등
	부채증가 수입	부동산 및 부동산 항목 이외에 가계 대출을 통해 매입한 차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로서 부동산 담보대출 수입, 마이너스 통장이나 학자금 대출과 같은 기타 대출 및 보증금 수령 등이 해당
	자산이전 수입	자산을 타가구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경우로 비교적 금액이 크거나 재산 상속 및 증여 받은 경우 등

주 : 조사항목별 구체적인 측정 내용은 유저가이드 참조

[그림 Ⅲ-1] 가계소득 및 저축(Hd) 영역 문항 순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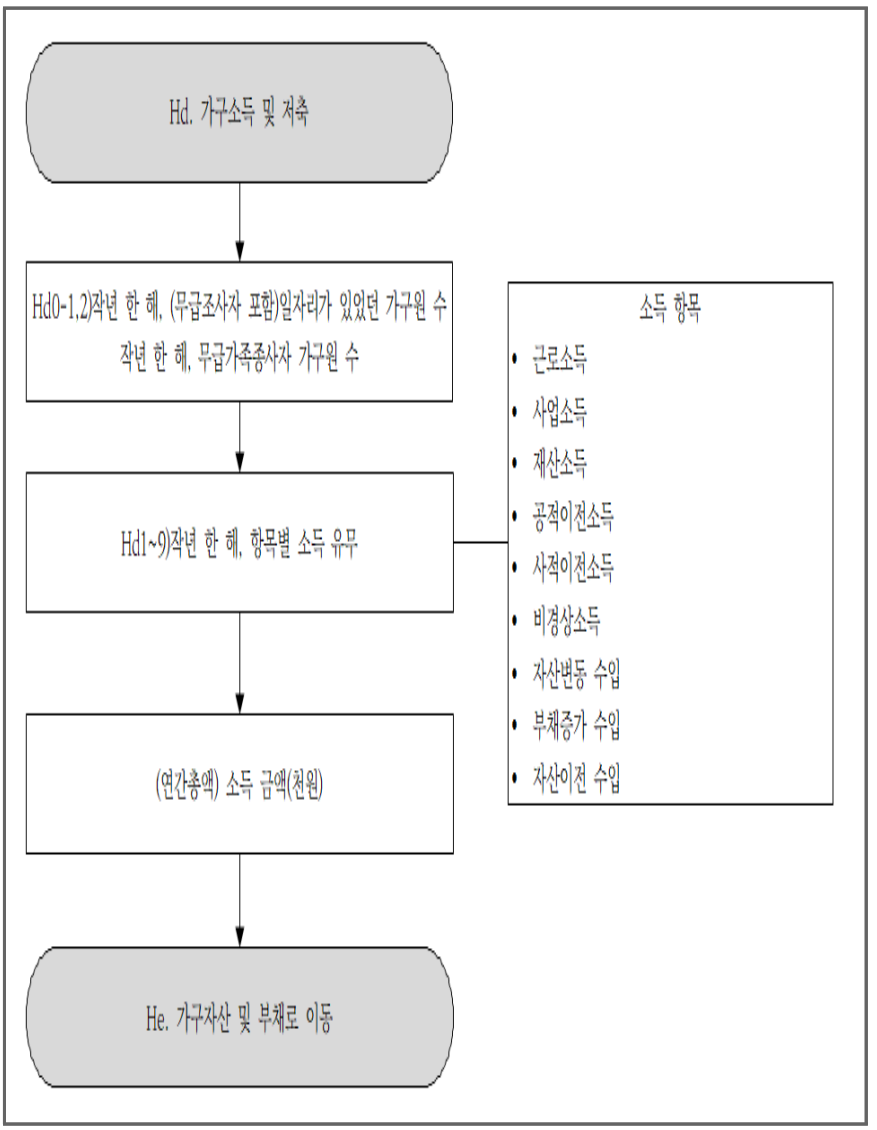

KReIS에서 조사하는 가계 소득은 조사시점 기준 작년 한 해 동안(10차 부가조사 기준,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얻은 세전 소득[24]으로, 연간 총액을 조사한다. 〈표 Ⅲ-2〉은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가구원으로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 소득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때 분석 대상은 소득 항목 문항에 모두 응답한 가구이다. 분석 결과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대, 최종학력)과 가구의 거주지역, 가구 구성별로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값은 총 소득을 가구 균등화 지수(가구원 수의 제곱근)로 나눈 균등화 소득이다.

전체 중고령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249.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가구 특성별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주 성별이 남성일 경우 289.7만원으로 여성일 경우의 172.8만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50대 323.3만원, 60대 284.6만원, 70대 165.7만원, 80세 이상 104.5만원으로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계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주 연령이 50세 미만인 가구의 경우는 240.8만원이었다. 가구주 학력의 경우, 무학 91.1만원, 초졸 124.1만원, 중졸 176.2만원, 고졸 264.1만원, 대졸 이상이 353.9만원으로 가구주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이 272.4만원, 광역시 245.4만원, 도 244.9만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가구구성의 경우, 50세 이상 중고령자 1인으로 이루어진 단독가구의 소득 수준은 156.9만원이었으며, 50세 이상 중고령자 1인과 그 배우자로 구성된 부부가구는 280.7만원, 그 외의 가구는 303.0만원으로 나타났다.

24) 가계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의 합으로 산출되며, 세전 소득으로서 총소득의 개념임.

〈표 Ⅲ-2〉 가구 균등화 지수를 사용한 가구주 특성별 가계소득

(단위: 만원, 기준 : 월 평균)

구분		가계소득	변동계수 (CV)
전체		249.9	(1.722)
가구주 성별	남	289.7	(1.764)
	여	172.8	(3.227)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240.8	(9.414)
	50대	323.3	(2.584)
	60대	284.6	(2.219)
	70대	165.7	(3.398)
	80세 이상	104.5	(3.418)
가구주 학력	무학	91.1	(4.656)
	초졸	124.1	(3.107)
	중졸	176.2	(3.438)
	고졸	264.1	(2.216)
	대졸 이상	353.9	(2.388)
거주지역	서울	272.4	(3.380)
	광역시	245.4	(3.150)
	도	244.9	(2.101)
가구구성	단독가구	156.9	(4.246)
	부부가구	280.7	(2.498)
	그 외	303.0	(2.195)

주 : 1) 괄호 ( )안의 수치는 가계소득의 변동계수(CV) 산출결과로 단위는 %임.
2) 소득 항목 중 어느 항목이라도 무응답(-9)이 있으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표 Ⅲ-3〉은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 세부항목별 수준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대상은 소득 각 세부항목에 대해 모두 응답한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가구원으로 있는 가구이다. 가계 총소득에 대한 세부항목별 분석 결과, 근로소득은 48.2%(120.6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업소득(31.1%, 77.7만원), 공적이전소득(13.1%, 32.8만원), 재산소득(4.1%, 10.2만원), 사적이전소득(3.2%, 7.9만원), 비경상소득(0.3%, 0.8만원) 순이었다.

가구주의 인적특성별로 각 소득원천의 수준과 총소득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 가구주 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49.7%(144.1만원), 여성 가구주 가구는 43.5%(75.2만원)로, 남성 가구주 가구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재산소득(남성 3.9%, 여성 4.6%), 공적이전소득(남성 11.0%, 여성 19.9%), 사적이전소득(남성 1.9%, 여성 7.1%)은 여성 가구주 가구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주 연령대 60대까지는 근로소득의 비중(50대 58.6%, 60대 47.0%)이 높은 반면, 70대부터는 공적이전소득 비중(70대 37.7%, 80세 이상 45.8%)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80세 이상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17.7%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높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무학의 경우, 공적이전소득(47.0%)과 사적이전소득(17.8%) 등 이전소득의 비중이 전체소득의 과반을 차지하였으나, 초등학교 졸 이상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저학력자일수록 이전소득, 고학력자일수록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소득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의 거주지역 및 구성 형태별로 각 소득원천의 수준과 총소득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근로소득의 비중이 서울(51.4%), 광역시(49.5%), 도(46.6%)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소득은 도(33.2%), 광역시(28.5%), 서울(28.4%)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별로는 모두 유형의 가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단독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23.7%)이 부부가구(15.4%)나 그 외 가구(6.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 소득 세부항목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만원(%), 기준 : 균등화 가계소득)

구분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사적 이전 소득	비경상 소득
전 체		금액	120.6	77.7	10.2	32.8	7.9	0.8
		(%)	(48.2)	(31.1)	(4.1)	(13.1)	(3.2)	(0.3)
가구주 성별	남	금액	144.1	95.9	11.4	31.9	5.6	0.9
		(%)	(49.7)	(33.1)	(3.9)	(11.0)	(1.9)	(0.3)
	여	금액	75.2	42.3	7.9	34.4	12.3	0.6
		(%)	(43.5)	(24.5)	(4.6)	(19.9)	(7.1)	(0.3)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금액	172.2	48.9	3.4	12.3	3.1	0.9
		(%)	(71.5)	(20.3)	(1.4)	(5.1)	(1.3)	(0.4)
	50대	금액	189.5	118.7	7.3	5.3	2.1	0.5
		(%)	(58.6)	(36.7)	(2.3)	(1.6)	(0.6)	(0.2)
	60대	금액	133.8	91.1	12.8	39.7	6.1	1.1
		(%)	(47.0)	(32.0)	(4.5)	(13.9)	(2.1)	(0.4)
	70대	금액	43.2	32.0	13.0	62.5	14.1	1.0
		(%)	(26.1)	(19.3)	(7.8)	(37.7)	(8.5)	(0.6)
	80세 이상	금액	15.5	13.3	8.8	47.8	18.5	0.5
		(%)	(14.8)	(12.7)	(8.4)	(45.8)	(17.7)	(0.5)
가구주 학력	무학	금액	17.7	12.2	2.0	42.9	16.2	0.2
		(%)	(19.4)	(13.4)	(2.2)	(47.0)	(17.8)	(0.2)
	초졸	금액	35.7	21.5	4.4	45.6	15.9	1.0
		(%)	(28.8)	(17.3)	(3.5)	(36.7)	(12.8)	(0.8)
	중졸	금액	69.2	44.2	7.2	45.3	11.4	1.1
		(%)	(38.8)	(24.8)	(4.0)	(25.4)	(6.4)	(0.6)
	고졸	금액	124.7	96.6	9.5	26.7	5.9	0.8
		(%)	(47.2)	(36.6)	(3.6)	(10.1)	(2.2)	(0.3)
	대졸 이상	금액	199.4	103.2	17.1	29.6	3.9	0.7
		(%)	(56.3)	(29.2)	(4.8)	(8.4)	(1.1)	(0.2)

구분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사적 이전 소득	비경상 소득
거주지역	서울	금액	139.9	77.3	16.0	31.7	7.2	0.3
		(%)	(51.4)	(28.4)	(5.9)	(11.6)	(2.6)	(0.1)
	광역시	금액	121.5	70.0	10.5	35.9	7.0	0.6
		(%)	(49.5)	(28.5)	(4.3)	(14.6)	(2.9)	(0.2)
	도	금액	114.2	81.3	8.2	31.7	8.5	1.1
		(%)	(46.6)	(33.2)	(3.3)	(12.9)	(3.5)	(0.4)
가구구성	단독가구	금액	57.4	41.5	7.3	37.1	12.8	0.7
		(%)	(36.6)	(26.5)	(4.7)	(23.7)	(8.2)	(0.4)
	부부가구	금액	114.1	98.8	16.1	43.2	7.7	0.8
		(%)	(40.6)	(35.2)	(5.7)	(15.4)	(2.7)	(0.3)
	그 외	금액	180.2	90.5	7.6	20.1	3.7	0.9
		(%)	(59.5)	(29.9)	(2.5)	(6.6)	(1.2)	(0.3)

주 : 모든 소득원에 대해 응답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2. 가계지출

가계 지출은 가계수지항목분류를 준용하여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기타지출로 조사 영역을 구분하고, 조사 시점 기준 작년 한해(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개별 영역의 세부 항목별 지출 총액을 조사한다.

먼저, 소비지출은 한국표준 목적별 지출 분류 3개 부문 중 가구가 소비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서 세부 분류는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roding to Purpose; COICOP-K)를 준용한다. 구체적인 조사 항목 및 측정 내용은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소비지출의 측정내용

조사항목		측정내용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가구에서 주로 소비하거나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구매 비용(조리용 식료품, 즉석 식품 / 알코올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모든 음료)
담배 및 주류	주류비	소비 장소에 관계없이 가구에서 구입한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모든 음료
	담배비	가구에서 구입한 모든 담배 및 그 외 담배 제품
의류 및 신발		모든 종류의 의류 및 신발, 액세서리 등 구입비, 의류 및 신발 수선 및 세탁비 등(중고 의류 및 신발 구입비용도 포함)
주택, 수도,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주거비	주택 또는 주거 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한 각종 재화 및 서비스 구입 비용(월세 비용 및 주거와 관련된 주차장 임차료 포함)
	광열수도비	수도 공급 및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료 등(수도 사용요금, 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 비용, 하수 처리 비용, 공동 주택 관리비)
가구, 가사 비품 및 기타 생활 용품	가구집기 구입비	가구, 가사 비품 및 카펫 구입 및 설치, 임차 비용, 가정용 섬유제품(커튼, 침구류), 가전 제품(생활, 주방, 세탁, 냉난방, 청소), 식기류 및 주방용품, 가정·정원용 공구 및 장비, 청소 및 생활용품 등
	가사 서비스비	가구에서 보수 및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한 가사 관리인, 가정부, 요리사, 보모, 가정교사, 청소부, 조경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기업체 또는 자영업자가 제공하는 청소 및 소독, 살균 서비스 비용도 포함)
보건	통원 치료 및 의약·의료용품 및 관련 보조용품 비용	입원 치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보건 의료비용으로 의약품, 의료용품 및 관련 보조용품 구입비용, 외래환지 치료 서비스 비용, 기타 보건서비스(비급여 항목의 진단 영상 및 의료 검사 서비스, 환자 응급 수송 및 긴급 구조 서비스) 비용을 포함
	입원 치료 비용	입원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주요 기준은 입원 여부에 있으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예: 병원, 요양시설, 이동 간호 서비스 시설 등) 유형과는 관련이 없음

조사항목		측정내용
운송(교통비)		개인 운송장비(자동차, 자전거 등), 주류비, 수리비, 주차료(주거용 제외), 통행료, 운전교습비, 대중교통 이용료, 택시비, 항공비, 상품 운송 서비스(우편 및 택배료, 이사 대행 및 보관서비스)
정보 통신(통신비)		정보통신기기 구입비용와 유지비·관리비 및 임차료, 게임 이외의 소프트웨어, 이동통신 서비스, 인터넷 접속 제공 및 망 저장 서비스, 결합 통신 서비스, 텔레비전 시청료 및 수수료,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료
오락, 스포츠 및 문화	여가생활	오락, 스포츠 및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비용으로 사진 및 영상 촬영장비, 여가생활용 장비, 게임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스포츠 용품, 조경용품, 애완동물 관련 용품, 오락 및 여가 서비스 비용, 서적 및 신문, 문구용품 등 구입비
	단체여행	대상 기간 및 휴가지 등에 관계없이 운송, 숙박, 식사 제공, 관광 안내 등과 같은 단체여행과 관련한 묶음으로 결합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 단체여행 관련 지출은 개별 구성 부문별로 각 비용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육 서비스	공식교육	학위, 수료증서, 졸업 증서 등을 제공하는 공식 교육(유·초·중·고·대학(원))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입학금 및 등록금, 수업료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며, 관련되는 현장 학습비, 단위 강좌 수강료, 시험료, 학위 취득비, 시험료 등도 포함 (e-learning 및 통신 강좌 방식과 함께 텔레비전을 이용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포함)
	기타교육 (사교육비)	학원 및 보습 교육, 학원 이외 개인 교습, 정규 교육 교과가 아닌 어학 심화 과정 및 국제 어학연수, 언어능력 시험 대비 강습 등(성인도 대상에 포함)
	성인교육 (학원 및 개인 교습)	성인을 대상으로 교양 개발 또는 특정 직업훈련 중심으로 사설 강습을 제공하는 독립 개인 교습, 일반 학원 및 유사 교육시설 서비스, 시험 대비 강습, 온라인 개인 교습 등을 포함. 성인 대상 사설 강습 독립 개인 교사, 일반 학원 및 유사 교육 시설 서비스 수강료, 교양 개발 또는 특정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단기 교육과정, 시험 대비 강습료 등

조사항목		측정내용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음식 및 음료 서비스 (외식비)	음식점, 카페, 구내식당, 직장·학교 및 기타 교육 시설 구내음식점 등에서 완전 서비스·제한 서비스·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식 및 음료 서비스 포함
	숙박 서비스	자신의 주된 거처 및 부차적 거처를 떠난 여행객 및 관광객 등을 위한 서비스별도 분리되어 청구되지 않을 경우, 숙박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음식 및 음료 서비스, 가사 관리·주차·세탁 서비스, 수영장 및 운동시설·오락시설·회의 및 집회 시설 이용료 등도 포함
보험 및 금융서비스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주거, 건강, 운수, 여행자 보험 등) 관련 보험료, 각종 금융 서비스 수수료 등
개인 미용, 사회보장 및 기타 상품	개인 미용 및 기타 개인용품 및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이용 비용 및 개인 미용을 위한 전기식·비전기식 기구 구매 비용, 장신구 및 손목시계, 종교 및 신앙용품, 여행용품 및 기타 개인 용품 구매 비용, 법률 서비스 및 행정 서비스 수수료, 부동산 중개·장의·필적학 및 점성학·개인경호원·결혼상담소 서비스 수수료 및 종교 서비스 수수료 등을 포함
	사회보장 서비스	아동 보육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 대상 비의료 요양원 서비스, 재가 복지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

비소비지출은 공적 비소비 지출과 사적 비소비 지출로 구분 가능하며, 항목별 자세한 측정 내용은 〈표 Ⅲ-5〉와 같다. 이때 공적 비소비 지출은 경상 및 비경상 조세와 과징금, 그리고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에 대한 기여금이 해당하며 사적 비소비 지출은 가구간 이전 및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등이 해당한다. 이때 자산의 이전은 사적 비소비 지출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지출의 자산 이전 지출에 포함된다.

〈표 Ⅲ-5〉 비소비지출의 측정내용

조사항목	측정내용
경상·비경상 조세 및 과징금	납세 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로 경상(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경상재산세, 자동차세 등) 또는 비경상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경품 및 복권 등에 당첨한 후 납부하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등록세, 과징금(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사회보험료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이자비용	주택 구입 또는 가구 운영을 위한 차입금(예 : 대출금)에 대한 지불 이자
가구간 이전지출	친지, 친구 등과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1회성 비용(축하금, 위문금, 소비지출 보조송금, 용돈 등), 경조비(축의 및 조의금), (국내, 국외)타가구(원)에 대한 경상적 송금(생활비, 교육비, 용돈, 양육비, 이혼수당보조 등 정기적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종교단체(각종 헌금, 시주 등), 정당, 종중, 사회운동단체, 자생 상조회 등에 대한 단체회비, 사회단체 및 기타 기관 기부금

기타지출은 가계 지출 이외의 지출로서 현금으로 자산 축적 또는 구입을 위해 지출한 현금 및 부채감소를 위해 지출한 현금, 그리고 타가구에게 증여하거나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에 기부한 현금이 해당한다. 조사항목별 구체적인 측정 내용은 〈표 Ⅲ-6〉과 같다.

〈표 Ⅲ-6〉 기타지출의 측정내용

조사항목	측정내용
자산변동 지출	저축, 펀드, 유가증권, 부동산, 귀금속 등의 자산 구입을 위해 지출한 현금
부채감소 지출	차입금 상환, 할부 및 외상으로 변제, 월세(전세) 보증금 반환 등 부채 감소를 발생시킨 지출
자산 이전 지출	자산을 타 가구에게 증여하거나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에 기부한 경우로 재산 증여, 합의금, 지참금, 위자료, 예단비, 타 가구를 위한 전세 자금 및 부동산 구입비 증여 등

지출 관련 항목에 대한 조사 순서를 도식화하면 [그림 Ⅲ-2]와 같이, 각 세부 지출 항목별로 작년 한 해 지출 유무를 확인한 뒤, 해당 지출 주체가 가구인지, 또는 타 가구인지를 확인하고, 월 평균 지출 금액을 조사한다. 이외에도 KReIS는 가구 지출에서 확인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한 해 지출을 공유한 가구원 수와 적자 경험 유무 및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서 부족한 생활비 마련 방법을 추가로 조사한다.

KReIS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자녀 가구에서 부모 가구를 위해 일부 생활비를 대리 지출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10차 본조사부터 타 가구에서 지출 항목별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거나 납부해주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그 지출 금액을 조사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출 항목에 대한 대리 지출임과 동시에 현물성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현물성 사적 이전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Ⅲ-2] 가계지출(Hc) 영역 문항 순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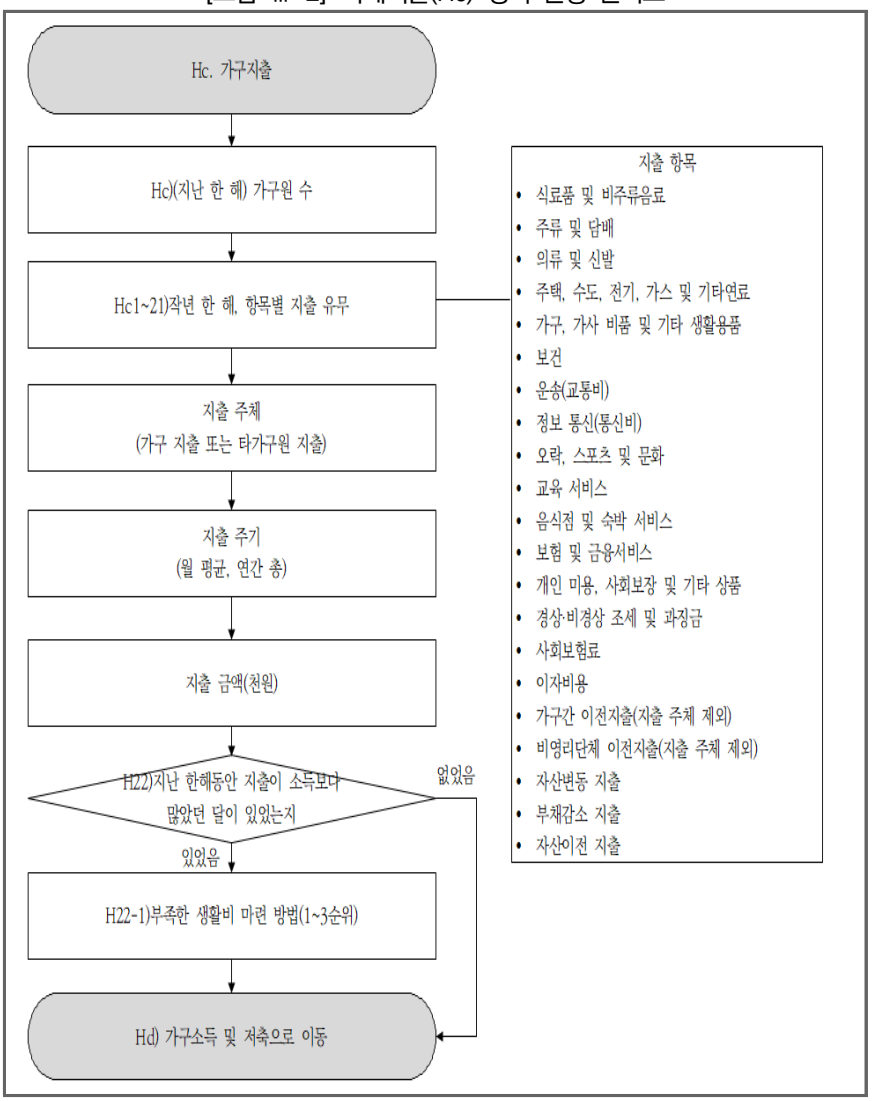

KReIS에서 조사하는 가계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합이다. 가계지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과 거주지역, 가구 구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Ⅲ-7〉과 같다. 이때, 분석 대상은 지출

항목별로 가계지출과 타인지출에 대해 모두 성실히 응답한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가구원으로 있는 가구이며, 분석 결과는 해당 가구에서 직접 지출한 가계 지출을 기준으로 가구 규모를 반영한 가구 균등화 소비지출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 중고령자 가구의 가계지출은 월평균 180.5만원으로 나타나, 월평균 가계 소득 249.9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주 성별로는 남성(200.5만원)이 여성(141.1만원) 보다 지출 수준이 높았다. 가구주 연령대를 기준으로는 가구주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231.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230.8만원, 60대 193.1만원, 70대 122.2만원 80세 이상 91.2만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계 지출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지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203.5만원), 광역시(178.4만원), 도(174.4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가구 구성 형태별로는 단독가구나 부부가구 보다 타 동거인이 있는 가구에서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 가구 균등화 지수를 사용한 가구주 특성별 가계지출

(단위: 만원, 기준 : 월 평균)

구분		균등화 가계지출	변동계수(CV)
전체		180.5	(1.306)
가구주 성별	남	200.5	(1.411)
	여	141.1	(2.583)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231.1	(10.840)
	50대	230.8	(1.825)
	60대	193.1	(1.792)
	70대	122.2	(2.754)
	80세 이상	91.2	(2.927)
가구주 학력	무학	77.2	(4.413)
	초졸	97.9	(2.410)
	중졸	127.5	(2.959)
	고졸	197.2	(1.879)
	대졸 이상	236.9	(1.785)
거주지역	서울	203.5	(2.721)
	광역시	178.4	(2.564)
	도	174.4	(1.726)
가구구성	단독가구	136.0	(2.910)
	부부가구	192.2	(1.996)
	그 외	206.8	(1.825)

주 1) 괄호 ( ) 안의 수치는 가계지출의 변동계수(CV) 산출결과로 단위는 %임.
2) 총지출을 산출에 필요한 항목에 무응답(-9)한 사례는 제외한 분석 결과임.

중고령자 가구의 전체 가계지출에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Ⅲ-8〉과 같다. 이때 분석 대상은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중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등 각 세부 항목에 대해 모두 성실히 응답한 가구이다. 소비지출은 〈표 Ⅲ-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담배 및 주류, 의류 및 신발, 가구, 가사 비품 및 기타 생활용품 등 구입비용과 주택, 수도,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비용, 보건·운송·정보 통신·오락 스포츠 및 문화 생활비, 교육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보험 및 금융서비스 구매 비용이 해당한다. 비소비지출은 〈표 Ⅲ-5〉에서와 같이 경상·비경상 조세 및 과징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등이 해당한다. 분석 결과, 중고령자 가구의 총지출 180.5만원 중 소비지출은 139.2만원으로 전체 지출의 77.1%를 차지하였으며, 비소비지출은 41.3만원으로 2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 지출 세부항목이 전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만원(%), 기준 : 월 평균)

구분		소비지출	비중	비소비지출	비중
전 체		139.2	(77.1)	41.3	(22.9)
가구주 성별	남	152.6	(76.1)	48.0	(23.9)
	여	112.8	(80.0)	28.3	(20.0)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177.4	(76.8)	53.7	(23.2)
	50대	173.2	(75.0)	57.6	(25.0)
	60대	147.5	(76.4)	45.6	(23.6)
	70대	101.7	(83.3)	20.4	(16.7)
	80세 이상	75.8	(83.0)	15.5	(17.0)
가구주 학력	무학	67.5	(87.5)	9.7	(12.5)
	초졸	83.5	(85.3)	14.4	(14.7)
	중졸	106.4	(83.5)	21.1	(16.5)
	고졸	151.4	(76.8)	45.8	(23.2)
	대졸 이상	174.8	(73.8)	62.1	(26.2)
거주지역	서울	162.4	(79.8)	41.2	(20.2)
	광역시	139.4	(78.1)	39.0	(21.9)
	도	132.0	(75.7)	42.4	(24.3)
가구구성	단독가구	108.6	(79.8)	27.4	(20.2)
	부부가구	144.9	(75.4)	47.3	(24.6)
	그 외	159.2	(77.0)	47.6	(23.0)

주) 총지출을 산출에 필요한 항목에 무응답(-9)한 사례는 제외한 분석 결과임.

〈표 Ⅲ-9〉는 기타지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기타지출은 자산변동, 부채 감소, 자산 이전 지출을 합산한 값이다. 분석 대상은 기타지출을 구성하고 있는 각 항목에 모두 응답한 가구이다. 분석 결과, 전체 중고령자 가구의 월평균 기타지출은 30.9만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구주가 남성이거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기타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 지역별로는 도, 서울, 광역시 순으로 높았으며, 가구구성은 부부가구, 그 외 가구, 단독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9〉 가구 균등화 지수를 사용한 가구주 특성별 기타지출

(단위: 만원, 기준: 월 평균)

구분		기타지출	변동계수(CV)
전체		30.9	(57.836)
가구주 성별	남	37.6	(51.777)
	여	17.9	(71.346)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19.7	(65.146)
	50대	42.4	(43.100)
	60대	39.4	(54.303)
	70대	14.9	(78.952)
	80세 이상	5.8	(92.001)
가구주 학력	무학	3.3	(88.410)
	초졸	8.2	(81.662)
	중졸	24.1	(74.257)
	고졸	31.5	(51.951)
	대졸 이상	49.4	(49.107)
거주지역	서울	30.5	(60.604)
	광역시	25.3	(60.793)
	도	33.6	(56.571)
가구구성	단독가구	19.5	(75.620)
	부부가구	41.2	(53.682)
	그 외	31.9	(49.966)

주) 괄호 ( ) 안의 수치는 가계지출의 변동계수(CV) 산출결과로 단위는 %임.

중고령자 가구 중 가계지출과 타인지출 모두 응답한 중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타인지출 수준을 분석한 결과, 〈표 Ⅲ-10〉에서와 같이 월 평균 2.0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Ⅲ-10〉 가구주 특성별 타인지출

(단위: 만원, 기준: 월 평균)

구분		타인지출	
		지출금액	변동계수(CV)
전체		2.0	(84.007)
가구주 성별	남	1.7	(86.371)
	여	2.4	(79.620)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0.5	(102.854)
	50대	1.4	(93.000)
	60대	2.0	(85.658)
	70대	2.5	(77.743)
	80세 이상	2.9	(69.599)
가구주 학력	무학	2.1	(74.491)
	초졸	3.0	(72.843)
	중졸	1.9	(81.897)
	고졸	1.8	(86.848)
	대졸 이상	1.7	(90.562)
거주지역	서울	2.2	(90.804)
	광역시	1.5	(87.210)
	도	2.1	(81.389)
가구구성	단독가구	2.2	(80.831)
	부부가구	2.1	(82.180)
	그 외	1.7	(89.389)

주 1) 괄호 ( ) 안의 수치는 가계지출의 변동계수(CV) 산출결과로 단위는 %임.
2) 지출금액은 타인지출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중 금액에 대한 무응답(-9)은 제외한 분석 결과임.

다음의 〈표 Ⅲ-11〉은 가계지출과 타인지출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때 분석대상은 가계지출과 타인지출에 대해 모두 응답한 중고령자 가구이다. 분석 결과, 가계지출과 타인지출의 합계는 월평균 182.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계지출은 98.9%, 타인지출은 1.1%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11〉 가구주 특성별 가계지출 및 타인지출

(단위: 만원(%), 기준 : 월 평균)

구분		합계 (A+B)	가계지출 (A)	비중 (%)	타인지출 (B)	비중 (%)
전체		182.5	180.5	98.9	2.0	1.1
가구주 성별	남	202.3	200.5	99.1	1.7	0.9
	여	143.5	141.1	98.3	2.4	1.7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231.6	231.1	99.8	0.5	0.2
	50대	232.2	230.8	99.4	1.4	0.6
	60대	195.1	193.1	99.0	2.0	1.0
	70대	124.6	122.2	98.0	2.5	2.0
	80세 이상	94.2	91.2	96.9	2.9	3.1
가구주 학력	무학	79.3	77.2	97.4	2.1	2.6
	초졸	100.9	97.9	97.0	3.0	3.0
	중졸	129.4	127.5	98.5	1.9	1.5
	고졸	199.0	197.2	99.1	1.8	0.9
	대졸 이상	238.7	236.9	99.3	1.7	0.7
거주지역	서울	205.7	203.5	98.9	2.2	1.1
	광역시	180.0	178.4	99.1	1.5	0.9
	도	176.5	174.4	98.8	2.1	1.2
가구구성	단독가구	138.2	136.0	98.4	2.2	1.6
	부부가구	194.3	192.2	98.9	2.1	1.1
	그 외	208.5	206.8	99.2	1.7	0.8

주) 가계지출과 타인지출 중 어느 항목이라도 무응답(-9)이 있으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3. 자산 및 부채

KReIS에서 조사하는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 및 부채는 저량 개념으로서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 받고 있다. 이때, 부채상환 여부 및 상환금은 유량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사 전년도 한해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자산과 부채 영역에 대한 하위 조사 항목과 측정 내용은 〈표 Ⅲ-12〉와 같이 세분화되어 있다. 조사 항목에 대한 순서는 각 조사항목에 대한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보유 중인 경우 해당 항목의 금액을 조사하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Ⅲ-3]과 같다.

〈표 Ⅲ-12〉 자산 및 부채 측정내용

조사항목		측정내용
비금융자산	부동산자산	자가 거주 주택과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및 토지 개량으로 구성된 기타 부동산을 포함
	자동차나 귀중품 등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자동차 및 귀금속·보석·예술품·우표 및 동전 등 귀중품을 포함
금융자산	현금 및 예금	상품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요구불예금 등
	직접투자 주식 및 채권, 펀드	거래소와 비상장주식에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 또는 투자자가 금융자산이 비금융자산 투자를 위해 자금을 모으는 집합 투자로서 적립식 및 예치식 투자 펀드 등
	비소멸성 보험 및 개인·퇴직연금 수령권	노후생활자금 또는 목돈 등을 대비하기 위한 장기저축성 보험이나 은행·생명 또는 손해보험회사·투신신탁회사 등에서 가입한 신탁형, 펀드형, 보험형 개인연금, 퇴직금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퇴직 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 등
	기타금융자산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건물·토지 등의 임차보증금과 다른 가구에 빌려주거나 기타 미수금 등
부채		담보대출 등 금융기관이나 회사에서 빌린 돈의 잔액, 사채나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돈,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곗돈, 연대보증,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에서 받은 총 금액 등으로 진 빚의 잔액 및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 신용카드 일시금 및 할부잔액, 현금서비스, 학자금 대출금 등

주 : 조사 시점을 기준이며, 부채 관련 내용 중 부채상환 여부와 상환금의 경우 작년 한해를 기준으로 응답받음.

[그림 Ⅲ-1] 자산 및 부채(He) 영역 문항 순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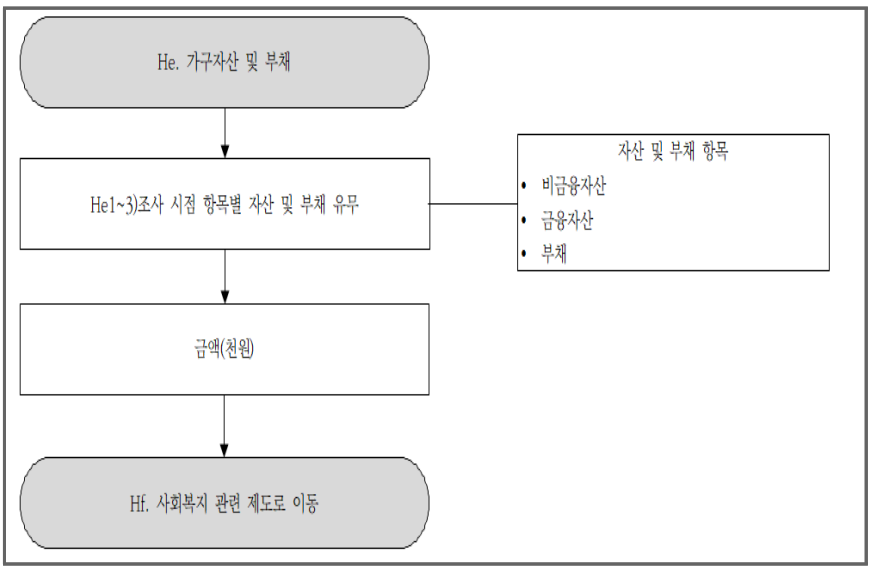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Ⅲ-13〉에 제시하였다. 이때 분석 대상은 자산과 부채 조사 항목에 대해 모두 성실히 응답한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가구원으로 있는 가구이다. 분석 결과,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평균 2억 8,949.1만원, 부채는 평균 1,999.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평균 2억 6,950.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때, 총자산은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현금 평가액을 모두 합산한 값이다.

가구 특성별 순자산을 살펴보면, 남성 가구주 가구(2억 9,804.6만원)가 여성 가구주 가구(2억 1,369.2만원)에 비해 더 많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50세 미만 가구주 가구를 제외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순자산 보유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외에도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서울 거주자인 경우, 부부가구인 경우, 순자산 보유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3〉 가구 균등화 지수를 사용한 가구주 특성별 자산 및 부채, 순자산 보유액

(단위: 만원)

구분		총자산(A)	부채(B)	순자산(C)
전체		28,949.1	1,999.0	26,950.1
가구주 성별	남	32,095.0	2,290.3	29,804.6
	여	22,798.5	1,429.3	21,369.2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17,242.2	2,527.1	14,715.2
	50대	28,773.5	1,870.0	26,903.5
	60대	33,478.2	2,797.8	30,680.4
	70대	28,871.3	1,551.4	27,319.9
	80세 이상	20,906.4	881.7	20,024.8
가구주 학력	무학	12,834.6	481.2	12,353.4
	초졸	15,854.5	637.3	15,217.2
	중졸	20,676.9	1,637.0	19,039.9
	고졸	28,393.4	2,077.8	26,315.6
	대졸 이상	42,948.3	2,997.1	39,951.3
거주지역	서울	51,895.7	3,222.2	48,673.4
	광역시	24,353.0	1,261.0	23,092.1
	도	23,799.3	1,949.7	21,849.6
가구구성	단독가구	22,374.4	1,249.8	21,124.5
	부부가구	36,122.5	2,298.9	33,823.6
	그 외	28,480.1	2,359.3	26,120.8

주 : 해당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무응답(-9) 사례는 제외한 분석 결과임.

4. 사회복지관련제도 수급 여부

[그림 Ⅲ-3] 사회복지관련제도(Hf) 영역 문항 순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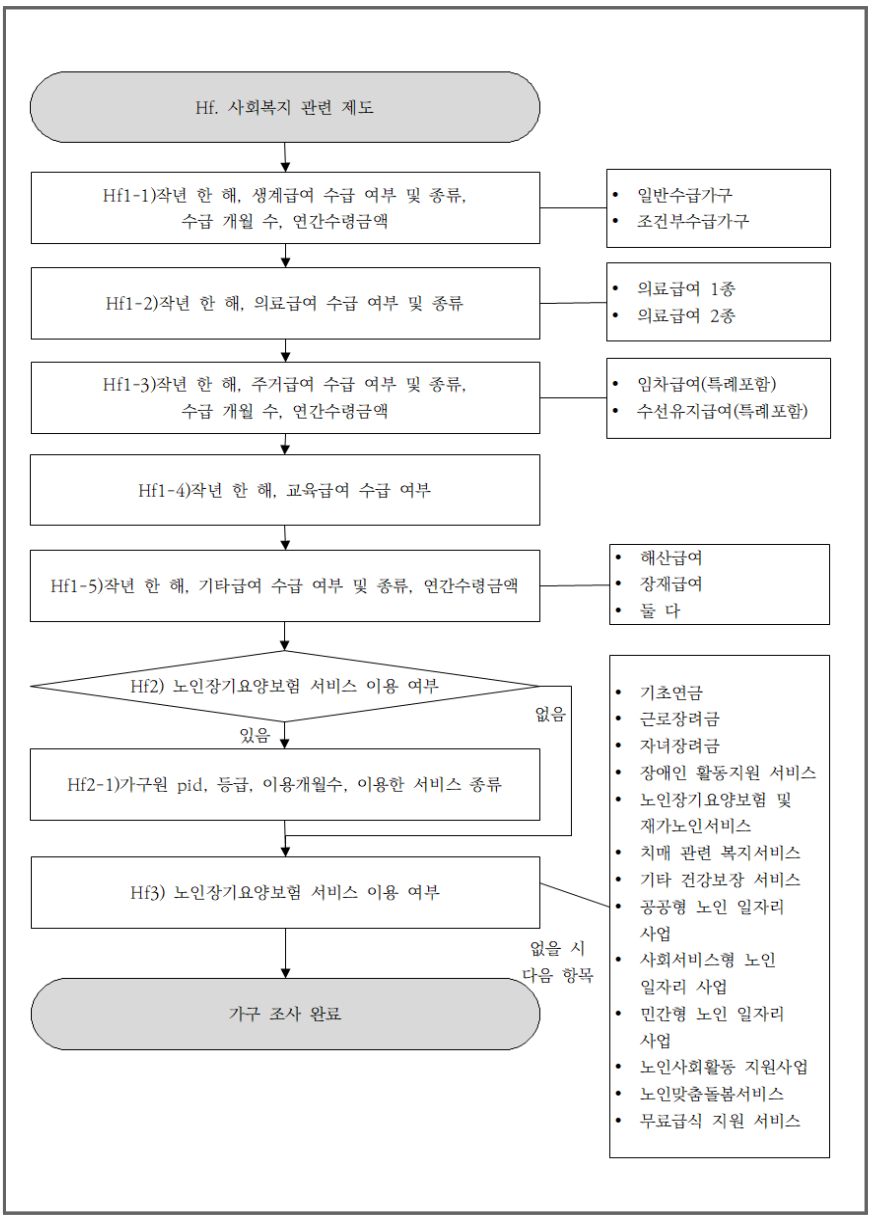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지급되며, 소득 수준 및 가구의 상황에 따라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 및 해산 급여 등이 지급된다. 이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그리고 장제 및 해산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현물 형태로 지급된다.

여기에서는 생계 급여를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생계 급여의 목적은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지원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급여라 할 수 있다.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가구원으로 있는 가구(이하, 중고령자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표 Ⅲ-14〉 참조), 전체의 5.1%가 생계 급여를 수급하였다.

〈표 Ⅲ-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

(단위: %)

구분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현황	5.1

주) 전체 가구(100.0%)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비율임.

다음의 〈표 Ⅲ-15〉는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중고령자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생계급여를 수급할 확률이 높았으며, 서울보다는 광역시나 도 지역 거주 가구가, 부부가구나 그 외 가구 유형보다는 단독가구인 경우, 수급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1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 특성

(단위: %)

구분		비율
가구주 성별	남	40.6
	여	59.4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2.4
	50대	22.4
	60대	22.7
	70대	26.3
	80세 이상	26.2
가구주 학력	무학	16.6
	초졸	24.0
	중졸	14.3
	고졸	34.7
	대졸 이상	10.4
거주 지역	서울	17.0
	광역시	42.5
	도	40.5
가구 구성	단독가구	66.5
	부부가구	10.0
	그 외	23.5

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분석함.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이 있는 자이다. 이때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중고령자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 간호 등 제공과 주간보호센터 이용 및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등이 있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되는 가족요양비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한도액이 결정되는데, 장기요양 등급별 판정 기준은 다음의 〈표 Ⅲ-16〉과 같다.

〈표 Ⅲ-16〉 장기요양등급별 판정기준 및 인정 점수

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인정점수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45점 미만

다음의 〈표 Ⅲ-17〉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등급별 비중 및 평균 이용 개월을 조사한 결과이다. KReIS는 개인조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소멸처리를 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 평균 이용개월은 재가 급여 이용에 대한 응답이다. 분석 결과, 전체 이용등급별 분포는 4등급(57.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등급(19.5%), 5등급(10.8%), 2등급(7.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장기요양보험서비스 평균 이용개월은 11.4개월이었다.

〈표 Ⅲ-17〉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관련

(단위: %, 개월)

구분		이용등급(최종시점)						평균 이용개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전 체		2.0	7.8	19.5	57.7	10.8	2.2	11.4
성별	남	5.3	0.0	9.6	79.7	5.4	0.0	11.0
	여	0.9	10.5	22.9	50.1	12.7	3.0	11.5
연령	65세 미만	0.0	0.0	13.4	0.0	86.6	0.0	12.0
	65-69세	0.0	0.0	21.5	78.5	0.0	0.0	12.0
	70-74세	0.0	0.0	0.0	100.0	0.0	0.0	12.0
	75-79세	7.9	0.0	21.0	63.1	8.0	0.0	11.0
	80-84세	0.0	4.3	37.0	49.0	9.7	0.0	11.2
	85세 이상	1.4	14.6	12.1	63.2	4.1	4.7	11.4

구분		이용등급(최종시점)						평균 이용개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학력	무학	0.0	17.1	11.7	59.7	6.1	5.4	11.6
	초졸	2.1	0.0	37.9	53.1	6.9	0.0	10.9
	중졸	0.0	0.0	25.5	74.5	0.0	0.0	11.4
	고졸	4.0	0.0	5.3	54.1	36.6	0.0	12.0
	대졸 이상	21.2	25.3	0.0	53.5	0.0	0.0	9.9
거주 지역	서울	8.3	42.5	27.8	14.8	6.5	0.0	12.0
	광역시	0.0	0.0	5.9	74.1	20.0	0.0	12.0
	도	1.2	1.7	24.8	61.3	6.8	4.2	10.8
가구 구성	단독가구	1.2	14.1	11.9	61.1	9.6	2.1	11.5
	부부가구	2.8	0.0	14.5	60.7	22.1	0.0	11.0
	그 외	3.5	0.0	47.3	44.0	0.0	5.2	11.6

주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100.0%)를 대상으로 분석함.
2) 이용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최종시점에서의 등급을 의미함.

〈표 Ⅲ-18〉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 대한 서비스 종류별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59.7%가 '방문 요양'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방문목욕(14.4%)', '주야간보호(10.6%)', '방문간호(7.9%)' 등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종류가 다원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Ⅲ-18〉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종류별 이용률

(단위: %)

구분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구매	기타
전 체		14.4	59.7	7.9	10.6	0.9	6.1	0.4
성별	남	21.3	62.4	3.6	4.3	2.0	4.5	1.9
	여	12.2	58.9	9.2	12.5	0.5	6.7	0.0
연령	65세 미만	0.0	100.0	0.0	0.0	0.0	0.0	0.0
	65-69세	44.0	48.9	0.0	7.2	0.0	0.0	0.0
	70-74세	0.0	100.0	0.0	0.0	0.0	0.0	0.0
	75-79세	9.5	78.0	0.0	3.0	3.5	2.7	3.3
	80-84세	11.2	55.5	8.7	6.9	0.0	17.8	0.0
	85세 이상	13.4	54.5	11.8	15.8	0.8	3.7	0.0
학력	무학	14.1	52.7	12.3	18.2	0.9	1.8	0.0
	초졸	9.8	65.1	4.3	5.7	0.0	15.2	0.0
	중졸	6.6	66.7	6.6	0.0	0.0	13.5	6.6
	고졸	26.3	66.9	0.0	3.9	3.0	0.0	0.0
	대졸 이상	17.5	61.6	20.9	0.0	0.0	0.0	0.0
거주 지역	서울	21.4	40.8	19.1	16.9	1.9	0.0	0.0
	광역시	17.2	69.2	0.0	12.2	0.0	1.4	0.0
	도	9.1	64.5	6.3	6.4	0.9	11.9	0.9
가구 구성	단독가구	12.4	59.2	9.8	16.0	0.7	1.9	0.0
	부부가구	23.6	63.6	7.4	1.8	2.1	1.6	0.0
	그 외	9.5	57.0	3.4	5.8	0.0	22.3	2.1

주 1)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재가 급여) 이용자(100.0%)를 대상으로 분석함.

5. 기타 노인보건복지사업

〈표 Ⅲ-19〉는 2024년(제10차 부가조사 조사시점) 기준 가구원 중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노인보건복지사업별 수급 또는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률 78.4%는 개인 단위의 수급률이 아닌 가구 단위의 수급률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표 Ⅲ-19〉 노인보건복지사업 수급 또는 이용률

(단위 : %)

구분	수급 및 이용률
기초연금	78.4
근로장려금제도	1.0
자녀장려금제도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0.8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재가노인 서비스	3.5
치매 관련 복지서비스	4.0
기타 건강보장 서비스	3.2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	5.3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	0.9
민간형 노인 일자리 사업	1.1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	2.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0.4
무료급식 지원 서비스	1.3

주 : 10차 부가조사 조사 시점(2024년) 기준, 가구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Ⅳ. 복지 태도 및 노후준비실태

여기에서는 중고령자들의 복지 태도, 즉 노인 복지 수준이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과 노후 인식 및 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은 개인 단위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성별과 연령, 학력, 경제활동상태, 가구구성, 거주지역, 가구소득분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제시하였다.

1. 복지 수준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중고령자 개인을 대상으로 복지 수준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 수준, 그리고 그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가 필요한 부분, 증세에 대한 입장, 복지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향후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등이며, 문항의 논리 흐름은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복지 수준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영역 문항 순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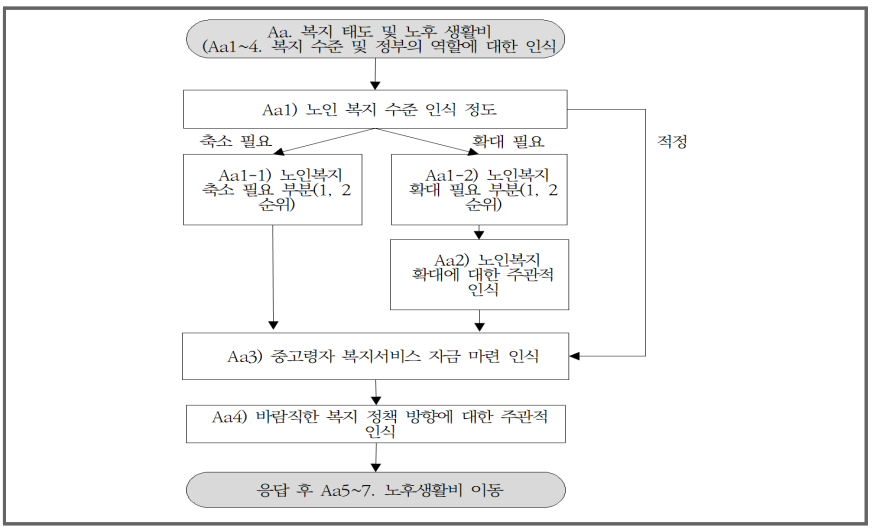

〈표 Ⅳ-1〉은 50세 이상 중고령자들이 인식하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 복지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분석 결과, 중고령자의 과반수 이상이 '적당(74.6%)'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21.8%였고, '현재 수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복지 수준에 대한 중고령자 하위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수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거나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 높을수록 현재 수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거나 적당하다고 응답하였고, 낮을수록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가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 현재 수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거나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미취업 상태의 경우,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가구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현재 수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거나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낮을수록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1〉 현재 우리나라 노인 복지 수준

(단위: %)

구분		현재 수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음	적당함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전 체		3.6	74.6	21.8
성별	남	3.7	74.3	22.0
	여	3.5	74.8	21.7
연령대	50-54세	3.4	76.4	20.2
	55-59세	4.0	76.0	20.0
	60-64세	4.5	74.5	21.1
	65-69세	2.9	73.0	24.1
	70-74세	3.4	74.4	22.2
	75-79세	2.8	73.8	23.5
	80세 이상	3.0	71.5	25.5
최종학력	무학	1.7	72.2	26.1
	초졸	3.0	70.3	26.7
	중졸	3.0	74.0	23.0
	고졸	3.8	74.1	22.1
	대졸 이상	4.0	78.0	18.0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4.0	75.5	20.5
	비취업자	3.1	73.3	23.6
가구구성	단독가구	3.2	71.1	25.7
	부부가구	4.2	76.2	19.7
	그 외	3.1	74.3	22.6
거주지역	서울	2.7	78.7	18.6
	광역시	4.9	77.4	17.7
	도	3.3	72.0	24.7
가구소득분위	1분위	2.3	72.2	25.5
	2분위	2.5	73.5	24.0
	3분위	3.0	76.1	21.0
	4분위	5.3	74.4	20.2
	5분위	4.9	77.9	17.2

앞서, 노인 복지 수준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50세 이상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의 복지가 축소되어야 하는지를 2순위까지 조사하였다. 〈표 Ⅳ-2〉는 축소되어야 하는 부문에 대한 1순위 응답 결과를 응답 비중이 높은 3개 부문까지 제시한 것이다. 이때 제시된 보기는 '노인 빈곤 완화 지원(기초연금 등)'(노인 빈곤), '노인 건강 서비스'(노인 건강), '노인 돌봄(요양) 서비스'(노인 돌봄), '치매 관련 서비스'(치매 관련), '노인 고용/일자리 지원'(노인 고용), '노후 여가 문화 서비스'(노후 여가), '노인 자원봉사/사회참여 지원'(노인 지원), '노인 특화 주거 서비스'(노인 주거), '주택 개선 및 개조 서비스'(주택개선), '노인 특화 용품(고령친화용품)지원'(노인 특화) 등 총 10가지 부문이다.

분석 결과, 축소되어야 할 부문에 대한 가장 많은 응답은 '노인 빈곤 완화 지원(기초연금 등)(23.7%)'이었으며, '노인 고용/일자리 지원(20.5%)', '노후 여가 문화 서비스(13.6%)'의 순이었다. 이는 반대로 이들 부문이 타 부문에 비해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Ⅳ-2〉 노인 복지 수준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 축소되어야 할 부문(1순위)

(단위: %)

구분		1위		2위		3위	
		항목	%	항목	%	항목	%
전 체		노인 빈곤	23.7	노인 고용	20.5	노후 여가	13.6
성별	남	노인 빈곤	27.2	노인 고용	21.3	노후 여가	14.3
	여	노인 빈곤	20.4	노인 고용	19.9	노후 여가	12.9
연령대	50-54세	노인 고용	30.9	노인 빈곤	28.2	주택 개선	7.8
	55-59세	노후 여가	21.7	노인 빈곤	18.1	노인 고용	17.9
	60-64세	노인 빈곤	35.6	노인 고용	17.0	노후 여가	11.3
	65-69세	노인 건강	22.9	노인 고용	21.9	노인 빈곤	17.5
	70-74세	노인 고용	27.3	노인 빈곤	22.3	노인 건강	17.5
	75-79세	노인 고용	20.6	노후 여가	19.1	노인 돌봄	17.7
	80세 이상	노후 여가	32.2	노인 건강	16.3	노인 빈곤	12.7
최종학력	무학	노후 여가	27.2	노인 고용	24.4	주택 개선	20.8
	초졸	노인 고용	22.7	노인 건강	15.6	노후 여가	13.1
	중졸	노인 고용	33.1	노인 건강	15.2	노인 빈곤	13.3
	고졸	노인 빈곤	28.9	노인 고용	19.9	노후 여가	14.1
	대졸 이상	노인 빈곤	23.8	노인 고용	16.4	노후 여가	12.4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노인 빈곤	26.7	노인 고용	23.1	노후 여가	11.8
	비취업자	노인 빈곤	18.5	노후 여가	16.7	노인 고용	16.1
가구구성	단독가구	노인 빈곤	26.4	노후 여가	21.0	노인 고용	15.6
	부부가구	노인 고용	21.3	노인 빈곤	20.2	노후 여가	11.7
	그 외	노인 빈곤	27.6	노인 고용	21.6	노후 여가	13.2
거주지역	서울	노인 건강	31.0	노인 고용	21.1	노인 빈곤	17.3
	광역시	노인 고용	20.4	노후 여가	18.6	노인 빈곤	18.4
	도	노인 빈곤	29.0	노인 고용	20.5	노후 여가	11.2
가구소득분위	1분위	노후 여가	22.7	치매 관련	16.4	노인 빈곤	15.3
	2분위	노인 빈곤	25.1	노후 여가	19.4	노인 건강	17.1
	3분위	노인 빈곤	23.9	노인 특화	19.2	노인 고용	18.4
	4분위	노인 고용	30.2	노인 빈곤	22.1	노인 건강	13.7
	5분위	노인 빈곤	28.8	노후 여가	14.7	노인 고용	13.5

다음으로 노인 복지 수준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50세 이상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부문의 복지가 확대되어야 하는지를 2순위까지 조사하였다. 〈표 Ⅳ-3〉은 확대되어야 하는 부문에 대한 1순위 응답 결과를 응답 비중이 높은 3개 부문까지 제시한 것이다. 이때 제시된 보기는 '노인 빈곤 완화 지원(기초연금 등)'(노인 빈곤), '노인 건강 서비스'(노인 건강), '노인 돌봄(요양) 서비스'(노인 돌봄), '치매 관련 서비스'(치매 관련), '노인 고용/일자리 지원'(노인 고용), '노후 여가 문화 서비스'(노후 여가), '노인 자원봉사/사회참여 지원'(노인 지원), '노인 특화 주거 서비스'(노인 주거), '주택 개선 및 개조 서비스'(주택개선), '노인 특화 용품(고령친화용품) 지원'(노인 특화) 등 총 10가지 부문이다.

분석 결과, 확대되어야 할 부문에 대한 가장 많은 응답은 '노인 빈곤 완화 지원(기초연금 등)(29.4%)'이었으며, '노인 고용/일자리 지원(17.9%)', '노인 건강 서비스(13.5%)'의 순이었다. 특히, 중고령자들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계없이 '노인 빈곤 완화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 노인 복지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확대되어야 할 부문(1순위)

(단위: %)

구분		1위		2위		3위	
		항목	%	항목	%	항목	%
전 체		노인 빈곤	29.4	노인 고용	17.9	노인 건강	13.5
성별	남	노인 빈곤	27.2	노인 고용	18.7	노인 건강	14.9
	여	노인 빈곤	31.3	노인 고용	17.2	노인 돌봄	13.3
연령대	50-54세	노인 빈곤	26.9	노인 돌봄	16.0	노인 고용	15.7
	55-59세	노인 빈곤	23.6	노인 고용	23.1	노인 돌봄	12.7
	60-64세	노인 빈곤	29.2	노인 고용	17.8	노인 건강	13.6
	65-69세	노인 빈곤	30.3	노인 고용	20.3	노인 건강	16.0
	70-74세	노인 빈곤	28.5	노인 건강	17.6	노인 고용	17.1
	75-79세	노인 빈곤	37.0	노인 고용	18.5	노인 건강	16.1
	80세 이상	노인 빈곤	37.1	노인 돌봄	16.0	노인 건강	14.8
최종학력	무학	노인 빈곤	46.1	노인 돌봄	16.0	노인 건강	13.2
	초졸	노인 빈곤	38.8	노인 돌봄	14.5	노인 건강	14.0
	중졸	노인 빈곤	30.0	노인 건강	19.2	노인 고용	17.9
	고졸	노인 빈곤	27.1	노인 고용	18.9	노인 돌봄	13.1
	대졸 이상	노인 빈곤	23.8	노인 고용	22.3	노인 돌봄	15.0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노인 빈곤	25.2	노인 고용	21.2	노인 돌봄	13.5
	비취업자	노인 빈곤	34.2	노인 건강	14.6	노인 고용	14.1
가구구성	단독가구	노인 빈곤	37.7	노인 돌봄	15.0	노인 건강	13.7
	부부가구	노인 빈곤	26.5	노인 고용	16.1	노인 건강	15.8
	그 외	노인 빈곤	28.2	노인 고용	21.9	노인 돌봄	11.5
거주지역	서울	노인 빈곤	36.5	노인 고용	23.4	노인 건강	12.1
	광역시	노인 고용	18.3	노인 빈곤	17.4	노인 건강	17.0
	도	노인 빈곤	31.6	노인 고용	16.5	노인 돌봄	13.9
가구소득분위	1분위	노인 빈곤	40.4	노인 건강	14.9	노인 돌봄	11.7
	2분위	노인 빈곤	26.2	노인 고용	15.4	노인 돌봄	15.2
	3분위	노인 빈곤	22.1	노인 고용	20.2	노인 건강	16.5
	4분위	노인 빈곤	26.9	노인 고용	23.1	노인 건강	12.6
	5분위	노인 빈곤	24.8	노인 고용	23.0	노인 건강	14.9

추가로, 노인 복지 수준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50세 이상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노인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표 Ⅳ-4〉 참조), '대체로 찬성(49.1%)'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체로 반대(26.1%)', '찬성(16.0%)', 반대(6.4%)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즉, 노인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자에 찬성하는 입장은 약 66.5%인데 반해, 반대하는 입장은 약 33.6%였다.

이를 총 6점 척도로 환산(매우 반대-1점, 반대-2점, 대체로 반대-3점, 대체로 찬성-4점, 찬성-5점, 매우 찬성-6점)한 결과, 전체 중고령자의 평균은 3.77점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종의 증세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중고령자 하위 집단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가구 소득 분위가 5분위인 집단이 3.92점(S.D.=0.841)이었으며, 최종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3.89점(S.D.=0.860)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찬성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거주지역이 서울인 중고령자가 3.62점(S.D.=0.873)이었으며, 최종학력이 무학인 중고령자 집단이 3.66점(S.D.=0.9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Ⅳ-4〉 노인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구분		응답 범주별 백분율						점수	
		매우 반대	반대	대체로 반대	대체로 찬성	찬성	매우 찬성	평균	(S.D)
전 체		1.1	6.4	26.1	49.1	16.0	1.4	3.77	(0.880)
성별	남	0.7	5.5	25.5	50.9	15.9	1.5	3.80	(0.846)
	여	1.4	7.1	26.7	47.4	16.0	1.4	3.74	(0.907)
연령대	50-54세	0.5	8.4	27.8	50.2	12.3	0.8	3.68	(0.843)
	55-59세	0.4	4.3	26.7	48.8	18.4	1.4	3.85	(0.833)
	60-64세	0.7	6.9	20.7	56.2	14.3	1.2	3.80	(0.835)
	65-69세	0.9	4.4	28.9	48.1	15.6	2.1	3.79	(0.866)
	70-74세	2.7	9.6	23.6	42.8	19.2	2.1	3.72	(1.034)
	75-79세	1.7	5.9	31.8	45.4	14.0	1.3	3.68	(0.894)
	80세 이상	2.0	6.4	26.5	45.5	18.4	1.2	3.75	(0.935)
최종학력	무학	0.8	8.4	34.5	38.4	16.2	1.8	3.66	(0.937)
	초졸	3.1	5.9	28.3	46.2	15.4	1.3	3.69	(0.950)
	중졸	1.8	5.2	24.7	54.2	12.9	1.2	3.75	(0.857)
	고졸	0.5	7.4	26.3	49.3	15.6	1.0	3.75	(0.860)
	대졸 이상	0.5	4.8	23.4	50.3	18.8	2.3	3.89	(0.860)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0.6	6.2	24.6	52.2	15.1	1.2	3.79	(0.840)
	비취업자	1.6	6.5	27.9	45.5	16.9	1.7	3.75	(0.923)
가구구성	단독가구	1.4	6.7	28.4	47.9	13.7	1.9	3.72	(0.899)
	부부가구	1.1	5.4	26.4	48.1	18.6	0.4	3.79	(0.859)
	그 외	0.9	7.1	24.8	50.6	14.6	2.1	3.77	(0.890)
거주지역	서울	0.6	11.1	26.2	49.9	11.7	0.5	3.62	(0.873)
	광역시	1.3	3.7	21.1	56.5	16.7	0.6	3.85	(0.807)
	도	1.1	6.1	27.8	46.5	16.7	1.9	3.77	(0.900)
가구소득분위	1분위	1.8	6.2	31.8	45.2	13.5	1.5	3.67	(0.903)
	2분위	1.0	7.0	28.4	47.6	15.4	0.7	3.72	(0.868)
	3분위	1.2	7.5	22.9	46.2	20.5	1.7	3.83	(0.937)
	4분위	0.3	7.1	22.8	52.6	15.6	1.7	3.81	(0.852)
	5분위	0.8	4.2	20.8	52.6	20.0	1.7	3.92	(0.841)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중고령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분석 결과, 중고령자의 다수는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43.1%)'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19.4%)', '모든 기업이 세금 등을 내서(15.0%)'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9.6%로 나타났다.

〈표 Ⅳ-5〉 중고령자 복지서비스 재원 마련 방법

(단위: %)

구분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내서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모든 기업이 세금 등을 내서	대기업이 세금 등을 내서
전 체		9.6	43.1	19.4	15.0	12.8
성별	남	9.8	43.0	18.9	15.1	13.2
	여	9.5	43.2	19.9	15.0	12.4
연령대	50-54세	8.7	40.9	22.3	14.4	13.6
	55-59세	13.3	42.6	19.0	13.4	11.7
	60-64세	9.1	45.2	16.9	15.7	13.2
	65-69세	8.4	46.5	16.3	15.8	13.0
	70-74세	8.2	42.4	22.0	15.7	11.7
	75-79세	8.1	41.6	21.1	15.0	14.1
	80세 이상	8.4	40.9	21.4	16.6	12.7
최종학력	무학	3.3	38.5	27.2	17.2	13.8
	초졸	9.3	39.6	22.1	15.3	13.8
	중졸	7.0	48.3	18.9	13.1	12.7
	고졸	9.7	43.3	18.9	15.8	12.4
	대졸 이상	11.8	43.1	18.1	14.2	12.9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10.3	43.2	19.3	14.6	12.7
	비취업자	8.8	43.0	19.6	15.7	12.9
가구구성	단독가구	8.7	41.6	22.6	14.6	12.5
	부부가구	10.2	44.0	18.1	15.8	12.0
	그 외	9.4	42.9	19.5	14.4	13.8
거주지역	서울	11.5	37.3	21.8	17.6	11.8
	광역시	7.6	47.4	18.1	15.1	12.0
	도	10.0	43.1	19.3	14.3	13.4
가구소득 분위	1분위	7.8	40.9	21.7	16.5	13.1
	2분위	7.1	41.7	21.3	15.2	14.7
	3분위	11.3	43.6	18.7	14.5	11.8
	4분위	9.9	45.2	18.3	15.6	11.0
	5분위	12.2	43.8	16.8	13.2	14.1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제공하는 기초연금이나 돌봄과 같은 중고령자 대상 사회서비스, 즉 조세 기반 복지제도의 제공 방향에 대해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분석 결과, 중고령자의 56.5%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되, 저소득층/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동등하게(33.5%)', '선별적으로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만 집중에서 제공(10.1%)' 순이었다.

〈표 Ⅳ-6〉 조세 기반 중고령자 대상 복지 정책 방향

(단위: %)

구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제공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되, 저소득층/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	선별적으로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만 집중해서 제공
전 체		33.5	56.5	10.1
성별	남	33.9	56.9	9.2
	여	33.2	56.1	10.8
연령대	50-54세	35.2	56.8	8.0
	55-59세	35.6	54.4	10.0
	60-64세	36.2	54.3	9.5
	65-69세	29.6	60.8	9.6
	70-74세	32.0	56.5	11.5
	75-79세	31.3	57.1	11.6
	80세 이상	29.1	58.3	12.6
최종학력	무학	30.0	53.5	16.5
	초졸	30.1	59.3	10.6
	중졸	30.3	58.0	11.6
	고졸	34.3	56.0	9.7
	대졸 이상	35.6	55.7	8.7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34.8	55.2	10.0
	비취업자	31.8	58.2	10.1
가구구성	단독가구	30.0	57.5	12.5
	부부가구	34.9	55.3	9.8
	그 외	33.4	57.3	9.3
거주지역	서울	26.4	65.3	8.3
	광역시	38.5	52.6	8.9
	도	33.5	55.4	11.1
가구소득 분위	1분위	32.1	57.5	10.4
	2분위	32.5	57.6	10.0
	3분위	33.5	56.2	10.2
	4분위	35.0	55.7	9.3
	5분위	32.7	56.4	11.0

2. 노후 인식 및 준비 실태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의학 기술의 발달과 영양 상태 등의 개선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후 준비가 매우 중요한 생애 과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로 인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 및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적연금제도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노후준비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문제는 '노후'라는 생애 단계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부재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사람마다 '노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노후를 판단하는 기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노후 준비 방식이나 시점, 수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KReIS는 개인이 인식하는 노후 인식 및 준비 실태를 다양한 차원에서 조사하였다([그림 Ⅳ-2] 참조).

[그림 Ⅳ-2] 노후생활비 영역 문항 순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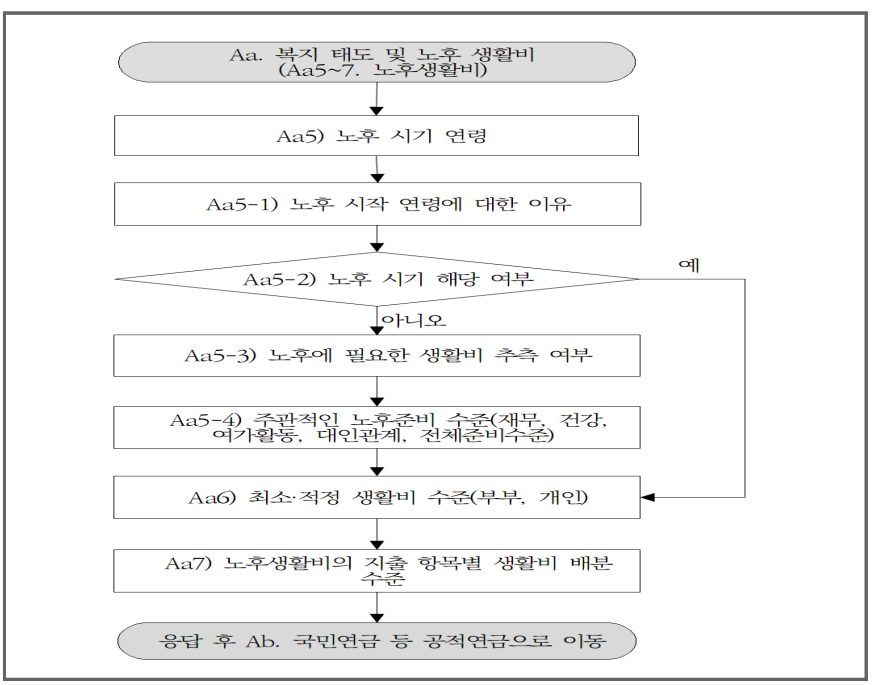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노후 시작 시기를 조사한 결과(〈표 Ⅳ-7〉 참조), 평균 68.5세부터 노후가 시작된다고 인식하였다.

〈표 Ⅳ-7〉 조사대상자 특성별 주관적 노후시작 연령

(단위: %, 세)

구분		노후시작 시기	노후해당여부(%)		실제연령(세)	
			노후	비노후	노후	비노후
전 체		68.5	31.6	68.4	75.9	59.0
성별	남	68.6	27.6	72.4	74.9	59.5
	여	68.4	35.0	65.0	76.6	58.6
연령대	50-54세	67.5	0.0	100.0	-	52.3
	55-59세	67.9	0.1	99.9	59.0	57.1
	60-64세	68.6	3.1	96.9	62.1	61.9
	65-69세	68.8	35.4	64.6	66.7	66.8
	70-74세	69.3	86.0	14.0	71.9	72.2
	75-79세	69.3	96.3	3.7	76.7	77.0
	80세 이상	69.1	100.0	0.1	84.3	82.0
최종학력	무학	68.4	94.1	5.9	82.2	65.1
	초졸	68.8	79.2	20.8	77.6	66.1
	중졸	68.9	51.1	48.9	74.8	62.8
	고졸	68.4	19.5	80.5	73.1	58.9
	대졸 이상	68.2	12.0	88.0	72.8	57.6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68.4	16.4	83.6	72.4	58.4
	비취업자	68.6	51.6	48.4	77.3	60.6
가구구성	단독가구	68.4	56.3	43.7	78.3	60.0
	부부가구	68.7	34.7	65.3	74.4	60.5
	그 외	68.3	18.0	82.0	75.8	57.6
거주지역	서울	68.3	33.4	66.6	75.1	59.1
	광역시	68.3	31.1	68.9	75.6	58.9
	도	68.6	31.2	68.8	76.3	59.1
가구소득분위	1분위	68.8	69.3	30.7	78.5	61.7
	2분위	68.5	41.7	58.3	75.2	59.6
	3분위	68.2	25.2	74.8	72.9	59.2
	4분위	68.7	16.3	83.7	73.5	58.5
	5분위	68.3	8.6	91.4	72.1	58.2

50세 이상 중고령자들이 노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과반수의 응답자(50.1%)가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노후 시작 시기로 인식하였으며,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시기(26.7%)'와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시기(13.9%)'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에(4.0%)'와 '회갑 이후이기 때문에(3.7%)', '첫 손자 또는 손녀를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1.7%)'와 같은 사유는 응답률이 매우 낮았다.

〈표 Ⅳ-8〉 조사대상자 특성별 주관적 노후 시작 사건

(단위: %)

구분		평균 노후 시작시기 (세)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첫 손자 또는 손녀를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회갑 이후이기 때문에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타
전 체		68.5	26.7	1.7	3.7	13.9	50.1	4.0	-
성별	남	68.6	28.4	1.9	3.5	14.1	48.4	3.7	-
	여	68.4	25.1	1.6	3.8	13.7	51.7	4.2	-
연령대	50-54세	67.5	31.0	2.6	4.9	17.0	41.4	3.1	-
	55-59세	67.9	26.7	1.5	4.5	18.1	44.9	4.3	-
	60-64세	68.6	29.7	1.9	3.2	13.8	47.9	3.5	-
	65-69세	68.8	23.5	1.6	3.1	13.4	53.8	4.6	-
	70-74세	69.3	26.7	0.8	1.4	9.6	56.9	4.6	-
	75-79세	69.3	21.2	1.8	3.5	8.7	60.8	4.2	-
	80세 이상	69.1	21.9	1.9	4.2	8.5	59.8	3.8	-
최종학력	무학	68.4	19.1	1.1	5.7	10.5	58.5	5.1	-
	초졸	68.8	22.2	1.6	4.0	8.8	58.9	4.5	-
	중졸	68.9	24.0	1.5	2.6	12.5	55.5	4.0	-
	고졸	68.4	27.7	1.8	3.2	14.9	48.6	3.9	-
	대졸 이상	68.2	29.2	1.9	4.5	15.6	45.1	3.7	-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68.4	27.2	1.7	4.1	14.8	48.3	4.0	-
	비취업자	68.6	26.0	1.8	3.2	12.6	52.5	3.9	-
가구구성	단독가구	68.4	23.7	1.8	3.6	13.1	54.7	3.1	-
	부부가구	68.7	25.6	1.7	3.4	14.0	51.4	4.1	-
	그 외	68.3	29.0	1.8	4.1	14.1	46.8	4.2	-
거주지역	서울	68.3	33.9	0.9	3.5	8.9	49.4	3.5	-
	광역시	68.3	23.4	1.3	3.4	21.2	47.6	3.3	-
	도	68.6	25.8	2.2	3.9	12.1	51.5	4.4	-
가구소득 분위	1분위	68.8	23.3	1.8	3.0	10.7	57.5	3.7	-
	2분위	68.5	26.6	2.2	3.4	12.4	51.3	4.1	-
	3분위	68.2	26.8	2.0	3.8	14.7	48.4	4.3	-
	4분위	68.7	27.0	1.6	4.3	14.3	49.2	3.6	-
	5분위	68.3	27.9	1.1	3.9	17.4	45.6	4.0	-

다음으로 본인이 노후시기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지 않은 50세 이상 중고령자만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4대 영역인 재무, 건강, 여가활동,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각 영역의 준비 수준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표 Ⅳ-9〉 참조), 중고령자들의 전체 노후 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에 52.7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재무 49.7점, 건강 57.4점, 여가활동 47.9점, 대인관계 55.8점으로, 건강과 대인관계 영역의 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재무와 여가활동 영역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항목별 노후준비 수준

(단위: 점/100점)

구분		재무	건강	여가활동	대인관계	전체 준비수준
전 체		49.7	57.4	47.9	55.8	52.7
성별	남	50.0	58.1	48.2	55.8	53.0
	여	49.4	56.7	47.7	55.7	52.4
연령대	50-54세	48.1	59.8	47.8	56.3	53.0
	55-59세	50.5	59.2	48.8	57.1	53.9
	60-64세	51.0	56.7	48.8	56.3	53.2
	65-69세	48.0	51.2	44.1	50.5	48.4
	70-74세	48.4	52.3	48.4	53.9	50.7
	75-79세	46.5	47.7	46.6	52.4	48.3
	80세 이상	30.0	20.0	30.0	20.0	25.0
최종학력	무학	44.6	45.2	37.8	46.5	43.5
	초졸	40.8	47.8	38.9	45.7	43.3
	중졸	45.3	51.8	42.6	52.7	48.1
	고졸	48.2	56.2	46.5	54.8	51.4
	대졸 이상	54.1	61.7	52.6	59.2	56.9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50.2	58.7	48.0	56.8	53.4
	비취업자	48.6	54.3	47.8	53.5	51.1
가구구성	단독가구	44.3	53.9	43.2	51.7	48.3
	부부가구	52.5	58.7	50.3	58.0	54.9
	그 외	48.4	57.0	46.9	54.7	51.8
거주지역	서울	50.1	56.0	45.4	53.5	51.3
	광역시	50.6	61.0	50.5	59.2	55.3
	도	49.2	56.2	47.5	54.9	51.9
가구소득 분위	1분위	40.4	48.9	40.2	47.6	44.3
	2분위	45.6	54.2	44.9	53.0	49.4
	3분위	50.0	58.4	48.1	56.4	53.2
	4분위	50.4	57.7	48.8	56.4	53.3
	5분위	54.9	61.4	52.2	59.3	56.9

KReIS에서는 개인조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노후에 필요로 하는 생활비를 조사하고 있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노후생활비는 가계 소비 지출 비용과 함께 가구 유형(단독가구, 부부가구)에 따른 노후 필요 자금 추정에 활용될 수 있다. 필요 노후 생활비는 최소 수준과 적정 수준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임을 전제할 때 드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최소생활비는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적정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한다.

다음의 〈표 Ⅳ-10〉은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노후 필요 생활비 산정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27.3%만이 노후 필요 생활비를 계산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72.7%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중고령자의 경우 노후 필요 생활비를 계산한 경험이 타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10〉 노후 필요 생활비 계산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 체		27.3	72.7
성별	남	27.9	72.1
	여	26.7	73.3
연령대	50-54세	19.6	80.4
	55-59세	25.3	74.8
	60-64세	32.6	67.4
	65-69세	33.8	66.3
	70-74세	30.2	69.8
	75-79세	27.6	72.4
	80세 이상	0.0	100.0
최종학력	무학	10.0	90.0
	초졸	22.5	77.5
	중졸	29.1	70.9
	고졸	26.4	73.6
	대졸 이상	29.0	71.0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27.5	72.5
	비취업자	26.9	73.1
가구구성	단독가구	29.8	70.2
	부부가구	28.6	71.4
	그 외	25.6	74.4
거주지역	서울	34.3	65.7
	광역시	23.6	76.5
	도	26.9	73.1
가구소득분위	1분위	22.5	77.5
	2분위	27.6	72.4
	3분위	28.0	72.0
	4분위	28.0	72.0
	5분위	27.5	72.5

〈표 Ⅳ-11〉은 50세 이상 중고령자들 대상으로 응답자가 생각한 최소 수준의 노후생활비와 적정 수준의 노후생활비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개인을 기준으로 한 최소 노후 필요 생활비는 월 평균 139.2만원, 적정 노후 필요 생활비는 월 평균 197.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부부를 기준으로 한 최소 노후 필요 생활비는 개인 기준의 약 1.56배인 월 평균 216.6만원, 적정 노후 필요 생활비는 개인 기준의 약 1.51배인 월 평균 298.1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 적정 생활비

(단위: 만원)

구분		최소 생활비		적정 생활비	
		부부기준	개인기준	부부기준	개인기준
전 체		216.6	139.2	298.1	197.6
성별	남	221.2	142.1	303.7	200.7
	여	212.5	136.6	293.1	194.8
연령대	50-54세	234.4	147.9	321.1	209.7
	55-59세	235.8	148.9	325.3	209.9
	60-64세	224.7	146.2	309.9	207.9
	65-69세	217.6	143.0	295.7	201.5
	70-74세	195.9	129.4	270.7	182.3
	75-79세	187.6	121.5	259.1	174.2
	80세이상	169.9	107.1	236.5	157.1
최종학력	무학	159.9	95.4	230.3	145.3
	초졸	175.4	110.8	246.2	165.4
	중졸	195.3	126.5	274.8	182.3
	고졸	218.5	141.3	299.5	200.0
	대졸 이상	250.1	160.9	340.0	222.9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226.2	144.6	311.6	205.2
	비취업자	203.8	132.0	280.2	187.5
가구구성	단독가구	190.1	120.4	266.1	175.9
	부부가구	217.0	139.6	297.2	196.8
	그 외	227.0	146.5	312.3	207.3
거주지역	서울	242.8	161.5	329.6	222.9
	광역시	212.3	135.7	287.6	188.2
	도	210.2	133.7	292.9	193.9
가구소득 분위	1분위	178.8	113.4	252.2	166.7
	2분위	202.5	130.2	280.8	187.5
	3분위	216.3	138.9	295.9	198.0
	4분위	230.1	148.6	315.6	207.1
	5분위	250.7	160.9	340.1	223.9

다음의 〈표 Ⅳ-12〉에서는 〈표 Ⅳ-11〉의 최소 및 적정 노후생활비 기준에 따른 지출 항목별 배분을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가 최저생활비(24.2%), 적정생활비(24.7%)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보험료(최저생활비 10.6%, 적정생활비 8.2%), 주택·수도·전기·가스 및 기타 연료(최저생활비 7.1%, 적정생활비 6.9%)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2〉 최소, 적정 생활비 지출항목별 배분

(단위:%, 개인기준)

구 분		최저생활비	적정생활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24.2	24.7
주류 및 담배		1.5	1.4
의류 및 신발		3.5	4.3
주택, 수도,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7.1	6.9
가구, 가사비품 및 기타 생활용품		1.2	1.5
보건	통원 치료 및 의약·의료용품 및 관련보조용품 비용	5.1	6.2
	입원 치료 비용	2.0	2.5
운송(교통비)		5.7	5.4
정보통신(통신비)		4.2	4.2
오락, 스포츠및문화		2.6	3.5
교육 서비스		2.1	2.1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5.1	5.8
보험 및 금융서비스		3.8	3.4
개인 미용, 사회보장 및 기타상품	개인 미용 및 기타 개인용품 및 서비스	3.4	3.7
	사회보장 서비스	1.0	1.1
경상·비경상 조세 및 과징금		4.9	4.4
사회보험료		10.6	8.2
이자비용		0.8	0.7
가구간 이전지출		4.0	3.5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1.7	1.9
자산변동, 부채감소, 자산이전 지출		5.4	4.7

Ⅴ.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본 장에서는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상 제도는 국민연금을 위시한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제도와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이다.

1. 공적연금

우리나라는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부사관이나 장교 등 군인 및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국장 및 사무원, 집배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KReIS는 제10차 부가조사에서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공적연금 적용 상태별로 노후 준비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그림 Ⅴ-1]에서와 같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가입 및 수급 관련 실태를 상세히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중고령자의 가입 상태와 수급 계획, 예상 수급액, 노후 생활비 충족 정도, 수급액 만족도 등이며, 추가로 국민연금 관련 제도 인식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림 V-1] 공적연금 등 공적연금 영역(Ab) 문항 순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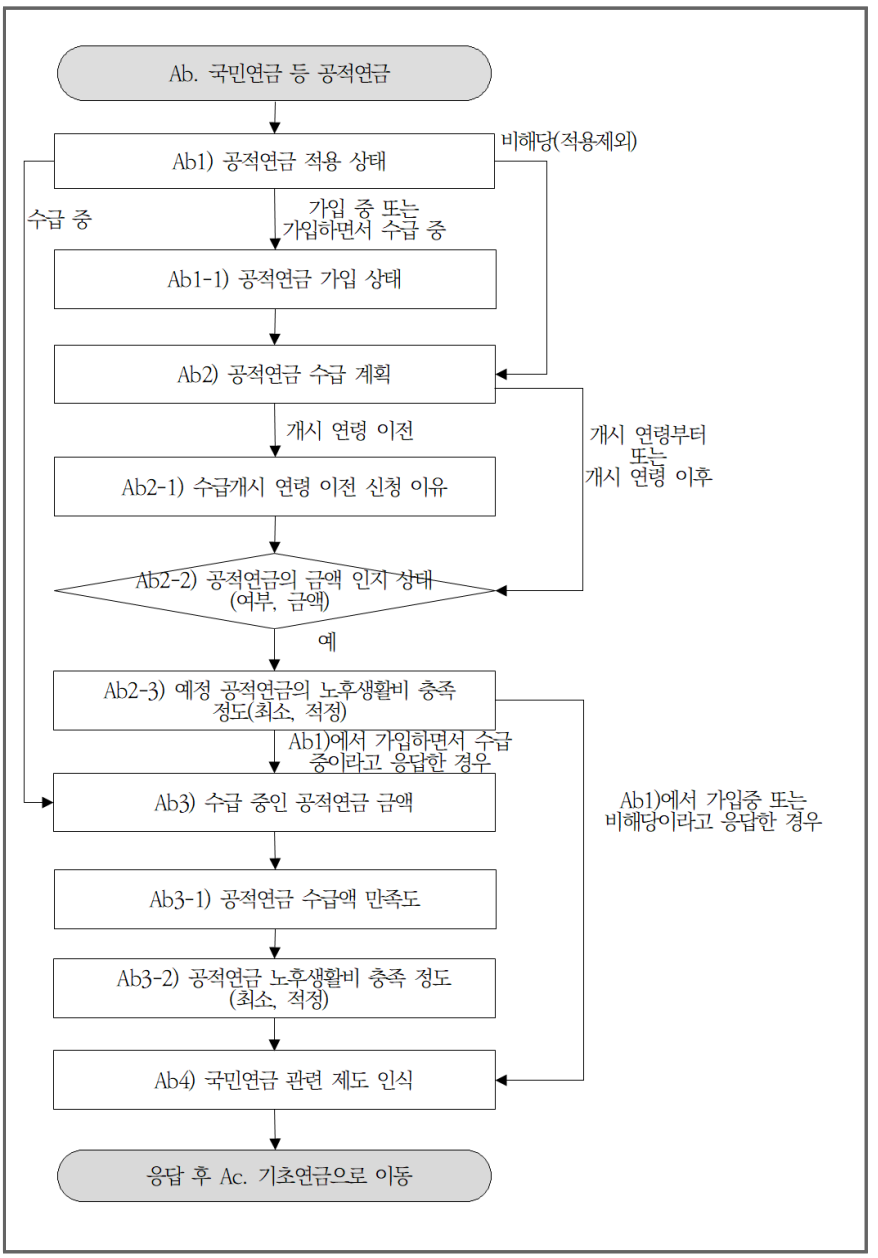

다음의 〈표 V-1〉은 50세 이상 64세 이하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적용 상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중고령자의 53.9%(가입하면서 수급 중 0.2% 포함)는 현재 공적연금에 가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해당(적용제외)은 36.8%, 수급 중은 9.3%로 조사되었다.

〈표 V-1〉 공적연금 적용 상태

(단위: %)

구분		가입 중	수급 중	가입하면서 수급 중	비해당 (적용제외)
전 체		53.7	9.3	0.2	36.8
성별	남	54.7	12.7	0.1	32.5
	여	52.7	6.0	0.3	41.1
연령대	50-54세	80.4	0.0	0.2	19.4
	55-59세	77.3	1.1	0.4	21.3
	60-64세	7.6	25.4	0.0	67.1
최종학력	무학	19.6	13.3	0.0	67.2
	초졸	13.9	20.4	0.0	65.6
	중졸	29.1	14.5	0.0	56.4
	고졸	51.5	8.4	0.3	39.8
	대졸 이상	63.1	9.2	0.1	27.6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63.5	7.3	0.2	29.0
	비취업자	27.9	14.7	0.2	57.2
가구구성	단독가구	60.2	11.2	0.6	28.1
	부부가구	45.7	10.9	0.0	43.3
	그 외	58.4	7.7	0.2	33.6
거주지역	서울	57.7	9.8	0.2	32.4
	광역시	52.4	9.5	0.0	38.1
	도	53.1	9.1	0.3	37.6
가구소득분위	1분위	27.2	9.6	0.0	63.2
	2분위	46.4	7.7	0.0	45.9
	3분위	51.5	9.9	0.4	38.2
	4분위	58.0	9.0	0.0	33.0
	5분위	63.3	9.8	0.2	26.7

〈표 V-2〉는 현재 공적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하면서 수급 중'인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어떤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국민연금 가입자(96.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사업장 가입자 43.0%, 지역가입자 51.1%, 임의가입자 1.8%, 임의계속가입자 0.6%로 나타났다.

〈표 V-2〉 공적연금 가입 종류

(단위: %)

구분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국민연금			
						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 계속
전 체		2.6	0.8	0.0	-	43.0	51.1	1.8	0.6
성별	남	3.7	1.0	0.1	-	47.7	47.0	0.2	0.4
	여	1.4	0.6	0.0	-	38.4	55.3	3.5	0.9
연령대	50-54세	2.3	1.0	0.0	-	44.1	51.3	1.4	0.0
	55-59세	2.5	0.7	0.1	-	43.6	51.2	2.0	0.0
	60-64세	5.1	0.8	0.0	-	28.9	48.9	3.4	13.0
최종학력	무학	0.0	0.0	0.0	-	60.8	39.2	0.0	0.0
	초졸	0.0	0.0	0.0	-	40.7	59.3	0.0	0.0
	중졸	0.0	0.0	0.0	-	32.8	63.4	2.0	1.8
	고졸	1.7	0.1	0.1	-	39.9	56.1	1.6	0.6
	대졸 이상	3.9	1.8	0.0	-	47.5	44.1	2.1	0.7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3.0	1.0	0.0	-	50.0	45.0	0.7	0.4
	비취업자	0.4	0.0	0.0	-	2.0	87.3	8.5	1.9
가구구성	단독가구	1.4	0.7	0.0	-	37.0	60.2	0.8	0.0
	부부가구	2.7	0.6	0.0	-	42.2	50.5	2.6	1.4
	그 외	2.8	1.0	0.1	-	44.7	49.6	1.6	0.3
거주지역	서울	1.2	0.6	0.0	-	45.9	47.7	3.7	0.9
	광역시	2.6	0.8	0.0	-	48.3	46.7	1.3	0.3
	도	3.0	0.9	0.1	-	39.7	54.2	1.5	0.7
가구소득분위	1분위	0.0	0.0	0.0	-	20.6	77.7	0.9	0.8
	2분위	0.7	0.0	0.0	-	39.9	56.4	2.6	0.5
	3분위	3.0	0.5	0.0	-	42.2	52.5	1.0	0.9
	4분위	1.9	0.4	0.1	-	48.8	46.4	1.6	0.7
	5분위	4.4	1.9	0.0	-	45.5	45.3	2.3	0.5

65세 미만 공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수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표 V-3〉 참조), '수급개시연령부터 받을 계획'인 중고령자는 전체의 49.9%였고, '수급개시 연령 이후에 받을 계획'인 중고령자는 18.0%, '수급개시 연령 이전에 받을 계획'인 중고령자는 17.5%, '공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중고령자는 14.6%였다.

〈표 V-3〉 공적연금 가입자의 수급 계획

(단위: %)

구분		수급개시 연령 이전에 받을 계획	수급개시 연령부터 받을 계획	수급개시 연령 이후에 받을 계획	공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함
전 체		17.5	49.9	18.0	14.6
성별	남	15.4	56.9	19.5	8.2
	여	19.4	43.6	16.7	20.3
연령대	50-54세	18.3	54.9	17.1	9.7
	55-59세	20.4	52.4	18.0	9.2
	60-64세	12.6	41.1	18.9	27.4
최종학력	무학	44.6	13.7	13.9	27.8
	초졸	11.7	24.4	6.3	57.6
	중졸	23.8	30.1	14.8	31.2
	고졸	19.2	48.3	17.1	15.5
	대졸 이상	14.1	56.7	20.5	8.7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15.4	55.8	20.7	8.2
	비취업자	23.7	33.1	10.3	32.9
가구구성	단독가구	14.5	47.8	19.5	18.2
	부부가구	14.9	51.1	17.8	16.2
	그 외	20.0	49.4	17.9	12.8
거주지역	서울	15.8	50.9	23.3	9.9
	광역시	20.9	45.3	19.6	14.2
	도	16.5	51.7	15.7	16.1
가구소득 분위	1분위	25.6	28.8	7.9	37.7
	2분위	20.5	43.2	13.7	22.6
	3분위	18.7	50.1	16.0	15.1
	4분위	15.7	52.5	20.2	11.6
	5분위	12.6	58.7	22.5	6.2

수급 개시 연령 이전에 급여를 받으려는 주된 이유는 '노후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25.6%)'였으며, 이 외에도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 같아서(23.1%)', '조기에 신청하여 오랫동안 받으려고(22.9%)'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표 Ⅴ-4〉 수급 시작연령 이전에 신청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노후에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기에 신청하여 오랫동안 받으려고	수급 시작 연령까지 일하기 싫어서	수급 시작 연령까지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 같아서	기타
전 체		25.6	22.9	11.6	16.8	23.1	-
성별	남	25.6	27.2	8.5	15.2	23.5	-
	여	25.6	19.9	13.9	17.9	22.8	-
연령대	50-54세	26.8	24.6	8.1	14.4	26.2	-
	55-59세	26.2	20.6	14.7	18.7	19.8	-
	60-64세	22.4	25.8	9.8	16.0	26.1	-
최종학력	무학	47.4	52.7	0.0	0.0	0.0	-
	초졸	13.8	0.0	14.3	43.5	28.4	-
	중졸	19.0	26.9	13.7	16.3	24.2	-
	고졸	27.6	22.3	11.6	17.4	21.1	-
	대졸 이상	23.1	23.4	11.4	15.1	27.0	-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24.6	23.7	10.4	15.2	26.2	-
	비취업자	27.5	21.6	13.9	19.7	17.3	-
가구구성	단독가구	38.9	14.1	8.9	18.9	19.3	-
	부부가구	25.2	23.4	12.4	14.2	24.9	-
	그 외	24.0	23.9	11.6	17.9	22.6	-
거주지역	서울	25.5	14.2	12.7	15.6	32.0	-
	광역시	19.6	29.7	14.9	15.0	20.8	-
	도	29.1	21.4	9.4	18.2	21.9	-
가구소득분위	1분위	39.0	26.2	3.8	17.7	13.3	-
	2분위	34.8	19.4	10.6	15.8	19.4	-
	3분위	23.6	18.5	17.2	16.3	24.4	-
	4분위	20.8	23.9	13.8	17.7	23.8	-
	5분위	20.6	25.7	5.8	18.7	29.2	-

현재 공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예상 수급액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V-5〉 참조), 응답자의 대부분(86.6%)은 본인이 어느 정도의 급여를 수급할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표 V-5〉 공적연금 가입자의 특성별 예상 수급액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인지	비인지
전 체		13.4	86.6
성별	남	14.7	85.3
	여	12.1	87.9
연령대	50-54세	11.5	88.6
	55-59세	13.0	87.0
	60-64세	16.8	83.2
최종학력	무학	0.0	100.0
	초졸	0.0	100.0
	중졸	13.0	87.0
	고졸	12.1	87.9
	대졸 이상	15.7	84.3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14.2	85.8
	비취업자	10.4	89.6
가구구성	단독가구	14.1	85.9
	부부가구	15.8	84.2
	그 외	11.7	88.4
거주지역	서울	20.3	79.7
	광역시	8.0	92.0
	도	13.9	86.1
가구소득분위	1분위	10.7	89.3
	2분위	9.5	90.5
	3분위	12.6	87.4
	4분위	13.1	86.9
	5분위	17.1	83.0

〈표 V-6〉은 예상 수급액을 인지하고 있는 공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예상연금액과 해당 급여 수준이 최소 및 적정 노후 생활비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공적연금 월평균 예상연금액은 85.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소 및 적정 노후 생활비의 2.24~2.54점 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 공적연금 예상 수급액의 노후생활비 충족 정도

(단위: 만원, 점)

구분		월평균 예상연금액		최소노후생활비 충족정도		적정노후생활비 충족정도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전 체		85.0	(54.595)	2.54	(0.910)	2.24	(0.898)
성별	남	102.7	(56.583)	2.73	(0.870)	2.39	(0.849)
	여	62.6	(42.605)	2.30	(0.905)	2.05	(0.924)
연령대	50-54세	97.1	(59.436)	2.54	(0.941)	2.30	(0.960)
	55-59세	76.7	(52.148)	2.46	(0.895)	2.15	(0.865)
	60-64세	86.1	(51.888)	2.66	(0.899)	2.31	(0.885)
최종학력	무학	-	-	-	-	-	-
	초졸	-	-	-	-	-	-
	중졸	73.4	(56.627)	2.74	(0.865)	2.34	(0.767)
	고졸	71.8	(43.558)	2.47	(0.881)	2.17	(0.883)
	대졸 이상	100.2	(60.985)	2.59	(0.944)	2.31	(0.923)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89.0	(55.546)	2.55	(0.927)	2.24	(0.895)
	비취업자	63.4	(43.614)	2.49	(0.818)	2.25	(0.918)
가구구성	단독가구	69.0	(41.731)	2.52	(0.885)	2.20	(0.925)
	부부가구	88.0	(51.120)	2.49	(0.910)	2.19	(0.897)
	그 외	85.5	(59.620)	2.60	(0.917)	2.29	(0.895)
거주지역	서울	84.2	(58.378)	2.59	(0.921)	2.37	(0.952)
	광역시	86.2	(61.854)	2.63	(0.936)	2.22	(0.887)
	도	85.0	(50.806)	2.50	(0.899)	2.19	(0.872)
가구소득 분위	1분위	60.9	(27.754)	2.44	(0.572)	2.26	(0.693)
	2분위	74.8	(50.489)	2.43	(0.788)	2.22	(0.756)
	3분위	76.7	(47.184)	2.53	(0.848)	2.23	(0.859)
	4분위	89.8	(50.885)	2.58	(0.975)	2.28	(0.898)
	5분위	95.4	(62.716)	2.61	(0.975)	2.28	(0.983)

〈표 V-7〉은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연금액과 급여액 만족도, 그리고 급여액의 노후 생활비 충족 정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월평균 연금액은 67.3만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8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당 연금액은 최소 및 적정 노후 생활비의 2.71~2.92점 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 공적연금 수급액의 노후생활비 충족 정도

(단위: 만원, 점)

구분		월평균 연금액		만족도		최소노후생활비 충족정도		적정노후생활비 충족정도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전 체		67.3	(74.062)	3.58	(0.817)	2.92	(1.166)	2.71	(1.209)
성별	남	80.3	(80.858)	3.62	(0.726)	2.95	(1.223)	2.76	(1.258)
	여	46.8	(56.114)	3.52	(0.939)	2.87	(1.069)	2.62	(1.125)
연령대	65-69세	76.7	(73.909)	3.58	(0.837)	2.83	(1.380)	2.60	(1.397)
	70-74세	66.9	(73.175)	3.58	(0.751)	3.01	(0.974)	2.80	(1.042)
	75-79세	57.1	(71.184)	3.56	(0.740)	2.90	(1.060)	2.70	(1.124)
	80세 이상	59.0	(77.097)	3.61	(0.958)	3.03	(0.985)	2.82	(1.045)
최종학력	무학	34.6	(35.352)	3.66	(1.279)	2.85	(1.032)	2.64	(1.082)
	초졸	35.1	(27.257)	3.58	(0.725)	2.87	(1.118)	2.64	(1.156)
	중졸	48.7	(44.102)	3.41	(0.989)	2.81	(0.970)	2.57	(1.055)
	고졸	72.0	(68.332)	3.62	(0.706)	2.97	(1.113)	2.74	(1.171)
	대졸 이상	130.0	(113.192)	3.64	(0.772)	3.04	(1.516)	2.89	(1.504)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57.8	(52.639)	3.60	(0.816)	2.79	(1.344)	2.59	(1.355)
	비취업자	73.9	(85.338)	3.56	(0.817)	3.02	(1.014)	2.79	(1.089)
가구구성	단독가구	49.5	(59.078)	3.56	(0.748)	2.92	(1.051)	2.68	(1.112)
	부부가구	73.4	(79.014)	3.65	(0.704)	3.00	(1.197)	2.79	(1.230)
	그 외	72.2	(73.953)	3.43	(1.058)	2.77	(1.197)	2.55	(1.245)
거주 지역	서울	77.5	(86.268)	3.36	(0.721)	2.66	(0.955)	2.51	(0.967)
	광역시	67.0	(70.892)	3.59	(0.966)	3.02	(0.988)	2.77	(1.107)
	도	63.6	(70.001)	3.66	(0.765)	2.98	(1.290)	2.75	(1.322)
가구소득 분위	1분위	35.7	(25.361)	3.47	(0.771)	2.88	(1.019)	2.65	(1.086)
	2분위	59.9	(57.149)	3.65	(0.909)	2.98	(1.097)	2.76	(1.133)
	3분위	80.1	(76.822)	3.64	(0.708)	2.94	(1.388)	2.71	(1.428)
	4분위	91.1	(98.734)	3.66	(0.714)	2.89	(1.385)	2.68	(1.410)
	5분위	120.8	(111.821)	3.56	(0.706)	2.95	(0.995)	2.80	(1.039)

마지막으로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 관련 사항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 문항은 총 5개로 '국민연금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국민연금은 소득 수준별로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이 다름',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한 연금을 받음', '국민연금은 정상 수급 개시 연령보다 일찍 받으면 감액된 급여를 받음', '국민연금은 정상 수급 개시 연령보다 늦게 받으면 증액된 급여를 받음'과 같이 국민연금의 의무성, 소득재분배 기능, 연금액의 실질가치보장, 조기노령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 등에 대한 내용이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의 강제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중고령자는 66.0%였으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중고령자는 62.7%, 국민연금 급여의 실질가치보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중고령자는 66.1%, 조기노령연금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중고령자는 63.9%,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중고령자는 65.2%였다.

〈표 V-8〉 국민연금제도 관련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국민연금은 당연히(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국민연금은 소득 수준별로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이 다름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한 연금을 받음	국민연금은 정상 수급 개시 연령보다 일찍 받으면 감액된 급여를 받음	국민연금은 정상 수급 개시 연령보다 늦게 받으면 증액된 급여를 받음
전 체		66.0	62.7	66.1	63.9	65.2
성별	남	73.7	70.6	73.3	72.5	73.1
	여	59.3	55.6	59.7	56.3	58.2
연령대	50-54세	74.6	73.7	73.4	73.7	74.7
	55-59세	75.2	73.3	75.5	74.7	75.3
	60-64세	71.8	69.2	72.7	71.2	73.7
	65-69세	68.0	62.8	66.4	64.4	65.3
	70-74세	59.0	52.3	60.8	54.8	56.2
	75-79세	50.5	46.0	52.2	43.8	46.7
	80세 이상	36.1	30.4	35.0	32.9	32.4
최종학력	무학	27.8	23.2	28.9	23.0	21.2
	초졸	41.7	36.6	42.4	36.6	38.0
	중졸	57.4	50.6	56.9	51.6	55.2
	고졸	70.1	66.5	70.2	68.4	69.9
	대졸 이상	79.9	79.3	79.8	80.5	80.6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73.8	71.5	74.1	73.1	73.9
	비취업자	55.7	51.0	55.5	51.8	53.5
가구구성	단독가구	53.9	47.4	53.2	49.8	49.9
	부부가구	66.5	64.7	67.7	64.7	67.0
	그 외	70.6	66.8	69.8	68.9	69.5
거주지역	서울	71.3	67.2	71.6	68.0	69.3
	광역시	71.6	65.6	69.4	68.4	69.6
	도	61.9	59.9	62.9	60.6	61.8
가구소득 분위	1분위	46.4	39.9	46.5	42.2	43.0
	2분위	60.6	55.8	59.5	56.3	58.4
	3분위	70.2	68.5	70.3	67.7	70.0
	4분위	73.1	69.9	74.6	72.5	74.0
	5분위	78.5	78.7	79.2	79.7	79.9

2.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이다. 제10차 부가조사 조사 시점인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급여 수준은 단독가구인 경우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인 경우 월 최대 535,680원(단독가구의 1.6배)를 수급할 수 있다.

제10차 부가조사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노후 생활 도움 정도와 금액 만족도, 그리고 비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는 [그림 V-2]의 흐름대로 진행되었다.

[그림 V-2] 기초연금 영역(Ac) 문항 순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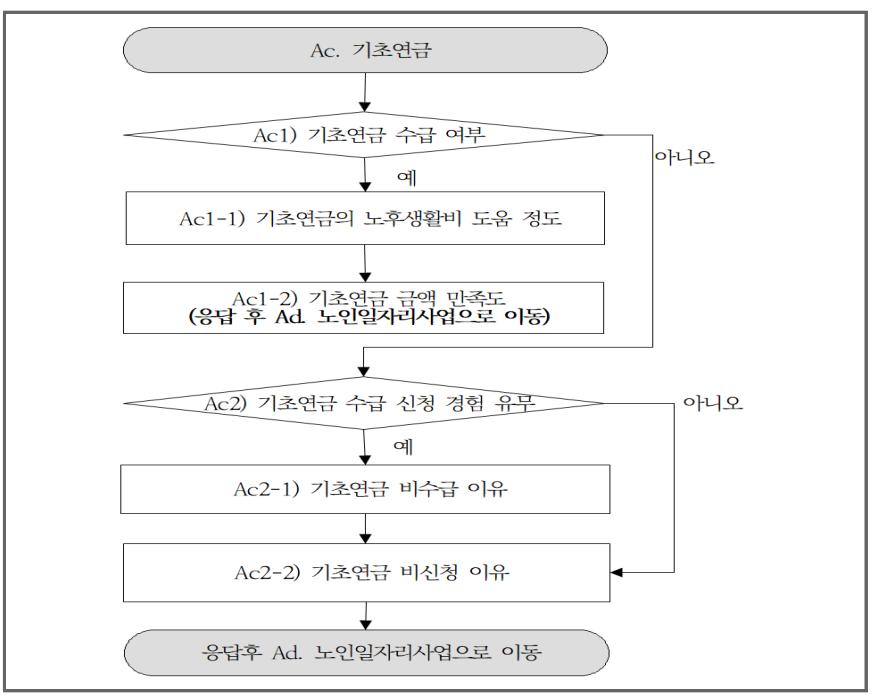

〈표 V-9〉에 따르면, 65세 이상 중고령자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72.5%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 시점인 2024년 12월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인 66.0%와 비교할 때, 6.5%p 높은 결과이다.

〈표 V-9〉 기초연금 수급 여부

(단위: %)

구분		수급	비수급
전 체		72.5	27.5
성별	남	64.6	35.4
	여	78.5	21.5
연령대	65-69세	56.3	43.8
	70-74세	74.4	25.6
	75-79세	79.2	20.9
	80세 이상	87.6	12.4
최종학력	무학	96.0	4.0
	초졸	89.1	10.9
	중졸	77.2	22.8
	고졸	63.5	36.5
	대졸 이상	31.5	68.5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69.2	30.8
	비취업자	74.2	25.8
가구구성	단독가구	83.8	16.2
	부부가구	65.8	34.2
	그 외	73.8	26.2
거주지역	서울	61.4	38.6
	광역시	78.2	21.8
	도	73.8	26.2
가구소득분위	1분위	88.9	11.1
	2분위	73.2	26.8
	3분위	66.5	33.5
	4분위	58.1	42.0
	5분위	30.6	69.4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노후생활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77.1%(도움이 되는 편 63.4%, 매우 도움이 됨 13.7%)의 수급자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표 V-10〉 참조).

〈표 V-10〉 기초연금 노후생활비 도움 정도

(단위: %, 점)

구분		응답 범주별 백분율					점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	도움이 되는 편	매우 도움이 됨	평균	(S.D)
전 체		1.2	4.5	17.2	63.4	13.7	3.84	(0.757)
성별	남	0.9	5.5	17.9	64.1	11.6	3.80	(0.746)
	여	1.5	3.8	16.7	63.0	15.0	3.86	(0.763)
연령대	65-69세	1.7	4.9	22.8	60.7	9.8	3.72	(0.775)
	70-74세	2.1	5.1	15.9	64.3	12.7	3.81	(0.798)
	75-79세	0.8	5.4	15.8	63.9	14.1	3.85	(0.751)
	80세 이상	0.4	2.8	14.2	64.8	17.8	3.97	(0.685)
최종학력	무학	0.4	2.3	14.5	64.6	18.2	3.98	(0.678)
	초졸	1.2	3.0	14.8	66.0	15.1	3.91	(0.716)
	중졸	0.7	4.5	17.6	63.3	13.9	3.85	(0.731)
	고졸	2.3	6.0	18.9	62.5	10.4	3.73	(0.817)
	대졸 이상	0.0	11.1	28.1	49.7	11.1	3.61	(0.829)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1.5	4.9	17.9	63.9	11.9	3.80	(0.763)
	비취업자	1.1	4.3	16.8	63.2	14.6	3.86	(0.753)
가구구성	단독가구	1.1	2.6	12.1	64.6	19.6	3.99	(0.722)
	부부가구	0.9	5.5	18.2	63.4	12.0	3.80	(0.749)
	그 외	2.1	4.8	21.5	62.1	9.5	3.72	(0.783)
거주지역	서울	2.3	12.2	21.9	52.8	10.7	3.57	(0.920)
	광역시	1.0	3.4	13.9	71.1	10.6	3.87	(0.671)
	도	1.1	2.8	17.3	62.9	16.0	3.90	(0.727)
가구소득분위	1분위	0.7	3.9	15.8	62.6	17.1	3.91	(0.734)
	2분위	0.8	3.1	14.9	66.6	14.7	3.91	(0.694)
	3분위	2.6	4.2	17.5	67.9	7.8	3.74	(0.767)
	4분위	1.8	10.0	21.7	59.1	7.4	3.60	(0.836)
	5분위	5.6	5.6	26.2	57.5	5.2	3.51	(0.90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표 V-11〉 참조), 63.7%(만족함 56.8%, 매우 만족함 6.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V-11〉 기초연금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응답 범주별 백분율					점수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평균	(S.D)
전 체		1.0	8.5	26.8	56.8	6.9	3.60	(0.779)
성별	남	1.5	8.2	28.6	54.9	6.9	3.58	(0.796)
	여	0.7	8.7	25.7	58.0	6.9	3.62	(0.767)
연령대	65-69세	0.7	11.3	30.0	52.1	6.0	3.51	(0.798)
	70-74세	1.5	7.7	28.3	55.9	6.7	3.59	(0.787)
	75-79세	1.1	8.6	27.5	55.7	7.2	3.59	(0.787)
	80세 이상	0.8	6.6	22.1	62.9	7.7	3.70	(0.735)
최종학력	무학	0.7	7.3	21.4	58.8	11.9	3.74	(0.786)
	초졸	0.4	7.7	23.9	60.1	8.0	3.68	(0.746)
	중졸	0.3	9.7	27.2	56.3	6.5	3.59	(0.767)
	고졸	2.5	8.7	31.2	53.1	4.5	3.49	(0.814)
	대졸 이상	0.0	10.7	34.1	53.1	2.2	3.47	(0.714)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1.1	8.4	26.9	56.7	6.9	3.60	(0.783)
	비취업자	0.9	8.5	26.8	56.9	6.9	3.60	(0.776)
가구구성	단독가구	0.8	7.3	22.1	61.8	8.0	3.69	(0.752)
	부부가구	1.3	8.9	27.2	55.4	7.3	3.58	(0.804)
	그 외	0.6	9.4	32.0	53.3	4.9	3.53	(0.754)
거주지역	서울	2.2	15.7	32.6	47.4	2.1	3.32	(0.839)
	광역시	0.8	6.8	28.0	57.6	6.7	3.63	(0.744)
	도	0.7	7.2	24.7	59.1	8.3	3.67	(0.759)
가구소득 분위	1분위	0.8	9.2	24.9	57.2	7.9	3.62	(0.791)
	2분위	0.7	6.8	24.8	59.8	7.8	3.67	(0.746)
	3분위	2.1	6.3	26.7	60.4	4.5	3.59	(0.765)
	4분위	1.3	11.3	33.9	48.2	5.3	3.45	(0.813)
	5분위	0.0	8.2	35.6	51.1	5.2	3.53	(0.723)

65세 이상 중고령자 중 기초연금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경험을 조사한 결과(〈표 V-12〉 참조), 15.8%는 신청 경험이 있었으나 수급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84.2%는 신청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기초연금 수급신청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수급신청 경험 있음	수급신청 경험 없음
전 체		15.8	84.2
성별	남	15.8	84.2
	여	15.7	84.3
연령대	65-69세	13.6	86.4
	70-74세	15.0	85.0
	75-79세	19.5	80.5
	80세 이상	22.9	77.1
최종학력	무학	24.4	75.6
	초졸	23.5	76.5
	중졸	18.5	81.5
	고졸	18.5	81.5
	대졸 이상	7.1	92.9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13.4	86.6
	비취업자	17.3	82.8
가구구성	단독가구	26.6	73.4
	부부가구	12.4	87.6
	그 외	17.4	82.6
거주지역	서울	11.7	88.3
	광역시	14.3	85.7
	도	18.4	81.6
가구소득분위	1분위	24.6	75.4
	2분위	18.2	81.8
	3분위	16.8	83.2
	4분위	8.5	91.5
	5분위	12.0	88.0

〈표 V-13〉은 65세 이상 수급 신청 경험이 있는 기초연금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비수급 사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92.7%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수급자격 요건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청 후 대기 중은 7.3%였다.

〈표 V-13〉 기초연금 비수급 이유

(단위: %)

구분		수급자격 요건 초과	신청 후 대기 중	기타
전 체		92.7	7.3	-
성별	남	90.3	9.7	-
	여	95.9	4.1	-
연령	65-69세	83.8	16.2	-
	70-74세	100.0	0.0	-
	75-79세	100.0	0.0	-
	80세 이상	100.0	0.0	-
학력	무학	100.0	0.0	-
	초졸	100.0	0.0	-
	중졸	100.0	0.0	-
	고졸	89.7	10.3	-
	대졸 이상	84.6	15.4	-
배우자 유무	있음	90.3	9.7	-
	없음	98.0	2.0	-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81.7	18.3	-
	비취업자	98.2	1.8	-
가구구성	단독가구	97.6	2.4	-
	부부가구	96.4	3.6	-
	그 외	81.0	19.0	-
거주지역	서울	93.6	6.5	-
	광역시	93.3	6.7	-
	도	92.3	7.7	-
가구소득 분위	1분위	100.0	0.0	-
	2분위	100.0	0.0	-
	3분위	94.9	5.1	-
	4분위	84.1	15.9	-
	5분위	68.3	31.7	-

다음의 〈표 V-14〉는 기초연금 수급 신청 경험이 없는 기초연금 비수급 중고령자의 84.2%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때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소득 및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신청 자격(소득 하위 70%)이 되지 않아서(신청 자격이 되지 않음)', '제도의 세부 내용(*신청기간, 자격요건 등)을 잘 몰라서(제도 세부 내용을 모름)', '신청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혹은 신청하기 귀찮아서)',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인식이 싫어서(수급자라는 인식이 싫음)', '타 제도에서 충분히 지원 받고 있음(예: 기초생활수급 등)(타제도에서 충분히 지원 받음)', '연령 미달로 인해서(만 65세 미만)', '별다른 이유 없음' 등 총 8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신청 경험이 없는 중고령자의 대다수(68.5%)는 본인이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별다른 이유 없음(10.9%)', '타 제도에서 충분히 지원받음(6.6%)' 등의 사유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4〉 기초연금 수급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신청 자격이 되지 않음	제도 세부 내용을 모름	신청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수급자라는 인식이 싫음	타제도에서 충분히 지원받음	연령 미달로 인해서	별다른 이유 없음
전 체		68.5	3.2	5.7	0.4	0.6	6.6	4.2	10.9
성별	남	67.0	2.1	4.6	0.3	0.1	8.0	5.9	11.9
	여	70.4	4.5	7.1	0.4	1.2	4.8	2.0	9.7
연령	65-69세	64.4	3.3	4.8	0.3	0.1	5.4	8.0	13.7
	70-74세	73.4	2.6	7.4	0.3	1.8	6.7	0.0	7.7
	75-79세	74.2	4.5	5.0	0.0	0.0	7.3	0.0	9.1
	80세 이상	70.2	1.8	8.5	1.1	1.1	11.7	0.0	5.8
학력	무학	57.0	0.0	34.2	0.0	5.0	0.0	0.0	3.8
	초졸	61.1	5.6	5.1	0.0	2.2	11.2	0.9	13.9
	중졸	69.7	4.0	6.7	1.2	0.0	3.4	4.0	11.1
	고졸	66.2	4.2	5.8	0.4	0.4	6.8	5.9	10.3
	대졸 이상	73.6	1.0	4.3	0.0	0.5	6.6	3.2	10.8
배우자 유무	있음	69.1	3.5	5.4	0.4	0.6	6.2	4.3	10.5
	없음	65.5	1.9	7.4	0.0	0.3	8.3	3.9	12.7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70.0	2.8	4.4	0.0	0.4	2.3	7.2	13.0
	비취업자	67.6	3.4	6.6	0.6	0.7	9.4	2.3	9.5
가구 구성	단독가구	70.2	2.3	4.9	0.0	0.4	8.8	2.0	11.3
	부부가구	70.5	3.4	5.5	0.5	0.6	5.8	3.9	9.7
	그 외	61.6	3.1	6.9	0.0	0.5	7.4	6.5	14.1
거주 지역	서울	77.0	0.0	4.9	0.0	0.3	2.5	1.8	13.6
	광역시	52.9	9.5	3.0	0.6	1.1	12.8	8.5	11.7
	도	69.5	2.7	7.2	0.5	0.5	6.6	4.0	9.0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66.0	7.7	9.2	0.6	1.3	4.7	2.6	7.9
	2분위	66.7	3.9	7.2	0.5	0.6	7.4	5.7	8.0
	3분위	57.6	4.0	9.4	0.9	0.6	12.1	1.9	13.5
	4분위	79.0	1.4	4.0	0.0	0.0	3.2	3.5	9.0
	5분위	71.0	0.7	1.2	0.0	0.7	6.3	5.4	14.7

Ⅵ.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은 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일부 사업에 한해 만 60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사업 유형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사업 유형별 참여자 선발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Ⅵ-1〉 참조). 먼저, 공공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그리고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으로,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등의 활동이 있다. 사회서비스형은 만 60세 이상(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가능)을 대상으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등)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이다. 민간형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자, 노인일자리를 포함하여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표 Ⅵ-1〉 노인 일자리 사업 내용

구분	유형	사업대상	주요 사업내용
공공형	공익 활동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 (배우자 포함)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ex)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선수 활동

구분	유형	사업대상	주요 사업내용
사회서비스형		만65세 이상 (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가능)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ex.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등)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만 60세 이상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취업 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고령자 친화 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지원

10차 부가조사가 수행된 2024년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수가 총 103만 개로 전년(2023년 88.3만 개) 대비 14.7만 개가 증가하는 등 대규모로 확대되었다. 또한, 일자리의 지원금 또한 소폭이나마 증가시킴으로써[25] 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에 조사 대상 중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 인구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는 KReIS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KReIS의 10차 부가조사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인지 및 참여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며, 관련 문항의 조사 순서 및 논리 흐름은 [그림 Ⅵ-1]과 같다.

25) 2018년 이후 6년 만에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단가를 7% 인상하였다. 공익활동형의 경우, 2024년부터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월 71.3만원에서 월 76.1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수령한다.

[그림 Ⅵ-1] 노인 일자리 사업 영역 문항 순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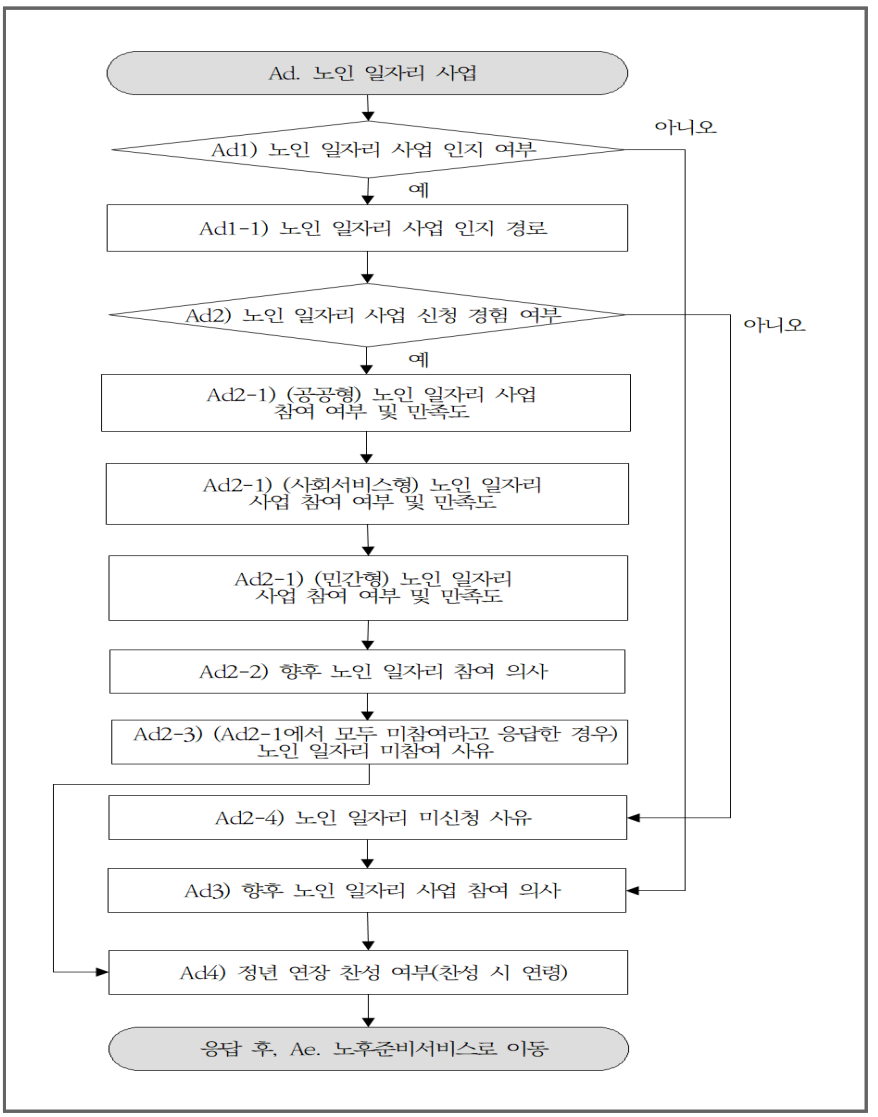

1. 노인일자리 사업 인지 수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인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표 Ⅵ-2〉 참조), 80.6%의 응답자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Ⅵ-2〉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들어본적 있음			들어본적 없음
		소계	들어본 적이 있고 잘 알고 있음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름	
전 체		80.6	28.6	52.0	19.4
성별	남	82.1	27.4	54.7	17.9
	여	79.4	29.5	49.9	20.6
연령대	65-69세	81.4	24.9	56.4	18.6
	70-74세	81.8	30.4	51.3	18.3
	75-79세	82.0	32.8	49.2	18.0
	80세 이상	77.1	28.2	48.8	23.0
최종학력	무학	76.9	29.6	47.3	23.1
	초졸	80.6	30.3	50.2	19.5
	중졸	81.5	28.4	53.1	18.5
	고졸	81.7	28.4	53.3	18.3
	대졸 이상	79.2	24.9	54.3	20.8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80.7	29.9	50.8	19.3
	비취업자	80.6	27.9	52.6	19.5
가구구성	단독가구	80.9	32.7	48.2	19.1
	부부가구	81.1	26.0	55.2	18.9
	그 외	79.2	29.7	49.5	20.8
거주지역	서울	74.7	30.4	44.3	25.3
	광역시	84.5	24.3	60.2	15.5
	도	80.9	29.9	51.0	19.1
가구소득 분위	1분위	81.8	30.6	51.2	18.2
	2분위	81.3	28.1	53.2	18.7
	3분위	80.5	23.2	57.3	19.5
	4분위	78.3	30.4	47.9	21.7
	5분위	78.7	27.4	51.4	21.3

65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인지 경로를 조사한 결과(〈표 Ⅵ-3〉 참조), '이웃이나 친구 등을 통해(45.7%)' 인지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24.1%)', '주민센터 직원이나 복지기관을 통해(1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Ⅵ-3〉 노인일자리사업의 인지 경로

(단위: %)

구분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주민센터 직원이나 복지기관을 통해	가족(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친인척 등)을 통해	이웃이나 친구 등을 통해	우편물, 집 근처의 알림판 등 홍보물을 통해	기타
전 체		24.1	16.6	11.0	45.7	2.6	-
성별	남	29.8	14.8	10.9	41.3	3.2	-
	여	19.6	17.9	11.1	49.3	2.1	-
연령대	65-69세	30.2	14.5	10.7	41.5	3.2	-
	70-74세	25.1	16.8	10.2	44.8	3.1	-
	75-79세	20.2	19.6	10.6	48.5	1.2	-
	80세 이상	17.5	16.6	12.9	50.5	2.5	-
최종학력	무학	15.0	16.0	12.5	54.9	1.6	-
	초졸	15.8	17.3	10.3	55.2	1.4	-
	중졸	22.6	17.0	11.4	46.2	2.8	-
	고졸	30.2	17.1	10.0	39.4	3.3	-
	대졸 이상	36.0	12.8	14.1	33.4	3.8	-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26.1	18.5	9.9	43.3	2.3	-
	비취업자	23.1	15.5	11.7	47.0	2.8	-
가구구성	단독가구	17.8	21.6	8.3	50.6	1.7	-
	부부가구	26.3	15.6	11.2	44.3	2.5	-
	그 외	26.4	12.9	13.6	43.3	3.8	-
거주지역	서울	15.8	15.9	13.6	52.8	1.9	-
	광역시	26.1	18.3	10.9	41.9	2.9	-
	도	25.8	16.0	10.3	45.2	2.7	-
가구소득 분위	1분위	19.1	19.9	10.6	48.6	1.9	-
	2분위	26.3	14.6	10.3	46.6	2.2	-
	3분위	26.4	16.9	11.5	40.9	4.3	-
	4분위	26.1	13.0	12.1	45.1	3.8	-
	5분위	37.8	12.4	14.3	33.5	2.0	-

2.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실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표 Ⅵ-4〉 참조), 15.5%가 신청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4〉 노인일자리사업 신청 경험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전 체		15.5	84.5
성별	남	11.5	88.5
	여	18.8	81.2
연령대	65-69세	7.7	92.3
	70-74세	16.0	84.0
	75-79세	22.1	78.0
	80세 이상	20.7	79.3
최종학력	무학	24.7	75.3
	초졸	23.6	76.4
	중졸	16.3	83.7
	고졸	9.8	90.2
	대졸 이상	4.5	95.5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19.4	80.6
	비취업자	13.5	86.5
가구구성	단독가구	24.7	75.4
	부부가구	12.8	87.2
	그 외	11.1	88.9
거주지역	서울	12.5	87.5
	광역시	14.4	85.6
	도	17.0	83.0
가구소득분위	1분위	23.1	76.9
	2분위	16.3	83.7
	3분위	9.2	90.8
	4분위	6.8	93.2
	5분위	3.2	96.8

노인 일자리사업 신청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별 참여율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표 Ⅵ-5〉 참조), 참여율의 경우, 공공형이 42.7%로 가장 높았고, 민간형은 5.3%, 사회서비스형은 5.1%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 만족도는 공공형 3.9점, 사회서비스형 4.2점, 민간형 3.6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사회서비스형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유형별 참여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은 민간형의 참여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모델의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고연령층에서 공공형의 참여율이 높았고, 저연령층에서는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최종학력별로는 저학력자는 공공형, 고학력자는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공공형의 참여율이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가구 소득 분위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공공형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대상 기준에 따른 결과로 이해 가능한데, 공공형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26]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의 경우 소기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6)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도 해당되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볼 수 있다.

〈표 Ⅵ-5〉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율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민간형	
		참여율	평균 (S.D.)	참여율	평균 (S.D.)	참여율	평균 (S.D.)
전 체		42.7	3.93 (0.724)	5.1	4.24 (0.666)	5.3	3.61 (0.573)
성별	남	33.8	3.80 (0.736)	5.1	3.90 (0.705)	8.0	3.75 (0.458)
	여	47.2	3.98 (0.716)	5.2	4.40 (0.597)	3.9	3.47 (0.658)
연령대	65-69세	24.0	3.95 (1.104)	13.4	4.46 (0.557)	21.3	3.52 (0.631)
	70-74세	38.1	3.96 (0.659)	6.5	3.86 (0.696)	1.6	3.45 (0.704)
	75-79세	51.6	4.01 (0.609)	3.4	4.28 (0.725)	0.0	- -
	80세 이상	48.7	3.83 (0.753)	1.2	4.61 (0.599)	4.5	3.90 (0.317)
최종학력	무학	51.7	3.77 (0.885)	0.0	- -	6.9	3.44 (0.573)
	초졸	45.2	3.98 (0.723)	2.0	4.39 (0.520)	3.0	3.42 (0.811)
	중졸	41.5	3.91 (0.662)	7.2	3.96 (0.840)	5.8	3.59 (0.568)
	고졸	34.6	4.04 (0.549)	11.2	4.30 (0.616)	7.8	3.92 (0.304)
	대졸 이상	32.5	3.70 (1.021)	14.8	4.53 (0.706)	7.0	3.33 (0.667)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57.4	3.96 (0.723)	10.5	4.28 (0.661)	8.1	3.62 (0.615)
	비취업자	31.2	3.89 (0.727)	1.1	3.96 (0.713)	3.1	3.60 (0.520)
가구구성	단독가구	52.4	3.93 (0.772)	3.8	4.24 (0.641)	7.2	3.41 (0.642)
	부부가구	34.9	3.91 (0.718)	6.9	4.33 (0.582)	5.3	3.88 (0.348)
	그 외	38.3	3.99 (0.572)	3.9	3.87 (1.069)	0.5	4.00 -
거주지역	서울	43.4	3.66 (0.826)	6.8	4.00 (0.000)	13.2	3.38 (0.530)
	광역시	35.3	4.02 (0.611)	2.4	3.56 (0.821)	4.0	4.00 (0.000)
	도	45.5	3.97 (0.722)	5.9	4.41 (0.646)	4.0	3.64 (0.655)
가구소득 분위	1분위	51.2	3.90 (0.772)	2.1	3.87 (0.730)	3.0	3.53 (0.752)
	2분위	32.7	3.99 (0.697)	8.5	4.25 (0.588)	10.4	3.62 (0.518)
	3분위	33.5	4.01 (0.433)	3.8	4.30 (1.168)	5.6	3.51 (0.577)
	4분위	27.9	3.68 (0.626)	15.3	5.00 -	8.0	4.00 -
	5분위	26.7	4.00 -	0.0	- -	0.0	- -

주 : 참여 여부 및 만족도 모두 응답한 경우에만 분석함.

노인 일자리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참여하지 못한 65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표 Ⅵ-6〉 참조), '신청하였으나 탈락'했다는 응답이 76.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고, '건강 악화 등으로 시작 전 본인이 그만' 두었다는 응답이 23.3%로 나타났다.

〈표 Ⅵ-6〉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

(단위: %)

구분		신청하였으나 탈락함	건강악화 등으로 시작 전 본인이 그만둠	기타
전 체		76.7	23.3	-
성별	남	78.3	21.7	-
	여	75.0	25.0	-
연령대	65-69세	77.0	23.1	-
	70-74세	87.5	12.5	-
	75-79세	82.3	17.7	-
	80세 이상	54.1	45.9	-
최종학력	무학	42.0	58.0	-
	초졸	82.4	17.6	-
	중졸	85.3	14.7	-
	고졸	74.3	25.7	-
	대졸 이상	100.0	0.0	-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61.1	38.9	-
	비취업자	80.9	19.1	-
가구구성	단독가구	59.3	40.7	-
	부부가구	76.4	23.7	-
	그 외	96.8	3.2	-
거주지역	서울	83.6	16.4	-
	광역시	80.4	19.6	-
	도	73.6	26.5	-
가구소득분위	1분위	76.2	23.9	-
	2분위	77.1	22.9	-
	3분위	80.6	19.4	-
	4분위	100.0	0.0	-
	5분위	66.6	33.4	-

주 :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사유가 무응답(-9)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함.

65세 이상 고령자 중 노인 일자리사업을 신청한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표 Ⅵ-7〉 참조), '건강상의 이유'가 36.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26.4%)',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서(13.0%)', '본인의 자유 시간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5.9%)', '신청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5.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Ⅵ-7〉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아서	제도의 세부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일하는 것 대비 급여가 적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소득 및 재산이 있어서	본인의 자유 시간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기타
전 체		13.0	2.8	5.8	3.9	5.0	5.9	26.4	36.9	0.4
성별	남	13.9	2.3	4.9	4.3	4.2	6.6	37.0	26.3	0.5
	여	12.2	3.3	6.5	3.5	5.6	5.4	17.2	46.1	0.3
연령대	65-69세	16.6	2.6	6.2	5.0	5.3	6.3	41.2	16.3	0.6
	70-74세	13.0	4.2	7.3	5.8	6.1	7.0	27.8	29.0	0.1
	75-79세	12.7	2.1	5.5	2.5	5.0	5.3	18.7	47.6	0.6
	80세 이상	7.0	2.3	3.4	1.0	3.0	4.7	6.1	72.3	0.1
최종 학력	무학	9.2	2.5	3.2	1.0	0.2	1.8	9.9	72.3	0.0
	초졸	6.7	2.1	4.9	3.2	2.8	4.0	19.3	56.2	0.9
	중졸	10.6	4.6	7.8	3.0	3.4	4.7	30.0	35.7	0.2
	고졸	16.1	2.8	5.7	5.5	5.9	8.0	31.1	24.6	0.3
	대졸 이상	22.2	1.8	6.4	3.7	11.5	8.4	32.2	13.9	0.0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9.5	1.7	4.2	3.0	2.1	2.1	69.2	8.4	0.0
	비취업자	14.8	3.4	6.6	4.3	6.4	7.9	5.0	51.2	0.5
가구 구성	단독가구	10.7	3.8	5.9	3.3	4.2	3.4	17.0	51.3	0.4
	부부가구	14.4	2.3	6.0	4.1	6.2	6.9	28.8	31.0	0.3
	그 외	12.3	3.0	5.2	3.9	3.1	6.5	30.4	35.5	0.3
거주 지역	서울	21.1	3.5	3.9	3.8	9.0	3.2	27.9	27.0	0.6
	광역시	9.3	2.7	5.9	5.0	3.4	8.9	22.3	42.3	0.2
	도	12.0	2.6	6.4	3.4	4.3	5.5	27.9	37.6	0.4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10.7	4.2	5.4	2.8	2.5	3.2	8.2	62.3	0.8
	2분위	14.3	2.2	7.9	4.1	2.9	7.5	29.7	31.2	0.1
	3분위	13.1	2.5	7.5	3.7	5.0	8.7	37.5	22.0	0.0
	4분위	12.3	2.5	3.9	6.1	8.5	5.9	37.9	22.6	0.3
	5분위	19.2	0.0	1.1	4.0	16.0	7.0	43.9	8.7	0.0

3.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의향 및 정년연장 찬성 여부

전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후에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Ⅵ-8〉 참조), 한번이라도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 경험이 있는 고령자는 75.5%가 향후에도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신청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에서는 12.9%만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Ⅵ-8〉 신청 경험에 따른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사

(단위: %)

구분		신청경험 있음		신청경험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 체		75.5	24.5	12.9	87.1
성별	남	75.4	24.6	13.2	86.8
	여	75.6	24.4	12.7	87.3
연령대	65-69세	81.3	18.7	18.6	81.4
	70-74세	78.8	21.2	13.4	86.6
	75-79세	76.9	23.1	11.8	88.2
	80세 이상	68.1	31.9	4.4	95.7
최종학력	무학	65.9	34.1	7.1	92.9
	초졸	71.5	28.5	12.5	87.5
	중졸	82.1	17.9	16.4	83.6
	고졸	81.8	18.2	14.9	85.1
	대졸 이상	86.6	13.4	7.3	92.7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84.6	15.4	18.3	81.7
	비취업자	68.5	31.5	10.2	89.8
가구구성	단독가구	72.0	28.0	14.9	85.1
	부부가구	75.9	24.1	12.4	87.6
	그 외	83.4	16.6	11.9	88.1
거주지역	서울	81.1	18.9	14.7	85.3
	광역시	80.7	19.3	13.4	86.6
	도	72.2	27.8	12.0	88.0
가구소득 분위	1분위	68.7	31.3	10.2	89.8
	2분위	83.3	16.7	15.7	84.3
	3분위	84.0	16.0	13.6	86.5
	4분위	93.9	6.1	16.5	83.5
	5분위	56.2	43.8	8.0	92.1

한편, 〈표 Ⅵ-9〉는 정년연장 찬성 여부에 대해 조사 결과이다. 조사 결과, 전체 중고령자의 66.0%가 정년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희망하는 정년연령은 평균 66.3세였다.

〈표 Ⅵ-9〉 정년연장 찬성 여부

(단위: %, 세)

구분		찬성		반대
		%	희망 정년연령	%
전 체		66.0	66.3	34.0
성별	남	66.2	66.4	33.8
	여	65.9	66.2	34.1
연령대	50-54세	64.8	66.0	35.2
	55-59세	64.0	65.9	36.0
	60-64세	65.7	66.2	34.4
	65-69세	69.9	66.7	30.1
	70-74세	70.4	66.9	29.6
	75-79세	68.4	66.6	31.6
	80세 이상	61.7	66.4	38.3
최종학력	무학	61.4	66.5	38.7
	초졸	66.1	66.5	33.9
	중졸	65.4	66.4	34.6
	고졸	66.4	66.3	33.6
	대졸 이상	66.3	66.1	33.7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64.8	66.3	35.2
	비취업자	67.7	66.3	32.3
가구구성	단독가구	68.7	66.4	31.3
	부부가구	63.7	66.3	36.3
	그 외	67.4	66.2	32.6
거주지역	서울	69.5	66.2	30.5
	광역시	67.9	66.3	32.1
	도	64.1	66.3	35.9
가구소득분위	1분위	67.1	66.5	33.0
	2분위	62.4	66.4	37.6
	3분위	64.1	66.3	35.9
	4분위	67.4	66.1	32.6
	5분위	68.3	66.1	31.7

Ⅶ. 노후 준비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고령화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노후 준비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고 있다.[27] 여기에서 노후 준비 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회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총칭한다.

이처럼 중고령자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 준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 지원법 및 관련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8] 하지만 해당 조사는 3차 조사 기준, 전국 30세에서 69세까지 3,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노후 준비에 대한 시급성이 큰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 및 관련 가계 경제 상태나 타 생활상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보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KReIS는 제10차 부가조사에서 노후 준비 서비스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조사하였다. 50세 이상 중고령자에 대한 대표성을 띄고 있으며, 가계 경제 및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 적용실태와 경제활동 참여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KReIS의 특장점을 고려할 때, 노후 준비 서비스 제도 개선에 대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그림 Ⅶ-1]과 같다.

---

27) 2021년,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을 통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기관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각 지자체로 확대 추진 중에 있다.

28) 제1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2016년에 노후준비 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2019년 두 번째 노후준비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이후,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2024년 3차 조사가 수행되었다.

[그림 Ⅷ-1] 노후 준비 서비스 영역 문항 순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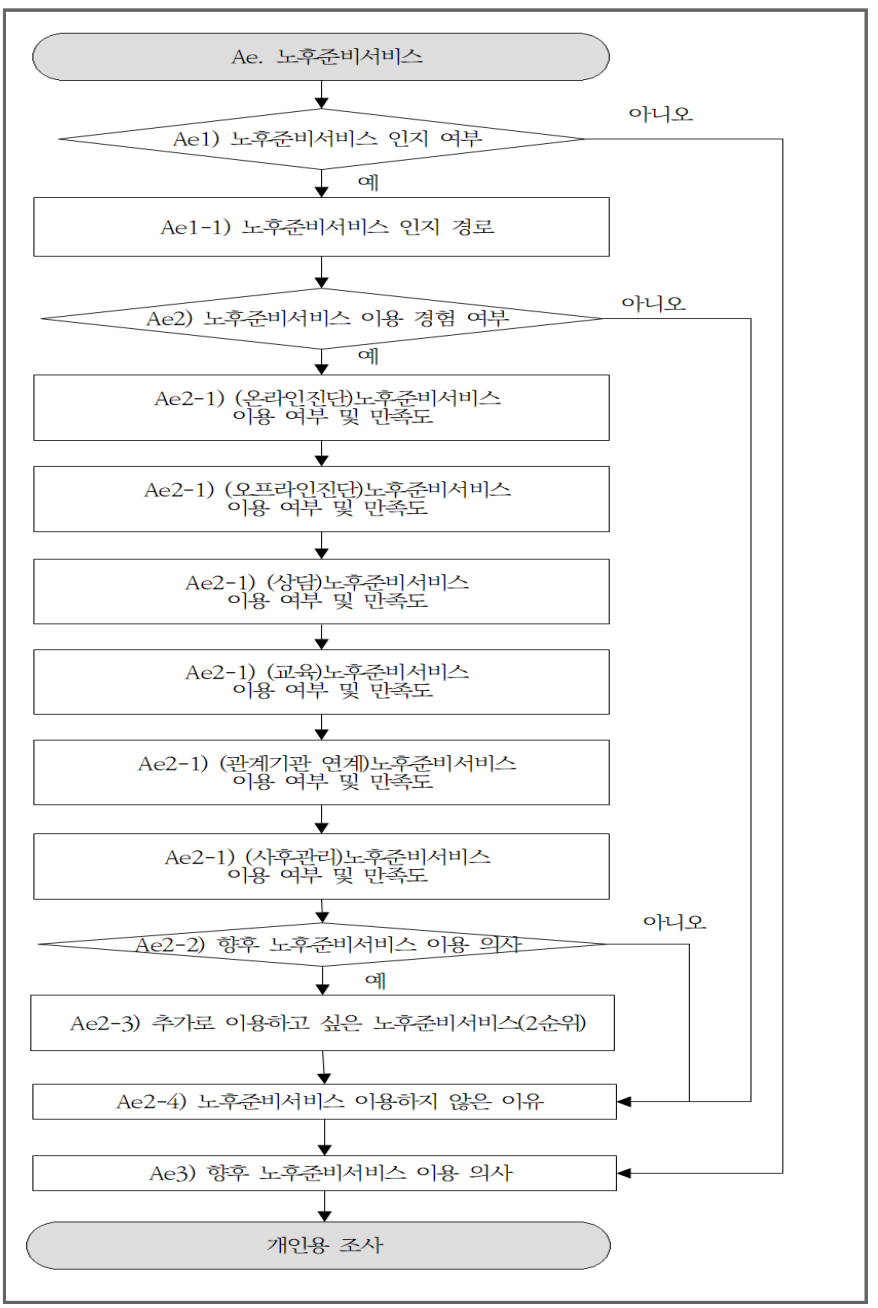

1. 노후준비서비스 인지 수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 하는 노후 준비 서비스는 총 5개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29] 첫째, 진단 서비스는 37개 문항으로 구성된 "노후 준비 종합진단지" 작성을 통해 개인의 노후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라 노후 준비를 위해 요구 되는 서비스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상담 서비스는 노후 준비에 대한 취약점 보완을 위해 재무 영역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비재무 영역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전문 강사들에 제공하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주제별 맞춤형 강의를 통해 노후 준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관계기관 연계 서비스는 노후준비를 위해 타 기관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의 이용이나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바로 연계해주는 것이다. 다섯째, 사후관리 서비스는 기 제공 받은 상담 서비스를 통해 계획한 노후준비 실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시 추가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표 Ⅶ-1〉은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 인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중고령자의 39.1%가 해당 서비스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들어본 적이 있었고 잘 알고 있음'의 응답은 3.5%,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름'의 응답은 35.6%로, 해당 서비스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지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csa.nps.or.kr)을 참고하면 된다.

〈표 Ⅷ-1〉 노후준비서비스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들어본적 있음			들어본적 없음
		소계	들어본 적이 있고 잘 알고 있음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름	
전 체		39.1	3.5	35.6	60.9
성별	남	43.5	4.2	39.3	56.5
	여	35.3	2.9	32.4	64.7
연령대	50-54세	42.8	4.2	38.6	57.2
	55-59세	45.0	3.4	41.7	55.0
	60-64세	44.1	5.1	39.0	55.9
	65-69세	33.5	3.0	30.5	66.5
	70-74세	34.6	3.2	31.4	65.5
	75-79세	30.8	2.0	28.8	69.3
	80세 이상	28.8	1.7	27.1	71.2
최종 학력	무학	24.8	0.8	24.0	75.3
	초졸	30.8	1.6	29.2	69.2
	중졸	31.1	1.4	29.7	68.9
	고졸	41.7	4.1	37.6	58.3
	대졸 이상	44.3	4.8	39.5	55.7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41.8	3.8	38.0	58.2
	비취업자	35.6	3.1	32.5	64.4
가구 구성	단독가구	29.7	2.3	27.4	70.3
	부부가구	42.4	3.9	38.4	57.7
	그 외	39.6	3.6	36.0	60.4
거주 지역	서울	26.9	2.8	24.1	73.1
	광역시	49.0	3.8	45.3	51.0
	도	38.5	3.6	34.9	61.5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32.5	2.7	29.9	67.5
	2분위	35.8	2.6	33.2	64.2
	3분위	44.0	3.4	40.6	56.0
	4분위	42.3	5.1	37.2	57.7
	5분위	40.8	3.5	37.3	59.2

다음의 〈표 Ⅶ-2〉는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인지 경로를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인지했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이웃이나 친구 등을 통해(19.5%)', '주민센터 직원이나 복지기관을 통해(11.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 공단(지사)을 통해' 인지했다는 응답은 9.6%로 나타났다.

〈표 Ⅷ-2〉 노후준비서비스의 인지 경로

(단위: %)

구분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주민센터 직원이나 복지기관을 통해	가족(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친인척 등)을 통해	이웃이나 친구 등을 통해	우편물, 집 근처의 알림판 등 홍보물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지사)을 통해	기타
전 체		41.7	11.1	10.3	19.5	7.7	9.6	0.1
성별	남	42.4	11.0	9.2	19.0	8.3	10.1	0.2
	여	41.0	11.3	11.5	20.0	7.1	9.0	0.1
연령대	50-54세	46.1	6.3	11.4	14.8	9.0	12.2	0.3
	55-59세	47.1	8.7	8.0	17.2	8.1	11.0	0.0
	60-64세	42.1	12.4	9.1	19.0	7.3	9.7	0.4
	65-69세	36.5	12.1	11.1	22.6	8.9	8.8	0.0
	70-74세	33.2	17.6	9.5	24.2	8.8	6.8	0.0
	75-79세	33.9	16.2	12.2	26.3	4.9	6.5	0.0
	80세 이상	36.2	13.5	17.3	24.0	4.0	5.0	0.0
최종 학력	무학	38.0	13.8	15.6	27.8	2.5	2.4	0.0
	초졸	26.8	18.5	14.8	30.0	4.7	5.3	0.0
	중졸	38.3	11.2	12.0	28.8	4.1	5.6	0.0
	고졸	42.8	10.5	9.8	19.4	7.7	9.6	0.3
	대졸 이상	46.1	9.6	8.5	12.8	10.2	12.8	0.0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41.1	10.2	10.3	19.4	8.1	10.7	0.2
	비취업자	42.6	12.7	10.2	19.6	7.1	7.8	0.0
가구 구성	단독가구	40.7	12.5	9.4	23.2	7.0	7.2	0.0
	부부가구	40.3	12.2	10.3	21.9	6.4	8.6	0.3
	그 외	43.7	9.5	10.5	15.6	9.4	11.4	0.0
거주 지역	서울	46.8	7.6	9.3	15.9	8.8	11.6	0.0
	광역시	48.2	9.4	10.2	18.1	4.9	9.2	0.0
	도	36.9	12.9	10.5	21.1	9.1	9.3	0.2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39.1	15.0	11.4	24.2	5.4	4.9	0.0
	2분위	39.5	14.4	10.3	19.8	8.6	7.5	0.0
	3분위	40.3	9.5	11.0	20.1	8.2	11.0	0.0
	4분위	45.5	8.0	9.0	17.5	9.5	10.0	0.5
	5분위	41.4	11.0	10.9	17.2	6.5	12.9	0.2

2. 노후준비서비스 이용 실태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노후 준비 서비스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표 Ⅷ-3〉 참조), 응답자의 1.6%만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3〉 노후준비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전 체		1.6	98.4
성별	남	1.9	98.1
	여	1.3	98.7
연령대	50-54세	0.9	99.1
	55-59세	1.9	98.1
	60-64세	1.4	98.6
	65-69세	1.3	98.7
	70-74세	1.9	98.1
	75-79세	3.7	96.3
	80세 이상	1.4	98.6
최종학력	무학	3.1	96.9
	초졸	0.9	99.1
	중졸	1.4	98.6
	고졸	1.6	98.4
	대졸 이상	1.8	98.2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1.8	98.2
	비취업자	1.4	98.6
가구구성	단독가구	2.0	98.0
	부부가구	1.4	98.7
	그 외	1.8	98.2
거주지역	서울	2.6	97.4
	광역시	1.8	98.2
	도	1.3	98.7
가구소득분위	1분위	1.5	98.5
	2분위	1.7	98.3
	3분위	1.6	98.4
	4분위	1.3	98.7
	5분위	2.3	97.7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노후 준비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진단, 오프라인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총 6개의 개별 서비스에 대한 참여율과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Ⅶ-4〉와 같다. 먼저, 서비스 종류별 참여율은 '상담'이 31.6%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 진단(30.0%)', '오프라인 진단(23.3%)', '교육(17.8%)', '사후관리(14.7%)', '관계기관 연계(14.2%)'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담'이 3.8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사후관리(3.82점)', '온라인 진단(3.81점)', '관계기관 연계(3.67점)', '교육(3.55점)', '오프라인 진단(3.3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Ⅷ-4〉 노후준비서비스 참여율 및 만족도

(단위: %)

구분		온라인 진단			오프라인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참여율	평균	(S.D.)	참여율	평균	(S.D.)	참여율	평균	(S.D.)	참여율	평균	(S.D.)	참여율	평균	(S.D.)	참여율	평균	(S.D.)
전 체		30.0	3.81	(0.404)	23.3	3.39	(0.510)	31.6	3.85	(0.591)	17.8	3.55	(0.706)	14.2	3.67	(0.507)	14.7	3.82	(0.409)
성별	남	44.0	3.87	(0.353)	21.0	3.21	(0.449)	27.0	3.72	(0.482)	18.6	3.59	(0.550)	15.9	3.52	(0.559)	19.7	3.78	(0.449)
	여	8.0	3.34	(0.672)	26.8	3.61	(0.534)	38.7	3.99	(0.687)	16.6	3.48	(1.074)	11.5	4.00	(0.000)	6.9	4.00	(0.000)
연령대	50-54세	20.3	3.00	-	0.0	-	-	6.4	4.00	-	33.5	4.00	-	25.0	4.00	-	14.8	4.00	-
	55-59세	27.7	3.82	(0.446)	10.4	3.00	(0.000)	24.0	3.52	(1.015)	22.4	3.31	(0.565)	22.0	3.83	(0.460)	12.2	3.69	(0.652)
	60-64세	60.7	3.83	(0.423)	24.0	3.25	(0.616)	33.2	4.00	(0.000)	23.6	3.27	(1.361)	6.6	3.00	-	24.0	4.00	(0.000)
	65-69세	45.8	4.00	(0.000)	55.2	3.30	(0.561)	11.4	4.00	-	17.8	4.00	-	40.6	3.41	(0.695)	32.1	3.48	(0.707)
	70-74세	34.3	4.00	-	0.0	-	-	53.7	3.51	(0.577)	0.0	-	-	0.0	-	-	12.0	4.00	-
	75-79세	0.0	-	-	42.4	4.00	(0.000)	62.3	4.00	(0.000)	9.8	4.00	-	0.0	-	-	0.0	-	-
	80세 이상	0.0	-	-	66.6	3.00	(0.000)	22.0	5.00	(0.000)	0.0	-	-	0.0	-	-	11.4	4.00	-
최종 학력	무학	0.0	-	-	74.1	3.82	(0.548)	25.9	4.00	-	0.0	-	-	0.0	-	-	0.0	-	-
	초졸	18.9	4.00	-	0.0	-	-	100.0	3.76	(0.875)	0.0	-	-	0.0	-	-	0.0	-	-
	중졸	0.0	-	-	27.5	4.00	-	100.0	4.00	(0.000)	0.0	-	-	0.0	-	-	0.0	-	-
	고졸	18.0	3.59	(0.569)	10.3	3.31	(0.568)	14.4	4.00	(0.904)	31.3	3.54	(0.753)	22.5	3.88	(0.361)	13.2	3.76	(0.480)
	대졸 이상	60.4	3.90	(0.316)	37.5	3.20	(0.435)	29.2	3.64	(0.525)	8.3	3.60	(0.694)	10.1	3.00	(0.000)	24.9	3.87	(0.395)

구분		온라인 진단			오프라인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참여율	평균	(S.D.)	참여율	평균	(S.D.)	참여율	평균	(S.D.)	참여율	평균	(S.D.)	참여율	평균	(S.D.)	참여율	평균	(S.D.)
경제 활동 상태	취업자	33.7	3.84	(0.387)	17.6	3.44	(0.554)	30.9	3.83	(0.597)	14.5	3.52	(0.577)	15.6	3.77	(0.472)	15.1	3.89	(0.353)
	비취업자	22.4	3.73	(0.495)	34.6	3.35	(0.515)	32.9	3.87	(0.622)	24.4	3.59	(0.935)	11.4	3.41	(0.695)	13.9	3.67	(0.545)
가구 구성	단독가구	0.0	-	-	22.8	3.61	(0.688)	51.4	4.08	(0.299)	22.8	4.00	(0.000)	12.8	4.00	-	4.3	4.00	-
	부부가구	43.1	3.88	(0.346)	34.3	3.10	(0.322)	25.7	3.77	(0.471)	23.1	3.88	(0.382)	8.6	3.00	(0.000)	19.3	3.85	(0.412)
	그 외	29.0	3.73	(0.487)	14.0	3.90	(0.353)	29.8	3.76	(0.790)	11.6	2.68	(0.660)	19.5	3.86	(0.407)	14.4	3.76	(0.492)
거주 지역	서울	17.8	4.00	-	16.3	3.00	-	9.4	3.00	-	31.4	4.00	(0.000)	17.8	4.00	-	7.3	4.00	-
	광역시	20.6	4.00	(0.000)	22.9	3.47	(0.558)	39.8	3.99	(0.647)	15.0	2.68	(0.660)	17.9	3.64	(0.587)	9.8	3.55	(0.609)
	도	42.6	3.71	(0.478)	26.6	3.45	(0.545)	34.9	3.82	(0.506)	14.1	3.82	(0.441)	9.8	3.45	(0.610)	21.7	3.89	(0.357)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0.0	-	-	48.8	3.91	(0.336)	66.4	3.95	(0.475)	0.0	-	-	0.0	-	-	0.0	-	-
	2분위	5.9	4.00	-	37.5	3.00	(0.000)	18.1	4.00	(0.000)	34.1	4.00	(0.000)	12.3	3.00	-	10.3	4.00	(0.000)
	3분위	24.8	4.00	(0.000)	0.0	-	-	17.2	3.52	(0.946)	17.9	3.11	(1.406)	21.2	4.00	(0.000)	19.0	4.00	(0.000)
	4분위	23.3	4.00	(0.000)	22.1	3.44	(0.701)	34.3	3.39	(0.598)	0.0	-	-	39.4	3.80	(0.491)	9.6	3.00	-
	5분위	69.6	3.72	(0.476)	20.3	3.21	(0.494)	33.2	4.08	(0.624)	22.2	3.26	(0.539)	3.9	3.00	-	25.4	3.85	(0.418)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중고령자 중 향후에도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 추가로 이용하고 싶은 노후준비서비스 2가지를 조사하였다. 〈표 Ⅶ-5〉는 추가로 이용하고 싶은 노후준비서비스 1순위에 대한 응답 중 선택 비중이 높은 3개를 제시한 것이다. 향후 추가로 이용해보고 싶은 서비스 1순위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서비스는 '온라인 진단(35.4%)'이며, '오프라인 진단(30.5%)', '상담(22.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Ⅷ-5〉 추가로 이용하고 싶은 노후준비서비스 - 1순위

(단위: %)

구분		1위		2위		3위	
		항목	%	항목	%	항목	%
전 체		온라인 진단	35.4	오프라인 진단	30.5	상담	22.4
성별	남	오프라인 진단	35.7	온라인 진단	30.0	상담	26.7
	여	온라인 진단	44.8	오프라인 진단	21.4	상담	14.9
연령대	50-54세	오프라인 진단	33.5	온라인 진단	31.5	교육	20.3
	55-59세	오프라인 진단	45.5	온라인 진단	27.9	상담	26.7
	60-64세	온라인 진단	69.6	상담	23.2	오프라인 진단	7.2
	65-69세	온라인 진단	64.3	상담	35.7	-	
	70-74세	사후관리	36.0	관계기관 연계	35.0	상담	29.0
	75-79세	오프라인 진단	54.3	온라인 진단	21.2	관계기관 연계	10.7
	80세 이상	상담	75.0	교육	12.9	오프라인 진단	12.2
최종 학력	무학	온라인 진단	100.0	-		-	
	초졸	상담	30.9	관계기관 연계	28.3	온라인 진단	25.7
	중졸	오프라인 진단	70.9	온라인 진단	29.1	-	
	고졸	오프라인 진단	39.4	온라인 진단	34.5	상담	14.9
	대졸 이상	상담	43.6	온라인 진단	32.2	오프라인 진단	10.1
경제 활동 상태	취업자	온라인 진단	44.4	오프라인 진단	32.1	상담	20.8
	비취업자	오프라인 진단	27.3	상담	25.8	온라인 진단	16.6
가구 구성	단독가구	오프라인 진단	34.2	상담	34.2	온라인 진단	14.3
	부부가구	오프라인 진단	30.9	상담	30.4	온라인 진단	20.4
	그 외	온라인 진단	56.9	오프라인 진단	28.9	상담	10.8
거주지역	서울	오프라인 진단	38.0	상담	34.3	온라인 진단	19.6
	광역시	오프라인 진단	43.1	온라인 진단	25.8	상담	17.3
	도	온라인 진단	47.9	오프라인 진단	20.1	상담	19.9
가구소득 분위	1분위	오프라인 진단	38.7	온라인 진단	34.2	상담	9.4
	2분위	상담	53.3	오프라인 진단	24.6	사후관리	9.1
	3분위	상담	37.9	오프라인 진단	32.0	온라인 진단	30.2
	4분위	온라인 진단	55.6	오프라인 진단	27.1	상담	17.3
	5분위	온라인 진단	47.1	오프라인 진단	32.0	교육	9.0

한편,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중고령자 중 향후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표 Ⅶ-6〉 참조),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잘 몰라서(25.0%)', '이용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23.5%)', '접근성 측면에서 이용하기 어려워서(8.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Ⅷ-6〉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이용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잘 몰라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리적, 시간적으로나) 접근성 측면에서 이용하기 어려워서	기타
전 체		23.5	25.0	43.3	8.2	-
성별	남	22.2	23.9	44.6	9.3	-
	여	24.9	26.1	41.9	7.1	-
연령대	50-54세	23.7	22.6	46.6	7.2	-
	55-59세	22.3	26.9	44.2	6.6	-
	60-64세	22.4	25.3	43.4	8.9	-
	65-69세	24.6	19.2	45.4	10.8	-
	70-74세	24.4	25.4	41.3	9.0	-
	75-79세	27.5	26.8	38.9	6.7	-
	80세 이상	24.4	30.2	34.9	10.6	-
최종학력	무학	23.4	26.3	37.2	13.1	-
	초졸	28.4	28.4	34.7	8.5	-
	중졸	25.5	25.8	39.8	8.9	-
	고졸	23.3	24.2	44.9	7.6	-
	대졸 이상	21.6	24.6	45.3	8.6	-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22.1	25.2	44.1	8.6	-
	비취업자	25.7	24.6	42.0	7.7	-
가구구성	단독가구	24.9	30.5	36.5	8.2	-
	부부가구	24.2	23.3	43.8	8.8	-
	그 외	22.3	25.3	44.8	7.6	-
거주지역	서울	18.1	25.9	48.0	8.0	-
	광역시	22.6	25.4	43.4	8.6	-
	도	25.2	24.5	42.2	8.1	-
가구소득 분위	1분위	25.7	28.0	39.8	6.6	-
	2분위	26.1	21.1	43.3	9.5	-
	3분위	22.6	24.5	42.7	10.2	-
	4분위	22.6	26.1	43.0	8.3	-
	5분위	22.3	24.2	46.5	7.0	-

3. 향후, 노후준비서비스 이용 의사

〈표 Ⅷ-7〉은 향후 노후 준비서비스 이용 의사를 이용 경험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대상은 50세 이상 전체 중고령자이며,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79.4%가 향후 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에서는 17.5%만이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7〉 이용 경험에 따른 향후 노후준비서비스 이용 의사

(단위: %)

구분		이용한 경험 있음		이용한 경험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 체		79.4	20.6	17.5	82.5
성별	남	83.2	16.8	18.9	81.1
	여	73.5	26.5	16.3	83.7
연령대	50-54세	100.0	0.0	23.1	76.9
	55-59세	83.8	16.2	24.1	75.9
	60-64세	91.1	8.9	18.1	81.9
	65-69세	43.5	56.5	15.2	84.8
	70-74세	33.3	66.7	12.7	87.3
	75-79세	91.7	8.3	8.9	91.1
	80세 이상	88.7	11.3	7.5	92.5
최종 학력	무학	60.5	39.5	8.4	91.6
	초졸	73.8	26.2	11.3	88.7
	중졸	77.4	22.6	12.5	87.5
	고졸	89.3	10.7	19.5	80.6
	대졸 이상	69.4	30.6	20.7	79.3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80.3	19.7	20.7	79.3
	비취업자	77.7	22.3	13.4	86.6
가구 구성	단독가구	79.7	20.3	17.1	82.9
	부부가구	82.6	17.4	15.4	84.6
	그 외	76.5	23.5	20.0	80.0
거주 지역	서울	90.6	9.4	11.2	88.9
	광역시	63.1	36.9	16.8	83.2
	도	87.2	12.8	19.8	80.2
가구 소득 분위	1분위	95.4	4.6	12.1	87.9
	2분위	73.3	26.7	15.6	84.4
	3분위	75.2	24.8	17.3	82.7
	4분위	79.2	20.8	21.8	78.2
	5분위	77.3	22.7	20.4	79.6

Ⅷ. 부록. 13표본 및 05표본 조사 결과

1. 13표본(舊통합표본)

가. 응답 현황

KReIS의 13통합표본(이하, 13표본 또는 舊통합표본)은 표본 설계상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50대 패널의 자연 소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수행한 제5차 본조사에서 50대 가구원이 있는 1,201가구를 신규 패널로 추가하여 총 5,010가구, 8,411명으로 구성된 표본이다. 13표본의 가구 응답현황을 1차년도(2013년, 5차 본조사)부터 6차년도 부가조사(2024년, 10차 부가조사)까지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Ⅷ-1〉, [그림 Ⅷ-1]과 같다. 2024년 6차년도 부가조사 결과, 성공 가구는 원표본 5,010가구 중 총 3,610가구로 원표본 유지율은 72.1%이며, 원표본 가구에서 분가한 신규 가구는 23가구이다. 한편, 가구원 중 개인조사대상자의 사망, 이민, 장기수용시설 입소 등 조사부적격 사유 발생으로 해당 가구에 원표본이 모두 소멸 처리되어 조사 대상 가구에서 제외 처리된 유효 원표본 가구[30]를 기준으로 한 유효성공률은 80.4%이다.

〈표 Ⅷ-1〉 13표본의 가구 응답현황

(단위: 가구, %)

구분	원표본 가구	조사 완료	원표본	신규	원표본 유지율	유효 원표본 가구	유효 성공률
1차년도('13)	5,010	5,010	5,010	0	100.0	5,010	100.0

30) 13표본의 유효표본은 6차년도 부가조사(제10차 부가조사) 기준 4,490가구로 조사 간 평균 1.81%씩 감소하였다.

구분		원표본 가구	조사 완료	원표본	신규	원표본 유지율	유효 원표본 가구	유효 성공률
2차년도('15)		5,010	4,697	4,691	6	93.6	4,995	93.9
3차년도('17)		5,010	4,461	4,451	10	88.8	4,900	90.8
4차년도('19)		5,010	4,317	4,298	19	85.8	4,774	90.0
5차년도('21)		5,010	4,028	4,007	21	80.0	4,629	86.6
6차년도	본('23)	5,010	3,716	3,698	18	73.8	4,524	81.7
	부가('24)	5,010	3,633	3,610	23	72.1	4,490	80.4

주 1) 유효 원표본가구 = (원표본가구)-(부적격가구)
2) 유효 성공률 = (조사성공한 원표본가구/유효 원표본가구)*100
3) 개인일부성공가구가 포함된 수치임.
4)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분석 결과임.

13표본이 최초로 구축된 5차 본조사 이후 총 7개 차수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표본 유지율은 6차년도 부가조사 기준 72.1%로 조사 간 평균 5.31%씩 감소하였으며, 유효표본 유지율은 80.4%로 조사 간 평균 3.57%씩 감소하였다.

[그림 Ⅷ-1] 13표본 원표본가구 응답추이

(단위 :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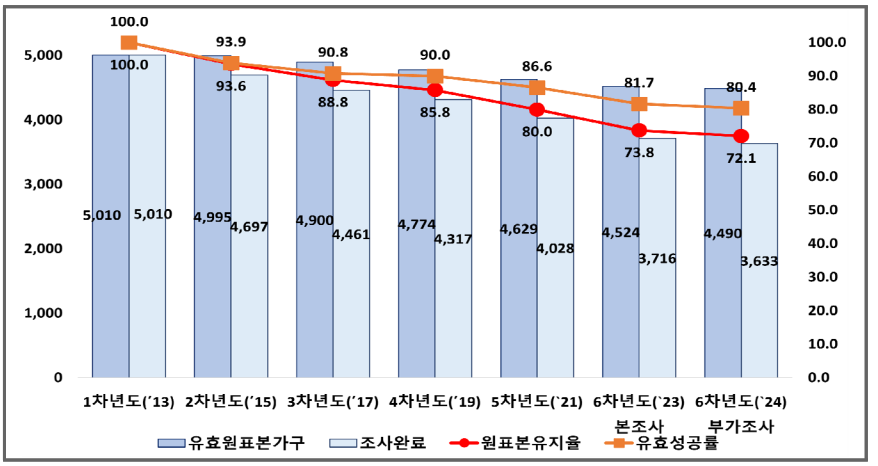

다음으로 13표본의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이하, 유지율)은 〈표 Ⅷ-2〉와 같다. 유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82.1%), 충남(79.9%), 강원(79.0%) 순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58.5%), 제주(62.1%), 부산(67.8) 순이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유지율이 전체 평균(72.1%)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도시 지역의 낮은 유지율은 대면조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주거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거주환경이 대단지 아파트로 변화하면서 건물 출입 절차 등과 같은 난관으로 인해 거부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방문하여 조사 순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조사 성공률이 떨어지게 되어 패널 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요양원, 요양병원 등 장기수용시설 조기 입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대도시 지역의 고령 조사대상자의 패널 탈락이 증가하는 것도 유지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2〉 13표본의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단위: 가구, %)

지역	1차년도(2013년) 원표본가구 수	6차년도부가('24년) 조사성공 가구 수	지역별 원표본유지율
전체	5,010	3,610	72.1
서울	858	502	58.5
부산	363	246	67.8
대구	220	155	70.5
인천	241	186	77.2
광주	179	128	71.5
대전	161	115	71.4
울산	145	119	82.1
경기	984	749	76.1
강원	181	143	79.0
충북	176	131	74.4
충남	254	203	79.9
전북	219	160	73.1
전남	226	174	77.0
경북	351	266	75.8
경남	386	278	72.0
제주	66	41	62.1
세종	-	14	

주 : 1) 지역구분은 최초 패널이 구축될 2013년도 당시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구분함.
지역별 원표본유지율 = (조사성공 원표본가구수 / 통합1차 원표본가구수) × 100
2) 13표본 구축 시 세종시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이사 등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패널가구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성공가구수는 제시하나, 지역별 원표본유지율은 산정하지 않음.
3)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분석 결과임.

13원표본 가구 중 조사에 실패한 총 880가구를 대상으로 그 실패 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Ⅷ-3〉과 같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유는 거절(307건, 34.9%)이었으나, 표본 구축 후 차수가 누적됨에 따라 사망(65건, 7.4%)이나 장기수용시설입소(42건, 4.8%)와 같은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실패 사유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재(160건, 18.2%)나 추적불가(305건, 34.7%)도 실패 사유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13표본의 접촉 정보에 대한 확인 조사를 통해 유효 표본 관리의 필요성이 큼을 알 수 있다.

〈표 VIII-3〉 13원표본 가구에 대한 조사 수행 결과

(단위 : 가구, (%))

성공	실패	실패 사유						
		거절	부재	사망	장기수용 시설입소	추적불가	이민	기타
3,610	880	307	160	65	42	305	1	0
-	(100.0)	(34.9)	(18.2)	(7.4)	(4.8)	(34.7)	(0.1)	(0.0)

13표본 개인의 차수별 응답 현황은 〈표 Ⅷ-4〉와 같다. 6차년도 부가조사에서 조사에 성공한 개인은 원개인 8,411명 중 5,340명으로 원표본 유지율은 63.5%로 차수가 누적됨에 따라 유지율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효 원개인 6,727명에 대한 유효성공률은 79.4%로 상당히 높은 표본 유지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3표본의 신규 개인은 6차년도 부가조사 기준 428명으로 그 수가 점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Ⅷ-4〉 13표본 개인의 응답현황

(단위 : 명, %)

구분		원개인	조사 완료	원개인	신규개인	원표본 유지율	유효 원개인1)	유효 성공률2)
1차년도('13)		8,411	8,411	8,411	0	100.0	8,411	100.0
2차년도('15)		8,411	7,800	7,688	112	91.4	8,321	92.4
3차년도('17)		8,411	7,328	7,135	193	84.8	7,981	89.4
4차년도('19)		8,411	7,015	6,702	313	79.7	7,584	88.4
5차년도('21)		8,411	6,478	6,117	361	72.7	7,171	85.3
6차 년도	본('23)	8,411	5,920	5,530	390	65.7	6,871	80.5
	부가('24)	8,411	5,768	5,340	428	63.5	6,727	79.4

주 1) 유효 원표본개인= (원표본개인)-(부적격개인: 사망, 이민, 장기수용시설입소 등으로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유효 성공률=(조사성공한 원표본개인/유효 원표본개인)*100
3)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분석 결과임.

나. 13표본 중 제10차 부가조사 성공 가구의 특성

13표본 중 제10차 부가조사에서 조사에 성공한 총 3,610가구의 특성은 〈표 Ⅷ-5〉와 같다. 먼저, 조사 성공 가구의 가구주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61.4%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55.6%였다. 조사에 성공한 13표본 가구의 가구주 연령대는 60대 35.8%, 70대 30.7%, 80세 이상 27.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50대(5.1%)와 50세 미만(1.0%)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가구주의 학력은 고졸 34.4%, 초졸 24.4%, 중졸 15.9%, 대졸 이상 15.5%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거주 중인 주택의 형태는 일반아파트가 39.6%, 일반단독주택 38.6%, 연립/다세대주택 11.6%의 순이었으며,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79.7%, 보증금 있는 월세 7.5%, 전세 6.2%, 기타(무상주택, 사택 등)이 5.9%였다. 마지막으로 조사에 성공한 13표본 가구의 구성을 단독가구 36.6%, 부부가구 36.5%, 그 외 26.9% 였다.

〈표 VIII-5〉 13표본 제10차 부가조사 성공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가구, %)

구분		전체	
		case	%
성별	남성	2,215	61.4
	여성	1,395	38.6
배우자 유무	있음	2,007	55.6
	없음	1,603	44.4
연령대	50세 미만	37	1.0
	50대	185	5.1
	60대	1,294	35.8
	70대	1,107	30.7
	80세 이상	987	27.3
최종 학력	무학	349	9.7
	초졸	880	24.4
	중졸	575	15.9
	고졸	1,243	34.4
	대졸 이상	561	15.5
	무응답	2	0.1
주택의 형태	일반단독주택	1,395	38.6
	다가구용 단독주택	149	4.1
	일반아파트	1,430	39.6
	임대아파트	152	4.2
	연립/다세대주택	419	11.6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45	1.3
	비주거용건물내주택(상가, 공장등)	17	0.5
	기타	3	0.1

구분		전체	
		case	%
주택의 점유 형태	자가	2,878	79.7
	전세	224	6.2
	보증금 있는 월세	270	7.5
	보증금 없는 월세	24	0.7
	기타(무상주택, 사택 등)	214	5.9
가구 구성	단독가구	1,320	36.6
	부부가구	1,318	36.5
	그 외	972	26.9
전 체		3,610	100.0

주 1) 성별, 배우자유무, 연령대, 최종학력은 조사성공가구의 가구주 정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며, 주택의 형태, 주택의 점유 형태, 가구 구성은 가구 정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
2)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분석 결과임.

다. 13표본 중 제10차 부가조사 성공 개인의 특성

13표본 개인조사대상 중 제10차 부가조사에서 조사에 성공한 표본은 5,340명이며, 이들의 특성을 정리한 결과는 〈표 Ⅷ-6〉과 같다. 먼저, 13표본은 남성이 39.4%, 여성이 60.6%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연령대는 60대가 38.8%, 70대가 30.9%, 80세 이상이 24.8%로 나타났으며, 50대(5.4%)와 50세 미만(0.1%)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가구주와의 관계는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62.9%, 가구주의 배우자가 33.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최종 학력은 고졸(35.2%), 초졸(25.3%), 중졸(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Ⅷ-6〉 13표본 제10차 부가조사 성공 개인의 특성

(단위: 명, %)

구 분		전체	
		사례 수	비중
성별	남성	2,106	39.4
	여성	3,234	60.6
연령대	50세 미만	7	0.1
	50대	290	5.4
	60대	2,070	38.8
	70대	1,651	30.9
	80세 이상	1,322	24.8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본인)	3,361	62.9
	배우자	1,793	33.6
	부모	168	3.2
	조부모	1	0.0
	자녀	9	0.2
	형제	2	0.0
	기타	6	0.1
최종학력	무학	474	8.9
	초졸	1,353	25.3
	중졸	952	17.8
	고졸	1,878	35.2
	대졸 이상	681	12.8
	무응답	2	0.04
전 체		5,340	100.0

주 :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분석 결과임.

2. 05표본(원표본)

가. 응답 현황

KReIS의 최초 표본인 05표본의 원표본 가구는 2005년 구축 당시 1차년도에 조사에 성공한 5,109가구를 지칭하며, 신규 가구는 05원표본 가구에서 분가하여 새롭게 조사 대상 가구로 편입된 가구를 의미한다. 제10차 부가조사 결과, 05표본 중 10차년도 부가조사(2024년)에서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총 2,873가구로 원표본 2,814가구, 신규 59가구이고, 원표본 유지율은 55.1%이며, 유효 성공률은 68.7%이다(〈표 Ⅷ-7〉 참조).

〈표 Ⅷ-7〉 05표본 가구 응답현황

(단위: 가구, %)

구분		원표본	조사 완료	원표본	신규	원표본 유지율	유효 원표본[1]	유효 성공률[2]
1차년도('05)		5,109	5,109	5,109	0	100.0	5,109	100.0
2차년도('07)		5,109	4,590	4,549	41	89.0	5,070	89.7
3차년도('09)		5,109	4,308	4,239	69	83.0	4,983	85.1
4차년도('11)		5,109	4,105	4,036	69	79.0	4,924	82.0
5차년도('13)		5,109	3,809	3,748	61	73.4	4,895	76.6
6차년도('15)		5,109	3,735	3,671	64	71.9	4,868	75.4
7차년도('17)		5,109	3,581	3,523	58	69.0	4,545	77.5
8차년도('19)		5,109	3,495	3,426	69	67.1	4,399	77.9
9차년도('21)		5,109	3,242	3,179	63	62.2	4,231	75.1
10차년도	본('23)	5,109	2,954	2,899	55	56.7	4,126	70.3
	부가('24)	5,109	2,873	2,814	59	55.1	4,094	68.7

주 1) 유효 원표본가구=(원표본가구)-(부적격가구:사망, 이민, 장기수용시설입소 등으로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유효 성공률=(조사성공한 원표본가구/유효 원표본가구 대비)*100%

3) 개인일부성공가구가 포함된 수치임.

4)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분석 결과임.

05표본의 응답 추이를 차수별로 살펴보면 원표본 유지율과 유효원표본 가구의 감소율이 점증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특히, 8차년도 조사 이후 유효 원표본 가구의 수와 유효성공률의 감소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차수가 누적됨에 따라 패널 고령화과 진행되면서 사망이나 장기수용시설 입소 등 소멸 사유가 발생한 가구의 수가 증가한데서 기인한다.

[그림 VIII-2] 05표본 원표본가구 응답추이

(단위 :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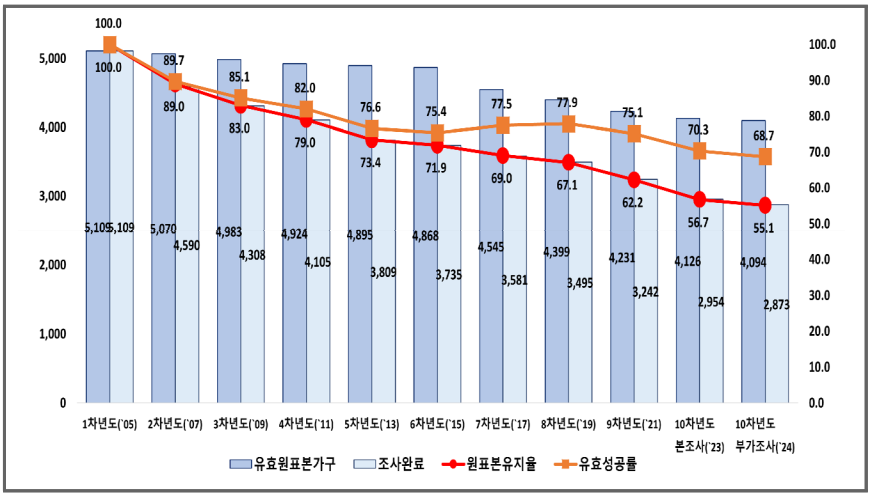

다음의 〈표 Ⅷ-8〉은 05표본의 지역별 원표본 유지율을 정리한 것이다. 05표본의 원표본 유지율(55.1%)보다 높은 지역은 충남(73.2%), 강원(70.6%), 울산(66.7%), 경북(6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38.4%), 부산(43.8%), 제주(49.2%)은 원표본 유지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패널의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할 때, 가중치 산정 과정에서 이상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05표본을 이용하여 종단 또는 패널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모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표 VIII-8〉 05표본의 지역별 원표본유지율

(단위: 가구, %)

지역	1차년도(2005년) 원표본가구 수	10차부가조사('24년) 조사성공 가구 수	지역별 원표본유지율
전체	5,109	2,814	55.1
서울	1,042	400	38.4
부산	388	170	43.8
대구	231	119	51.5
인천	271	159	58.7
광주	157	95	60.5
대전	174	103	59.2
울산	150	100	66.7
경기	920	536	58.3
강원	170	120	70.6
충북	189	112	59.3
충남	231	169	73.2
전북	212	127	59.9
전남	214	145	67.8
경북	323	204	63.2
경남	372	213	57.3
제주	65	32	49.2
세종	-	10	-

주 : 1) 지역구분은 최초 패널이 구축될 2005년도 당시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구분함.
지역별 원표본유지율 = (조사성공 원표본가구수 / 05표본 원표본가구수) × 100
2) 13표본 구축 시 세종시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이사 등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패널가구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성공가구수는 제시하나, 지역별 원표본유지율은 산정하지 않음.
3)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분석 결과임.

제10차 부가조사에서 조사에 실패한 05원표본 1,280가구를 대상으로 실패 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Ⅷ-9〉와 같다. 05원표본 가구의 가장 비중이 큰 실패 사유는 추적불가(650가구, 73.9%)로 절대 다수 표본에 대한 접촉 정보가 부정확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3패널이나 13패널과 비교할 때, 05패널의 경우, 차수 누적에 따른 표본 고령화에 따라 사망(7.6%)과 장기수용시설입소(4.9%)의 사유도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9〉 05원표본 가구에 대한 조사 수행 결과

(단위 : 가구, (%))

성공	실패	실패 사유						
		거절	부재	사망	장기수용 시설입소	추적 불가	이민	기타
2,814	1,280	308	212	67	43	650	0	0
-	(100.0)	(35.0)	(24.1)	(7.6)	(4.9)	(73.9)	(0.0)	(0.0)

다음으로 05표본 중 10차 부가조사에서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개인은 원개인 8,567명 중 3,596명으로 원표본 유지율은 42.0%였으며, 유효 성공률은 유효 원개인 5,426명의 66.3%였다. 이외에도 신규 조사 대상 중 조사에 성공한 개인은 799명이다.

〈표 VIII-10〉 05표본 개인의 응답현황

(단위: 개인, %)

구분	원개인	조사 완료			원표본 유지율	유효 원개인1)	유효 성공률2)
			원개인	신규개인			
1차년도(2005)	8,567	8,567	8,567	0	100.0	8,567	100.0
2차년도(2007)	8,567	7,608	7,434	174	86.8	8,490	87.6
3차년도(2009)	8,567	7,022	6,748	274	78.8	8,236	81.9

구분		원개인	조사 완료	원개인	신규개인	원표본 유지율	유효 원개인1)	유효 성공률2)
4차년도(2011)		8,567	6,682	6,277	405	73.3	7,872	79.7
5차년도(2013)		8,567	6,157	5,695	462	66.5	7,672	74.2
6차년도(2015)		8,567	5,977	5,420	557	63.3	7,308	74.2
7차년도(2017)		8,567	5,672	5,075	597	59.2	6,678	76.0
8차년도(2019)		8,567	5,473	4,757	716	55.5	6,281	75.7
9차년도(2021)		8,567	5,019	4,269	750	49.8	5,844	73.0
10차년도	본('23)	8,567	4,530	3,776	754	44.1	5,556	68.0
	부가('24)	8,567	4,395	3,596	799	42.0	5,426	66.3

주 1) 유효 원표본개인= (원표본개인)-(부적격개인: 사망, 이민, 장기수용시설입소 등으로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유효 성공률=(조사성공한 원표본개인/유효 원표본개인)*100%

나. 05표본 중 제10차 부가조사 성공 가구의 특성

제10차 부가조사에 성공한 05표본 가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Ⅷ-11〉과 같다. 가구주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55.1%)이 여성(45.0%)보다 더 많으며,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의 비중이 51.1%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대는 70대(41.2%), 80세 이상(36.4%)이 전체의 70% 이상으로 조사 차수 누적에 따른 특성, 즉 가구주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가구주의 최종학력은 초졸(30.3%), 고졸(27.9%), 중졸(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거하는 주택의 형태는 일반단독주택(42.8%), 일반아파트(35.5%), 연립/다세대주택(11.6%) 순이었고, 주택점유형태는 자가(79.3%)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구 구성은 단독가구(42.6%), 부부가구(34.9%), 그 외(22.5%)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표 VIII-11〉 05표본 제10차 부가조사 성공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가구, %)

구분		전체	
		case	%
성별	남성	1,549	55.1
	여성	1,265	45.0
배우자 유무	있음	1,377	48.9
	없음	1,437	51.1
연령대	50세 미만	39	1.4
	50대	179	6.4
	60대	412	14.6
	70대	1,160	41.2
	80세 이상	1,024	36.4
최종 학력	무학	357	12.7
	초졸	852	30.3
	중졸	487	17.3
	고졸	785	27.9
	대졸 이상	331	11.8
	무응답	2	0.1
주택의 형태	일반단독주택	1,203	42.8
	다가구용 단독주택	122	4.3
	일반아파트	1,000	35.5
	임대아파트	111	3.9
	연립/다세대주택	327	11.6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37	1.3
	비주거용건물내주택(상가,공장등)	12	0.4
	기타	2	0.1
주택의 점유 형태	자가	2,232	79.3
	전세	176	6.3
	보증금 있는 월세	184	6.5
	보증금 없는 월세	19	0.7
	기타(무상주택, 사택 등)	203	7.2
가구 구성	단독가구	1,198	42.6
	부부가구	982	34.9
	그 외	634	22.5
전 체		2,899	100.0

주 1) 가구주 : 성별, 배우자유무, 연령대, 최종학력 / 가구 : 주택의형태, 점유형태, 가구구성
2)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분석 결과임.

다. 05표본 중 제10차 부가조사 성공 개인의 특성

05표본 중 제10차 부가조사에서 조사에 성공한 개인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Ⅷ-12〉와 같다. 성별은 여성(65.0%)이 남성(35.0%)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70대(47.2%), 80세 이상(37.8%), 60대(14.8%), 50대(0.2%)의 순으로 조사되어 패널의 고령화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가구주와의 관계는 대개의 경우 가구주 본인(66.3%)이거나 가구주의 배우자(29.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종학력은 초졸(35.3%), 고졸(24.1%), 중졸(20.5%)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이처럼 05표본의 고령화는 표본 관리 및 유지에 있어서 많은 제약 조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정책 소비층이 될 절대 다수의 후기 노인층에 대한 안정적이면서도 신뢰도 높은 기초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KReIS의 중요도는 점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Ⅷ-12〉 05표본 제10차 부가조사 성공 개인의 특성

(단위: 명, %)

구 분		전체	
		case	%
성별	남성	1,260	35.0
	여성	2,336	65.0
연령대	50세 미만	-	-
	50대	8	0.2
	60대	531	14.8
	70대	1,698	47.2
	80세 이상	1,359	37.8

구 분		전체	
		case	%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본인)	2,384	66.3
	배우자	1,057	29.4
	부모	151	4.2
	조부모	1	0.03
	자녀	-	-
	형제	-	-
	기타	3	0.08
최종학력	무학	473	13.2
	초졸	1,269	35.3
	중졸	738	20.5
	고졸	867	24.1
	대졸 이상	247	6.9
	무응답	2	0.06
전 체		3,596	100.0

주 :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분석 결과임.

Ⅸ. 부록. 10차 부가조사 조사표

국민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 조사표

승인번호
제 322001 호

KReIS
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연구원은 모든 국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 · 개발하여 향후 고령사회에서도 연금제도가 국민의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구기관입니다.

본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대책을 수립하고자 전국의 만 50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은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322001호)로 2005년 제1차 본조사 이후 격년마다 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본조사가 수행되지 않는 해에는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습득된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수립된 자료는 향후 노후소득보장 및 고령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연구원

NPS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Service

Copyright(c) National Pens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가구용 조사표

가구ID	1차 본조사 참여여부	2차 본조사 참여여부	3차 본조사 참여여부	4차 본조사 참여여부	5차 본조사 참여여부	6차 본조사 참여여부	7차 본조사 참여여부	8차 본조사 참여여부	9차 본조사 참여여부	10차 본조사 참여여부
	1. 참여 2. 미참여	1. 참여 2. 미참여	1. 참여 2. 미참여	1. 참여 2. 미참여	1. 참여 2. 미참여	1. 참여 2. 미참여	1. 참여 2. 미참여	1. 참여 2. 미참여	1. 참여 2. 미참여	1. 참여 2. 미참여

가구주ID		가구주 성명	

가구주 변경	1. 변경 2. 미변경	자난조사 가구주 PID	

가구주 본인응답여부	1. 본인 2. 대리	응답자 성명		주소변경	1. 변경 2. 미변경

주소		
	지번주소	시/도 시/군/구 동/읍/면 번지 호 (아파트 동 호)
	도로명주소	시/도 시/군/구 동/읍/면 로 (동,)

조사날짜		조사시작시간		조사시간	

조사원 이름		조사원 ID	

측정항목	측정기준	참고
Ha. 가구원 인적사항	현재	조사시점
Hb. 주거	현재	조사시점
Hc. 가구지출	작년 한 해	2023. 1. 1. ~ 2023. 12. 31.
Hd. 가구 소득 및 저축	작년 한 해	2023. 1. 1. ~ 2023. 12. 31.
He. 가구 자산 및 부채	현재	조사시점
Hf. 사회복지 관련 제도	작년 한 해 또는 현재	2023. 1. 1. ~ 2023. 12. 31. 또는 조사시점

※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할 경우는 '-8', 강력히 응답을 거절한 경우는 '-7'로 표기함.

가구용 조사 시작 문항 판별

가구응답 구분		조사 시작 문항
지난 조사 참여 가구	→	"가구원 변동사항"으로 갈 것
지난 조사 이후 발생한 신규가구	→	"Ha.가구원 인적사항"으로 갈 것

지난 조사 확인 및 변동사항 확인

지난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용이 맞습니까?
만일 틀리다면, 확인 후 바른 내용(지난 조사 당시의 바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또한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원 인적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 조사원은 반드시 인포시트를 확인하면서 질문해 주십시오.

가구원 ( )님의	지난 조사 확인			변동사항								
	지난 조사 내용 (인포시트 참고)	확인	바른 내용	지난 조사 이후 변동여부	변동사유 /변동사항	변동시점						
						년				월		
성명		1.맞다 2.틀리다		1.변동 2.미변동								
성별		1.맞다 2.틀리다		1.변동 2.미변동								
가구주와의 관계		1.맞다 2.틀리다		1.변동 2.미변동								
생년월일		1.맞다 2.틀리다		1.변동 2.미변동								
혼인상태		1.맞다 2.틀리다		1.변동 2.미변동								
동거여부		1.맞다 2.틀리다		1.변동 2.미변동								
비동거 사유		1.맞다 2.틀리다		1.변동 2.미변동								
학력		1.맞다 2.틀리다		1.변동 2.미변동								
이수여부		1.맞다 2.틀리다		1.변동 2.미변동								
종교유무		1.맞다 2.틀리다		1.변동 2.미변동								

응답 후 가구원 변동사항(01)로 가십시오.

가구원 변동사항

Q1) 지난 조사 이후 귀댁에 가구원의 변동(전출, 사망, 신규)이 있었습니까?

1. 예 ➜ 변동사유 및 변동시기 응답
2. 아니오 ➜ Q2

※ 조사원은 변동사항이 있는 가구원 각각에 대해 해당 변동사유와 변동시기 모두를 기록해주십시오.

번호	성명	변동사유	변동시기	
			년	월
1		전출/사망/신규 사유 CODE 표 참조		
2				
3				
4				
5				

Q2) 현재의 가구원은 아니지만, 지난 해에 6개월 이상 함께 살았던 가구원이 있었습니까?

1. 아니오 ➜ Hb1
2. 예 ➜ 전입시기와 전출시기 응답

번호	성명	전입시기		전출시기	
		년	월	년	월
1					
2					

· *현재 가구원이 아니지만 지난 해 6개월 이상 함께 살았던 가구원의 전입 및 전출시기를 기입함.*

신규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Ha1로 가십시오.
신규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Ha8로 가십시오.

Ha. 가구원 인적사항

※ 가구원 인적사항은 **가구원 인적사항표**에 별도로 기입합니다.
※ **가구주**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원으로서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세대주나 호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가구원** : 가구 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혈연이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로 연결된 구성원을 말합니다.
※ **신규가구원**은 신규가구의 가구원 및 기존 조사에 참여한 가구에 새로 들어온 가구원(전입가구원)을 의미하며, **신규가구**는 모든 가구원의 성명을 응답받습니다.

구분	지침	구분	지침
Ha1) 성명	*※ 주민등록상의 성명 기준*	**Ha7)** 학력	0. 미취학 1. 무학 (0~1번 응답자는 Ha8로 갈 것)
Ha2) 성별	1. 남 2. 여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4년제 미만) 6. 대학(4년제 이상) 7. 대학원(석사) 8. 대학원(박사) (2~8번 응답자는 Ha7-1로 갈 것)
Ha3) 가구주와의 관계	*※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표 참조*		
Ha4) 생년월일	_____년 ___월 ___일 *※ 주민등록생년월일을 응답받으며, 해당 값은 연령으로 환산하여 제공함*	**Ha7-1)** 이수여부	1. 졸업 2. 수료 3. 중퇴 4. 재학 5. 휴학
Ha5) 혼인상태	0. 비해당(만 18세 미만) 11. 배우자있음(사실혼 포함) 12. 배우자있음(별거) 2. 이혼 3. 사별 4. 미혼	**Ha8)** 종교유무	1. 있다 (Ha8-1로 갈 것) 2. 없다
		Ha8-1) 종교	1. 개신교 2. 천주교 3. 불교 4. 기타 (_____)
Ha6) 가구원 동거여부	1.동거 ➔ Ha7)로 갈 것 2.비동거 ➔ Ha6-1)로 갈 것	**Ha9)** 작년 주된 경제활동상태	0. 비해당(만 15세 미만) 1. 평소 취업자 3. 평소 구직자 4. 평소 비경제활동인구
Ha6-1) 가구원 비동거 사유	1. 직장(직업)의 이유(근무지의 거리 및 직업의 특성 등) 2. 건강상의 이유(요양 등) 3. 가족간 불화(별거 등) 4. 학업 5. 구직활동 6. 양육(미취학 자녀의 탁아) 7. 기타(_____)	**Ha10)** 현재 경제활동상태	0. 비해당(만 15세 미만) 1. 취업자 3. 구직자(또는 실업자) 4. 비경제활동인구

- **평소 취업자** : 1년간 취업기간과 구직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중 취업기간이 구직기간보다 길거나 같은 사람(취업기간≥구직기간)
- **평소 구직자** : 1년간 취업기간과 구직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중 구직기간이 취업기간보다 긴 사람(취업기간< 구직기간)
- **평소 비경제활동인구** : 1년간 취업기간과 구직기간의 합이 6개월 미만인 사람(취업기간과 구직기간의 합 < 6개월)

- **취업자** : ①수입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자, ②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③일시휴직자(6개월 미만)
- **구직자(또는 실업자)** : 지난 4주 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
- **비경제활동인구** : 만15세 이상 중 취업자나 구직자(또는 실업자)가 아닌 자(예 : 육아, 가사, 통학(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심신장애, 기타 등)

가구원 인적사항표

가구 ID

해당 가구원수 총 ( )명 잔존 가구원수 총 ( )명 조사불능 가구원수 총 ( )명

가구원 구분	개인 ID	성별	생년월	가구주와의 관계	만 나이	만 나이	현재 혼인상태	혼인여부	개인조사 대상자 여부	개인조사	1차 본조사 (2020년) 동거여부	5차 본조사 (2024년) 동거여부	10차 본조사(2024년) 동거여부	응답여부	면접시점	가족 동거여부	가족 배우자	학력	이슈 여부	혼인 여부	현재 경제활동여부	자녀 등 경제활동여부	현재 사망/실종/소재 불명	현재 사망/실종/소재 불명	현재 사망/실종/소재 불명	현재 사망/실종/소재 불명	자녀 등 가구원 여부	접촉시기	접촉시기	접촉시기
		1. 남 2. 여	1. 남 2. 여	(CODE1) 참조	만	만			1. 조사 대상 2. 비조사 대상	1. 실제 2. 비실제	1. 동거 2. 비동거	1. 동거 2. 비동거	1. 동거 2. 비동거	0. 비해당 (무응답 미만) 1. 해당(응답 완료) 2. 해당(응답 불가) 3. 해당(사망) 4. 해당(실종)	1. 월 2. 분기 3. 반기 4. 년	1. 동거 2. 분거	0. 비해당 1. 무응답 2. 모름 3. 거절 4. 기타	0. 미취학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교(4년제 미만) 5. 대학교(4년제 이상) 6. 대학원(석사) 7. 대학원(박사)	1. 결혼 2. 이혼 3. 사별 4. 별거 5. 동거	1. 있다 2. 없다	0. 비해당 1. 취업 2. 구직 3. 구직X 4. 비경제활동	0. 비해당 1. 현재 일하고 있다 2. 일하다 그만둠 3. 한 번도 일한 적 없다 4. 계속 집에서 육아/가사	1. 있다 2. 없다	사유	접촉/생사/소재 불명 사유 (CODE) 참조	1. 있다 2. 없다	1. 가구원 2. 가구원 아님	월	년	월
가구주																														
배우자																														
가구원3																														
가구원4																														
가구원5																														
가구원6																														
가구원7																														
가구원8																														
가구원9																														
가구원10																														
자녀 조사 대상 가구원																														
자녀 조사 대상 가구원 외 동거 자녀																														
자녀 조사 대상 가구원 외 동거 자녀																														

Hb. 주거 현황

※ 주거현황은 현재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Hb1)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종류 *조사원이 판독하여 기록

1. 단독주택
   - 11. 일반단독주택
   - 12. 다가구용 단독주택
2. 아파트
   - 21. 일반아파트
   - 22. 임대아파트(영구임대/일반임대)
3. 연립/다세대주택
4. 점포주택
5.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6. 기타(_____)

Hb2) 주택 면적

주택면적

십만	만	천	백	십	일

㎡ (또는 _____ 평)

대지면적 (아파트는 응답하지 않음, 연립/다세대는 가구지분만 기재)

십만	만	천	백	십	일

㎡ (또는 _____ 평)

※ ㎡ 모를 경우 평(1평 = 3.3058㎡)으로 응답

Hb3) 점유형태

1. 자가 → Hb 3-1
2. 전세 → Hb 3-2
3. 월세·반전세(보증금 있음) → Hb3-2, Hb3-3
4. 월세(보증금 없음) → Hb3-3
5. 기타(무상주택, 사택 등) → Hc1

Hb3-1) 현재 가격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지금 이 주택을 팔려고 내놓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가격)
※ 주택의 현재 거래 시가, 모르는 경우에만 공시 지가

Hb3-2) 전·월세보증금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Hb3-3) 월세(임차료) 또는 사글세(월 평균)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응답 후 Hc0로 가십시오.

Hc. 가구 지출

※ 지출과 관련한 모든 문항은 지난 한 해(1.1. ~ 12.31.) 기준으로 가구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 기재

Hc0) (지난 한 해) 가구원*

*※ **가구원** : 지난 한 해 동안 가구 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혈연이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로 연결된 구성원(동거 및 비동거 가구원 포함)*

총 [ ] 명

번호	구 분		설명 및 예시	제외 항목	발생 유무 1. 있었다 2. 없었다	부담 주체	기준 1. 월 평균 2. 연 총액	금액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소비지출			가구가 특정 목적(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13개 중분류)을 위해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Hc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가구에서 주로 소비하거나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구매 비용 - 조리용 식료품, 즉석 식품 - 알코올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모든 음료	음식점 및 주점, 다과점 등에서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형태로 제공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는 제외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c2)	주류 및 담배	Hc2-1) 주류	소비 장소에 관계없이 가구에서 구입한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모든 음료	호텔, 음식점, 카페, 주점, 간이음료점 등에서 즉시 소비를 위해 구입한 주류는 제외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c2-2) 담배	가구에서 구입한 모든 담배 및 그 외 담배 제품	전자 담배 기기, 라이터는 제외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c3)	의류 및 신발		모든 종류의 의류 및 신발, 액세서리 등 구입비, 의류 및 신발 수선 및 세탁비 등 - 중고 의류 및 신발 구입비용도 포함	스포츠 및 게임 전용 신발은 제외(축구화, 골프화 등)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c4)	주택, 수도,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Hc4-1) 주거비	주택 또는 주거 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한 각종 재화 및 서비스 구입 비용 - 월세 비용 및 주거와 관련된 주차장 임차료 포함	교육기관 및 휴가지, 호스텔 숙박서비스 비용, 노인 대상 비의료 양로원 비용 제외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c4-2) 광열수도비	수도 공급 및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료 등 - 수도 사용요금, 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 비용, 하수 처리 비용, 공동 주택 관리비	병 또는 용기로 판매되는 생수 구입비, 창문 청소, 일반 소독 등 가사서비스 구매 비용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c5)	가구, 가사 비품 및 기타 생활용품	Hc5-1) 가구집기구입비	가구, 가사 비품 및 카펫 구입 및 설치, 임차 비용, 가정용 섬유제품(커튼, 침구류), 가전 제품(생활, 주방, 세탁, 냉난방, 청소), 식기류 및 주방용품, 가정·정원용 공구 및 장비, 청소 및 생활용품 등	정보통신 기기 관련 제품(휴대폰,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c5-2) 가사서비스비	가구에서 보수 및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한 가사 관리인, 가정부, 요리사, 보모, 가정교사, 청소부, 조경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 - 기업체 또는 자영업자가 제공하는 청소 및 소독, 살균 서비스 비용도 포함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번호	구 분		설명 및 예시	제외 항목	발생 유무 1. 있었다 2. 없었다	부담 주체	기준 1. 월 평균 2. 연 총액	금액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Hc6)	보건	Hc6-1) 통원 치료 및 의약·의료용품 및 관련 보조용품 비용	입원 치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보건 의료 비용으로 의약품, 의료용품 및 관련 보조용품 구입비용, 외래환자 치료 서비스 비용, 기타 보건서비스(비급여 항목의 진단 영상 및 의료 검사 서비스, 환자 응급 수송 및 긴급 구조 서비스) 비용을 포함	입원 치료 중 투약된 약제비나 의료용품 및 관련 보조용품 비용, 영양 보충제 및 강화 식료품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c6-2) 입원 치료 비용	입원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주요 기준은 입원 여부에 있으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예: 병원, 요양시설, 이동 간호 서비스 시설 등) 유형과는 관련이 없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비의료 보호 기관 또는 거주 수용 시설 비용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c7)	운송(교통비)		개인 운송장비(자동차, 자전거 등), 주유비, 수리비, 주차료(주거용 제외), 통행료, 운전교습비, 대중교통 이용료, 택시비, 항공비, 상품 운송 서비스(우편 및 택배료, 이사 대행 및 보관서비스)	여가용 차량(캠퍼 밴, 카라반, 트레일러, 항공기 및 보트 등) 구매 비용, 주거를 위한 주차료, 단체여행에서 지불한 교통비용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c8)	정보 통신(통신비)		정보통신기기 구입비용와 유지비·관리비 및 임차료, 게임 이외의 소프트웨어, 이동통신 서비스, 인터넷 접속 제공 및 망 저장 서비스, 결합 통신 서비스, 텔레비전 시청료 및 수수료,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료	게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 구매 비용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c9)	오락, 스포츠 및 문화	Hc9-1) 여가생활	오락, 스포츠 및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비용으로 사진 및 영상 촬영장비, 여가생활용 장비, 게임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스포츠 용품, 조경용품, 애완동물 관련 용품, 오락 및 여가 서비스 비용, 서적 및 신문, 문구용품 등 구입비	차량용 블랙박스, 웹 카메라, 예술품 또는 골동품에 해당하는 수집물, 캠핑 및 정원용 가구, 안전 장비, 여가용 차량 연료 및 윤활유, 우편 엽서, 휴대용 전자계산기 등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c9-2) 단체여행	대상 기간 및 휴가지 등에 관계 없이 운송, 숙박, 식사 제공, 관광 안내 등과 같은 단체여행과 관련한 묶음으로 결합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 - 단체여행 관련 지출은 개별 구성 부문별로 각 비용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단체여행에서 개인이 따로 구입하거나 지불한 상품 및 서비스 비용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c10)	교육 서비스	Hc10-1) 공식교육	학위, 수료증서, 졸업 증서 등을 제공하는 공식 교육(유·초·중·고·대학(원))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입학금 및 등록금, 수업료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며, 관련되는 현장 학습비, 단위 강좌 수강료, 시험료, 학위 취득비, 시험료 등도 포함 - e-learning 및 통신 강좌 방식과 함께 텔레비전을 이용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포함	교복 구입비용, 수학여행을 제외한 운송 서비스 비용, 교과서 및 학습지, 문구류 구입비용, 급식 제공 서비스, 기숙사 비용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c10-2) 기타교육(사교육비)	학원 및 보습 교육, 학원 이외 개인 교습, 정규 교육 교과가 아닌 어학 심화 과정 및 국제 어학연수, 언어능력 시험 대비 강습 등(성인도 대상에 포함)	운전 교습, 여가활동 관련 강습, 어학 훈련 프로그램이 기록된 휴대식 전자 매체를 통한 학습 등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c10-3) 성인교육(학원 및 개인 교습)	성인을 대상으로 교양 개발 또는 특정 직업훈련 중심으로 사설 강습을 제공하는 독립 개인 교습, 일반 학원 및 유사 교육시설 서비스, 시험 대비 강습, 온라인 개인 교습 등을 포함 - 성인 대상 사설 강습 독립 개인 교사, 일반 학원 및 유사 교육 시설 서비스 수강료, 교양 개발 또는 특정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단기 교육과정, 시험 대비 강습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모든 개인 교습 및 보습 교육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어학 관련 교육비 및 국제 어학 연수비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번호	구 분		설명 및 예시	제외 항목	발생 유무 1. 있었다 2. 없었다	부담 주체	기준 1. 월 평균 2. 연 총액	금액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H-11)	음식물 및 숙박 서비스	H-11-1) 음식 및 음료 서비스 (외식비)	음식점, 카페, 구내 식당, 학교 및 기타 교육 시설 구내음식점 등에서 완전 서비스 제한 서비스 셀프 음식 및 음료 서비스 포함	슈퍼마켓 및 시장 등에서 공급하고 시설 구내에서 소비하는식료품 및 음료 구입비, 단체행사 목적 상품 또는 여가 문화, 스포츠 또는 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내에 제공한 식료품 및 음료 서비스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11-2) 숙박 서비스	자신의 주된 거처 및 부차적 거처를 떠난 여행객 및 관광객 등을 위한 서비스 - 별도 분리되어 청구되지 않을 경우, 숙박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음식 및 음료 서비스 가치 포함 - 주차 서비스, 수영장 및 운동시설 회원 및 외래 시설 이용료 등도 포함	호텔 객실 또는 하숙집을 주된 거처로 사용하는 경우, 국내 해외 단체여행에서 제공된 숙박시설 이용료 등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12)	보험 및 금융서비스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주거, 건강, 운수, 여행자 보험 등) 관련 보험료, 각종 금융 서비스 수수료 등	사회보험료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13)	개인 미용, 사회 보장 및 기타 상품	H-13-1) 개인 미용 및 개인용품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이용 비용 및 개인 미용을 위한 전기시 바전기시 기구 구매 비용, 장신구 및 손목시계, 보석 및 신용품, 여행용품 및 기타 개인 용품 구매 비용, 법률 서비스 및 행정 서비스 수수료 등을 포함 - 종교 및 신앙용품 구매 비용은 제외 - 신 송개 장의, 필생학 및 정신학, 개인정호학, 결혼상담소 서비스 수수료 및 종교 서비스 수수료 등을 포함	일용 행사용(생활인, 손수건, 스카프 제외) 장신구 등, 스마트 워치, 기차 및 항공 승차권, 관광료, 코스어스 등 종교 서적 등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13-2) 사회보장 서비스	양돈 보육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 대상 비밀료 요양원 서비스, 재가 복지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	가구에서 고용한 가사도우미, 입원 또는 외래 환자 치료 서비스 등 의료 서비스에 포함된 사회보장 서비스 장식간강 회복용지, 요양원 및 병원 서비스, 유치원 교육 등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비소비지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 비소비 지출 및 가구간 이전, 비영리단체의 이전 등의 사적 비소비 지출									
H-14)	경상 이전 및 과징금		납세 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로 경상 경기에이로 부과하는 세금(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재산재세, 등) 또는 비경상적으로 부과하는 조세(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증권 및 복권 등에 당첨된 후 납부하는 소득세, 증여세, 취득록세, 과징금(면허료, 벌금 등)	수도 공급 및 기타 추가 관련 서비스,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료 등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15)	사회보험료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개인연금저축, IRP 등 기업연금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16)	이자비용		주택 구입 또는 가구 운영을 위한 차입금에 : 대출금에 대한 지불 이자	사업용 차입금에 대한 지불이자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17)	기구간 이전지출		친지, 친구 등과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 1회성 비용(축하금, 위문금, 소비지출 보조승금, 용돈 등), 경조비(축의 및 조의금), (국내, 국외)단기여행에 대한 정상적 송금(생활비, 교육비, 용돈, 양육비, 선배금 제외	재난 상속재산분배금과 추하금 대신 생활의 편의속 비용, 주택 구입 또는 선배금 제외								
H-18)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종교단체(성당 헌금, 사주 등), 정당, 종중, 사회운동단체, 자생 상조회 등에 대한 단체회비, 사회단체 및 기타 기관 기부금	여행 목적의 상조회비 및 종교시설 밖의 수련회 참비용								

번호	구 분	설명 및 예시	제외 항목	발생 유무 1. 있었다 2. 없었다	부담 주체	연간 금액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기타지출		가계 지출 이외의 지출로서 현금으로 자산축적 또는 구입을 위해서 지출한 현금 및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										
Hc19)	자산변동 지출	저축, 펀드, 유가증권, 부동산, 귀금속 등의 자산 구입을 위해 지출한 현금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 회비, 부동산 취득 관련세, 거주 면적의 증가 없는 수리 및 보수 비용, 가념주화, 메달, 모조 장신구 등 자산 가치가 없는 상품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c20)	부채감소 지출	차입금 상환, 할부 및 외상으로 변제, 월세(전세) 보증금 반환 등 부채 감소를 발생시킨 지출	주택 관련 대출 또는 신용 대출 등의 지급 이자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c21)	자산 이전 지출	자산을 타가구에게 증여하거나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에 기부한 경우로 재산 증여, 합의금, 지참금, 위자료, 예단비, 타가구를 위한 전세 자금 및 부동산 구입비 증여 등	가구 내 증여 또는 본인(가구원) 명의의 부동산 구입		1. 가구지출							
					2. 타인지출							

Hc22) 작년 한 해, 지출이 소득보다 많았던 달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 **Hc22-1** 2. 없었다 ➔ **Hd**

Hc22-1) 부족한 생활비 마련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1. 은행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이용
2. 현금서비스 이용 (카드 사용 포함)
3. 자녀나 친척(친지)의 도움
4. 친구나 이웃의 도움
5. 사채 이용
6. 부동산 매각
7. 전세나 월세의 규모를 줄임
8. 저축, 예금, 적금, 보험 등의 해약
9. 주식이나 채권을 비롯한 금융자산 매각 (파생금융상품(CD, MMF 등)포함)
10. 자동차/내구재/금 · 은 등의 귀중품 매각
11. 기타(_____)

Hd. 가구 소득 및 저축

※ 지난 한 해(1.1. ~ 12.31.)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Hd0-1) 작년 한해, 일자리가 있었던 가구원 *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총 ☐☐ 명	Hd0-2) 작년 한해, 무급가족종사자였던 가구원	총 ☐☐ 명

※ ***일자리가 있었던 가구원*** : (만 15세 이상) 작년 한 해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 또는 주당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가구원의 일을 도와준 급기족종사자인 경우 모두 일자리가 있었던 가구원으로 봄. 일시적 병, 사고, 연휴가 교육, 노동쟁의 사업부진조업중단 등의 이유로 일시적(6개월 이내)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함

※ ***무급가족종사자였던 가구원*** : (만 15세 이상) 작년 한 해 무급으로 가구원의 일을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 도와주는 가구원

※ Hd1~Hd9에 해당하는 **작년 한 해** 금액은 **연간총액**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번호	구 분		설 명			유무 1. 있었다 2. 없었다	금액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경상소득													
Hd1)	근로소득		기업체 또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일)를 제공한 대가로 고용주 또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현금으로 임금 및 봉급, 현금 보너스 및 수당, 수수료 및 봉사료, 기타 현금 상여금 등	근로소득이 있었던 가구원	총 ☐☐ 명								
Hd2)	사업소득		개인이 사업(자영업)에 참여하여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받은 소득으로 총생산에서 운영비를 차감한 순이익	사업소득이 있었던 가구원	총 ☐☐ 명								
Hd3)	재산소득	Hd3-1) 이자 및 배당 소득	은행, 건축조합, 신용조합 및 기타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이자소득과 주식 및 출자금, 보험, 신탁 등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발생하는 배당소득										
		Hd3-2) 임대소득	주택, 토지, 비금융자산 등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 받는 소득(임대료, 사용료 등)										
		Hd3-3) 개인 및 퇴직연금 소득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가구 및 고용주 등의 일정불입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연금과 같은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개인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형)과 고용주 또는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시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 수령액										
Hd4)	공적이전소득	Hd4-1) 공적연금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에서 매월 일정액을 반복적으로 정부가 지원하여 지급받는 급여										
		Hd4-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은 모든 현금성 급여(생계, 주거, 교육 등)										
		Hd4-3) 기초연금	기여금 적립 없이 연령, 소득, 부 등의 상태를 평가하여 일정조건을 만족한 경우 지급받는 수혜금										
		Hd4-4) 기타 사회수혜금	특정한 자격이 충족되면 정부로부터 경상적으로 받는 사회적 현물급여를 제외한 수혜금으로, 장애인 수당, 아동 수당, 제육인연금, 근로장려금, 출산장려금, 참전용사수당, 보훈연금, 국가장학금(현금수령) 등이 해당										
Hd5)	사적이전소득	Hd5-1) 사적 이전소득	가족 지원금(위자료, 자녀양육비 및 부모 부양 등)의 형태로 다른 가구로부터 받는 경상 이전을 의미. 타가구로부터 대가 없이 보조 받는 일체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포함. 다만, 경조사에 대한 상호부조나 주택 구입후 증여 및 구입을 위한 일회성 이전은 제외										
		Hd5-2) 비영리단체 이전소득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자선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장학금이나 구호금 등										
		Hd5-3) 기타 이전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자의 세금 및 건강보험 환급액 등과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Hd6)	비경상소득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면서 일회성이거나 반복되지 않는 방법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소득, 퇴직수당(일시 퇴직금 제외), 복권 당첨금, 보험금 수령액 등 1회성 수입										
기타 수입													
Hd7)	자산변동 수입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및 금융자산(현금 및 예금 등)에서 자산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축이나 보험등의 해지·만기에 따른 예금 인출, 보험금 수취,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입, 기타 골동품·귀금속 등의 매각대금 등										
Hd8)	부채증가 수입		부동산 및 부동산 항목 이외에 가계 대출을 통해 매입한 차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로서 부동산 담보대출 수입, 마이너스 통장이나 학자금 대출과 같은 기타 대출 및 보증금 수령 등이 해당										
Hd9)	자산이전 수입		자산을 타가구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경우로 비교적 금액이 크거나 재산 상속 및 증여 받은 경우 등										

He. 가구 자산 및 부채

※ 가구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문항은 **현재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가구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답해주십시오.

번호	구 분		설 명	유무 1. 있다 2. 없다	금액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He1)	비금융자산	He1-1) 부동산자산	자가 거주 주택과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및 토지 개량으로 구성된 기타 부동산을 포함								
		He1-2) 자동차나 귀중품 등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자동차 및 귀금속·보석·예술품·우표 및 동전 등 귀중품을 포함								
He2)	금융자산	He2-1) 현금 및 예금	상품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요구불예금 등								
		He2-2) 직접투자 주식 및 채권, 펀드	거래소와 비상장주식에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 또는 투자자가 금융자산이 비금융자산 투자를 위해 자금을 모으는 집합투자로서 적립식 및 예치식 투자 펀드 등								
		He2-3) 비소멸성 보험 및 개인·퇴직연금 수령권	노후생활자금 또는 목돈 등을 대비하기 위한 장기저축성 보험이나 은행·생명 또는 손해보험회사·투신사·퇴직사 등에서 가입한 신탁형, 펀드형, 보험형 개인연금, 퇴직금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퇴직 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 등								
		He2-4) 기타금융자산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건물·토지 등의 임치보증금과 다른 가구에 빌려주거나 기타 미수금 등								
He3)	부채		담보대출 등 금융기관이나 회사에서 빌린 돈의 잔액, 사채나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돈,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돈, 연대보증,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에서 받은 총 금액 등으로 신 빚의 잔액 및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 신용카드 일시금 및 할부잔액, 현금서비스, 학자금 대출금 등								

Hf. 사회복지 관련 제도

조사원 참고사항

Hf1) 작년 한 해(1.1. ~ 12.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종류나 수급 개월, 연간수령금액 등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급여 종류	수급받은 개월 수	연간수령금액 (총액, 천원)
Hf1-1) 생계급여	0. 해당없음, 1. 일반수급가구, 2. 조건부수급가구	개월	
Hf1-2) 의료급여	0. 해당없음, 1. 의료급여 1종, 2. 의료급여 2종		
Hf1-3) 주거급여	0. 해당없음, 1. 임차급여(특례포함), 2. 수선유지급여(특례포함)	개월	
Hf1-4) 교육급여	0. 해당없음, 1. 수급가구		
Hf1-5) 기타급여	0. 해당없음, 1. 해산급여, 2. 장제급여, 3. 둘 다		

* ***생계급여의 조건부수급가구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를 지칭

* ***해산급여는*** 조산 및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추가 출생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하는 급여

*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1구당 80만원)을 지급

Hf2) 귀댁의 가구원 중 작년 한 해(1.1. ~ 12.31.),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이 계십니까? 현재 가구원은 아니지만 작년 한 해 귀 댁에서 생활을 함께 하셨던 가구원에 대해서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 Hf2-1
2. 아니오 → Hf3

Hf2-1) 작년 한 해, 귀 댁의 가구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가구원은 아니지만 작년 한 해 귀 댁에서 생활을 함께 하셨던 가구원에 대해서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급은 이용한 최종시점에서의 등급을 의미함*

순번	가구원 pid	등급* 1. 1등급 2. 2등급 3. 3등급 4. 4등급 5. 5등급 6. 인지지원등급	이용 개월 수	이용한 서비스 종류(중복응답 가능) 1. 이용한 적 있음, 2. 이용한 적 없음						
				(1) 방문 목욕	(2) 방문 요양	(3) 방문 간호	(4) 주야간 보호	(5) 단기 보호	(6) 복지용구 대여, 구매	(7) 기타
1										
2										
3										
4										
5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와 같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임

Hf3) 귀 댁에서 작년 한해(1.1.~12.31.) 다음 소득보장제도 및 보건복지사업을 수급 또는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사원 참고사항

소득보장제도 및 보건복지사업 종류		수급 및 이용 경험
Hf3-1)	기초연금	1. 있었다, 2. 없었다.
Hf3-2)	근로장려금 제도	1. 있었다, 2. 없었다.
Hf3-3)	자녀장려금 제도	1. 있었다, 2. 없었다.
Hf3-4)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1. 있었다, 2. 없었다.
Hf3-5)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재가노인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복지용구지원 서비스 등)	1. 있었다, 2. 없었다.
Hf3-6)	치매 관련 복지서비스(치매안심센터,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등)	1. 있었다, 2. 없었다.
Hf3-7)	기타 건강보장 서비스(예 : 노인 안검진 사업,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 건강잔치)	1. 있었다, 2. 없었다.
Hf3-8)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1. 있었다, 2. 없었다.
Hf3-9)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1. 있었다, 2. 없었다.
Hf3-10)	민간형(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일자리 사업	1. 있었다, 2. 없었다.
Hf3-11)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자원봉사활동·노인교실 참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용 등)	1. 있었다, 2. 없었다.
Hf3-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안전 지원, 사회참여, 영양·보건·건강·우울예방·인지활동 등 생활교육, 외출동행 및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1. 있었다, 2. 없었다.
Hf3-13)	무료급식 지원 서비스(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1. 있었다, 2. 없었다.

* *재가노인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자 또는 실비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노인이 대상임.*

가구용 조사가 끝났습니다.

[가구주와의 관계 CODE]

10. 가구주	20. 가구주의 배우자
01. 가구주의 아버지	03.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02. 가구주의 어머니	04. 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
05. 가구주의 조부	07.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부
06. 가구주의 조모	08.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모
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 가구주의 둘째 자녀	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13. 가구주의 셋째 자녀	23.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 = 14, 다섯째 = 15, ...)	(넷째 = 24, 다섯째 = 25, ...)
31. 가구주의 형제/자매	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31, 두 번째 사람 = 32, ...)	(첫 번째 사람 = 41, 두 번째 사람 = 42, ...)
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51, 두 번째 사람 = 52, ...)	(첫 번째 사람 = 61, 두 번째 사람 = 62, ...)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212. 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113, 넷째 = 114, ...)	(셋째 = 213, 넷째 = 214, ...)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123, 넷째 = 124, ...)	(셋째 = 223, 넷째 = 224, ...)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133, 넷째 = 134, ...)	(셋째 = 233, 넷째 = 234, ...)
311. 가구주의 첫째 형제/자매의 첫째 자녀	411. 가구주 배우자의 첫째 형제/자매의 첫째 자녀
312. 가구주의 첫째 형제/자매의 둘째 자녀	412. 가구주 배우자의 첫째 형제/자매의 둘째 자녀
(셋째 = 313, 넷째 = 314, ...)	(셋째 = 413, 넷째 = 414, ...)
321. 가구주의 둘째 형제/자매의 첫째 자녀	421. 가구주 배우자의 둘째 형제/자매의 첫째 자녀
322. 가구주의 둘째 형제/자매의 둘째 자녀	422. 가구주 배우자의 둘째 형제/자매의 둘째 자녀
(셋째 = 323, 넷째 = 324, ...)	(셋째 = 423, 넷째 = 424, ...)
998. 기타 친인척(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	997.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

[전출/사망/신규 사유 CODE]

전출사유	사망사유	신규사유
11. 혼인하여 따로 살게 됨	21. 노환	31. 출생
12. 이혼하여 따로 살게 됨	22. 사고	32. 입양
13. 해외 유학이나 이민 때문에	23. 질병	33. 혼인
14. 직장 때문에	24. 사망-기타	34. 합가
15. 경제적으로 독립할 여건이 되어 분가		35. 해외 유학 또는 근무지에서 돌아옴
16. 경제적 여건으로 부양하는 것이 불가		36. 군복무 후 귀가
17. 가족 간 불화 또는 갈등		37. 장기수용시설(교도소, 요양시설)에서 돌아옴
18. 군입대, 장기수용시설 입소(교도소, 요양시설 포함)		38. 부모부양
19. 기타		39. 손자녀 돌봄
		40. 기타

개인용 조사표

가구ID	1차 본조사 참여여부	2차 본조사 참여여부	3차 본조사 참여여부	4차 본조사 참여여부	5차 본조사 참여여부	6차 본조사 참여여부	7차 본조사 참여여부	8차 본조사 참여여부	9차 본조사 참여여부	10차 본조사 참여여부	가구주 와의 관계	05표본 원개인 여부	13표본 원개인 여부	23표본 원개인 여부
	1. 참여 2. 참여안함	1. 참여 2. 참여안함	1. 참여 2. 참여안함	1. 참여 2. 참여안함	1. 참여 2. 참여안함	1. 참여 2. 참여안함	1. 참여 2. 참여안함	1. 참여 2. 참여안함	1. 참여 2. 참여안함	1. 참여 2. 참여안함		1. 05표본 원개인 2. 05표본 원개인 아님	1. 13표본 원개인 2. 13표본 원개인 아님	1. 23표본 원개인 2. 23표본 원개인 아님

개인ID		성명		성별	1. 남 2.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개인 본인응답 여부	1. 본인 2. 대리	응답자 성명		대리응답자와 가구주와의 관계		대리응답 사유	

조사날짜	202 년 월 일	조사시각	시 분	조사시간	분	조사원ID	

측정항목	측정기준	참고
Job. 직업력(일자리 경력 변화 현황)	지난 조사 이후	▪ 현재: 조사시점 ▪ 작년 한 해: 2023.1.1.~2023.12.31.
Pd. 공적연금(연금력 변화 현황)		
Aa. 복지 태도 및 노후생활비	현재	
Ab.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Ac. 기초연금		
Ad. 노인 일자리 사업		
Ae. 노후준비서비스		

※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할 경우는 '-8', 강력히 응답을 거절한 경우는 '-7'로 표기함.

일자리 경력 변화 현황

일자리 발견 차수	일자리 순서	일자리 번호	이전 조사 당시 일자리 번호	일자리 계속 여부	주된 일자리 여부	시작 시기		끝난 시기		업종	직종	총사상 수	총사상 지위	고용 형태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여부	근로 시간 형태	주당 근로시간		임금 방식	평균임금(소득)					주기적 일자리		사회보험			퇴직(연)금 적용 여부	퇴직 사유	퇴직금 수령 여부	퇴직금 총액 (만원)	퇴직금 수 사용처
						연	월	연	월								일	시간		연봉 (천원)	월 평균 (천원)	주당 (천원)	일당 (천원)	시간당 (백원)	여부	지속 기간 (월)	공적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일자리 발견 차수	일자리 번호(4자리) (조사차수(2자리)+일자리순서(2자리))	일자리 계속 여부	주된 일자리	업종	직종	총사상 수	총사상 지위 (제1차 한국총사상지위분류)	고용형태
9. 9차 조사 이전에 조사된 일자리 10. 10차 조사에서 조사된 일자리 n. n차 조사에서 조사된 일자리 ...	**. 최고적 일자리 -**번째(1~99) n0m. n차 본조사에서 조사된 m 번째 일자리 n1m. n차 부가조사에서 조사된 m 번째 일자리 1001. 10차 본조사에서 조사된 첫 번째 일자리 1002. 10차 본조사에서 조사된 두 번째 일자리 1003. 10차 본조사에서 조사된 세 번째 일자리 1011. 10차 부가조사에서 조사된 첫 번째 일자리 ...	0. 최고적 일자리 1. 이전 조사시 보유 / 현재 보유 2. 이전 조사시 보유 / 현재 미보유(종결) 3. 이전 조사시 미보유 / 현재 보유(신규) 4. 이전조사시 미보유 / 현재 미보유(종결)	0. 아니다 1. 그렇다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중·소분류 코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중·소분류 코드	1. 1~4인 2. 5~9인 3. 10~29인 4. 30~49인 5. 50~69인 6. 70~99인 7. 100~299인 8. 300~499인 9. 500~999인 10. 1,000인 이상	11. 법인 고용주 12. 개인기업 고용주 21.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 30. 의존계약자 4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42. 장기 고정 기간 근로자 (1년 이상) 43. 단기 고정 기간 근로자 (3개월~1년 미만) 44. 단기·임시근로자 (3개월 미만) 45.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 50. 무급가족종사자	0. 비해당 1. 정규직 2. 비정규직

정부지원일자리 사업여부	근로시간 형태	임금 방식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연)금 적용여부	퇴직사유			퇴직(연)금 수령여부	퇴직금 주사용처
1.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형 2.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형 3.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 4. 노인일자리사업 취업알선형 5. 노인일자리사업 고령자친화기업형 6.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인턴십 7. 기타정부지원일자리사업	0. 비해당 1. 시간제 2. 전일제	1.연봉제 2.월급제 3.주급/격주제 4.일당제 5.시간제 6.능력, 실적제 (기본급 없음) 7.기타	0. 비해당 1. 가입(사업장, 지역가입) 2. 미가입	0. 비해당 1. 가입 2. 미가입	0. 비해당 1. 퇴직연금 2. 퇴직금 3. 퇴직연금과 퇴직금 모두	1. 정년퇴직 2. 명예퇴직 등 3. 권고사직 및 해고 4. 다니던 회사/ 운영하던 사업의 부도 또는 폐업 5. 보수 저성 등에 맞는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기기 위해 6. 일로 인한 스트레스/ 직장상사 또는 동료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7.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8.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9. 본인의 여가생활을 위해 10. 결혼/ 출산/ 육아 등 가사문제로 11. 배우자를 비롯한 동거 가족원의 수입만으로도 생활이 충분해져서 12. 비동거 가족원 및 친지가 충분한 생활비를 보내줘서 13.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어서 14. 병역, 학업 등으로 15. 계약기간이 끝나서 16. 사업장의 성격이 바뀌어서 17. 기타 개인적 사유로 인해	0. 비해당 1. 퇴직금 2. 퇴직연금(일시불) 3. 퇴직연금(연금) 4. 퇴직금과 퇴직연금 (일시불) 5. 퇴직금과 퇴직연금 (연금)	1. 본인(가구)의 생활비 2. 가족지원(자녀의 교육, 결혼, 사업자금 등) 3. 부채상환 4. 자산형성 및 사업 투자자금 5. 기타

응답 후 **연금력 변화 현황**으로 가십시오.

연금력 변화 현황

연금 적용상태 발견 차수	연금력 순서	연금력 번호	이전 조사 당시 연금력 번호	연금 적용상태	연금력 지속 여부	가입자										수급자					비해당
						공적연금 유형	시작 시기		끝난 시기		보험료 납부 여부	월평균 보험료	보험료 미납 유형	납부 예외 사유	미납 이유	납부 종료 사유	연금 납입 종류	수급개시시기		월평균 급여액	일시금 수령액	수급액 만족도	비해당 사유
							연	월	연	월								연	월				

연금적용상태 발견 차수	연금력 번호(4자리) (조사차수(2자리)+연금력 순서(2자리))	연금 적용상태	연금력 지속 여부		공적연금유형	월평균 보험료	보험료 납부여부	보험료 미납 유형	납부 예외 사유
n. n차 조사에서 조사된 연금적용상태 9. 9차 조사 이전에 조사된 연금적용상태 10. 10차 조사에서 조사된 연금적용상태 ...	**. 회고적 연금력 -**번째(1~99) n0m. n차 본조사에서 조사된 m번째 연금력 n1m. n차 부가조사에서 조사된 m번째 연금력 1001. 10차 본조사에서 조사된 첫 번째 연금력 1002. 10차 본조사에서 조사된 두 번째 연금력 1011 10차 부가조사에서 조사된 첫 번째 연금력 ...	1. 가입자 2. 수급자 3. 비해당 (또는 미가입)	구분	이전조사시	현재	10. 공무원 연금 20. 사학연금 30. 군인연금 40. 별정우체국연금 51.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52. 국민연금-지역가입자 53. 국민연금-임의가입자 54.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주/고용주가 내는 부분을 제외 한 본인부담금을 의미함 · 특수직역 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국가나 학교단체)가 내주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자신의 봉급에서 떼이고 있는 연금보험료만 의미함	1. 납부하고 있음 2. 납부하지 않고 있음	1. 납부예외 2. 단순 미납	1. 실직, 휴직, 사업중단 2. 3개월 이상 입원 3. 생계 곤란 4. 장애인 5. 학생 6. 성직자 7. 병역의무 수행
			1	가입자	가입자				
			2	가입자	비해당				
			3	가입자	수급자				
			4	비해당	가입자				
			5	비해당	비해당				
			6	비해당	수급자				
			7	수급자	수급자				
			0	회고적 연금력					

미납 사유	납부종료 사유	공적연금 급여종류					수급액 만족도	비해당 사유
1.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3.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4. 기타(_____)	1. 해외이주 2. 연금수급권자가 되어 3.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4. 퇴직 5. 납부방식(가입종별) 변경 6. 기타(_____) · 국민연금을 내다가 특수직역 연금을 내는 경우, 특수직연금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는 납부종료 사유가 '퇴직'이 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국민연금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0. (만 60세 이상) 가입 이력 없음 1. (만 59세 이하) 적용제외 대상 (무소득배우자 등) 2. (만 5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3. (만 60세 이상) 수급개시연령 미만 4. (수급개시연령 도달 후) 연기연금 신청 5. (만 60세 이상) 수급권 미확보로 인해 반환일시금 수령
		11. 퇴직연금 12. 유족연금 13. 장해연금 14. 퇴직(연금)일시금*	21. 퇴직연금 22. 유족연금 23. 장해연금 24. 퇴직(연금)일시금*	31. 퇴직연금 32. 유족연금 33. 상이연금 34. 퇴직(연금)일시금*	41. 퇴직연금 42. 유족연금 44. 퇴직(연금)일시금*	51. 국민연금-노령연금 53. 국민연금-장애연금 52. 국민연금-유족연금 54. 국민연금-분할연금 55. 국민연금-반환일시금		
		* 퇴직일시금은 국민연금 이외의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에게만 해당됨.						

응답 후 **Aa. 사회 인식 및 태도**로 가십시오.

Aa. 복지 태도 및 노후 생활비

Aa1~4. 복지 수준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원 참고사항

Aa1)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 복지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현재 수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 Aa1-1
2. 적당하다. ➜ Aa3
3.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 Aa1-2

Aa1-1) 노인 복지 수준을 현재 수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 다음 부문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축소되어야 할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1. 노인 빈곤 완화 지원(기초연금 등)
2. 노인 건강 서비스
3. 노인 돌봄(요양) 서비스
4. 치매 관련 서비스
5. 노인 고용/ 일자리 지원
6. 노후 여가 문화 서비스
7. 노인 자원봉사/사회참여 지원
8. 노인 특화 주거 서비스
9. 주택 개선 및 개조 서비스
10. 노인 특화 용품(고령친화용품) 지원
11. 없음

응답 후, Aa3으로 가십시오.

Aa1-2) 노인 복지 수준을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다음 부문 중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1. 노인 빈곤 완화 지원(기초연금 등)
2. 노인 건강 서비스
3. 노인 돌봄(요양) 서비스
4. 치매 관련 서비스
5. 노인 고용/ 일자리 지원
6. 노후 여가 문화 서비스
7. 노인 자원봉사/사회참여 지원
8. 노인 특화 주거 서비스
9. 주택 개선 및 개조 서비스
10. 노인 특화 용품(고령친화용품) 지원
11. 없음

Aa2) 귀하는 노인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반대한다
2. 반대한다
3. 대체로 반대한다
4. 대체로 찬성한다
5. 찬성한다
6. 매우 찬성한다

Aa3) 귀하는 국가가 중고령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내서
2.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3.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4. 모든 기업이 세금 등을 내서
5. 대기업이 세금 등을 내서

Aa4) 귀하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기초연금이나 돌봄과 같은 중고령자 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느 방안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제공
2.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되, 저소득층/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
3.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사회적 취약계층에게만 집중해서 제공

Aa5~7. 노후생활비

Aa5) 귀하는 몇 세부터 노후가 시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 [ ] 세

Aa5-1) 귀하가 Aa5)에서 응답한 나이부터 노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2. 첫 손자 또는 손녀를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3. 회갑이후이기 때문에
4.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5.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6.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에
7. 기타(_____)

조사원 참고사항

Aa5-2) Aa5)에서 응답한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귀하는 노후 시기에 해당하십니까?
1. 예 ➔ Aa6 2. 아니오 ➔ Aa5-3

Aa5-3) 귀하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일지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Aa5-4) 귀하가 평가하시기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본인의 재무, 건강, 여가활동, 대인관계의 노후준비 수준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노후준비영역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0점, 보통 50점, 매우 준비를 잘한 경우 100점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재무	( )점
건강	( )점
여가활동	( )점
대인관계	( )점
전체준비수준	( )점

Aa6) 귀하가 생각하시는 최소 수준의 노후생활비와 적정 수준의 노후생활비는 매월 얼마 정도 입니까? 부부, 개인기준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부부기준	개인기준
1. 최소 생활비 (월평균)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적정 생활비 (월평균)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 **생활비** :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함.
- **최소 생활비** :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함.
- **적정 생활비** :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소요한 비용을 의미함.

Aa7) 다음은 귀하께서 응답하신 노후생활비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귀하께서 응답하신 노후생활비(개인기준)를 토대로 소비생활을 하신다면 아래의 지출 항목별로 생활비를 어떻게 배분하시겠습니까?

번호	구 분		최소생활비	적정생활비
7-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7-2)	주류 및 담배			
7-3)	의류 및 신발			
7-4)	주택, 수도,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7-5)	가구, 가사 비품 및 기타 생활 용품			
7-6)	보건	7-6-1) 통원 치료 및 의약 의료용품 및 관련 보조용품 비용		
		7-6-2) 입원 치료 비용		
7-7)	운송(교통비)			
7-8)	정보 통신(통신비)			
7-9)	오락, 스포츠 및 문화			
7-10)	교육 서비스			
7-11)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7-12)	보험 및 금융서비스			
7-13)	개인 미용, 사회보장 및 기타 상품	7-13-1) 개인 미용 및 기타 개인용품 및 서비스		
		7-13-2) 사회보장 서비스		
7-14)	경상·비경상 조세 및 과징금			
7-15)	사회보험료			
7-16)	이자비용			
7-17)	가구간 이전지출			
7-18)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7-19)	자산변동, 부채감소, 자산이전 지출			

응답 후, **Ab.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가십시오.

Ab.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조사원 참고사항

Ab1) 귀하의 공적연금 적용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1. 가입 중 ➜ Ab1-1
2. 수급 중 ➜ Ab3
3. 가입하면서 수급 중 ➜ Ab1-1
4. 비해당(적용제외) ➜ Ab2

Ab1-1) 다음 중 귀하의 공적연금 가입 상태는?

10. 공무원연금
20. 사학연금
30. 군인연금
40. 별정우체국연금
51.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52. 국민연금-지역 가입자
53. 국민연금-임의 가입자
54. 국민연금-임의계속 가입자

Ab2) 귀하는 공적연금을 언제부터 받으실 계획이십니까?

1. 수급개시 연령 이전에 받을 계획이다. ➜ Ab2-1
2. 수급개시연령부터 받을 계획이다. ➜ Ab2-2
3. 수급개시 연령 이후에 받을 계획이다. ➜ Ab2-2
4. 공적연금을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 Ab4

Ab2-1) 귀하가 수급개시 연령 이전에 공적연금 수급을 신청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노후에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
2. 조기에 신청하여 오랫동안 받으려고
3. 수급 시작 연령까지 일하기 싫어서
4. 수급 시작 연령까지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5.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 같아서
6. 기타(_____)

Ab2-2) 귀하가 받게될 공적연금의 금액이 월평균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 예 (월평균 예상연금액 | 백만 | 십만 | 일만 | 천원 |) ➜ Ab2-3
2. 아니오 ➜ Ab4

Ab2-3) 귀하가 받게 될 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비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개인기준)	전혀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충족할 것이다.	충분히 충족할 것이다.
최소 노후 생활비	①	②	③	④	⑤
적정 노후 생활비	①	②	③	④	⑤

- **생활비** :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함.
- **최소 생활비** :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함.
- **적정 생활비** :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충족한 비용을 의미함

응답 후, Ab1에서 1 또는 4로 응답한 경우는 **Ab4)**로,
Ab1에서 3으로 응답한 경우는 **Ab3)**으로 가십시오.

Ab3) 귀하가 현재 수급 중인 공적연금 월 평균 금액은 얼마입니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월평균 연금액				

Ab3-1) 귀하의 공적연금 수급액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만족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Ab3-2) 귀하의 공적연금은 노후생활비를 얼마나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충족하지 못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충족한다.	충분히 충족한다.
최소 노후 생활비	①	②	③	④	⑤
적정 노후 생활비	①	②	③	④	⑤

Ab4) 귀하께서는 다음의 국민연금 제도 내용과 관련하여 알고 있었습니까?
※ 본 문항은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인식을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용	응답
국민연금은 당연히(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국민연금은 소득 수준별로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이 다르다.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한 연금을 받는다.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국민연금은 정상 수급 개시 연령보다 일찍 받으면 감액된 급여를 받는다.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국민연금은 정상 수급 개시 연령보다 늦게 받으면 증액된 급여를 받는다.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응답 후, **Ac. 기초연금**으로 가십시오.

Ac. 기초연금

조사원 참고사항

Ac1) 귀하는 현재 기초연금을 수급 받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Ac2

Ac1-1) 귀하가 수급하는 기초연금이 노후생활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도움이 되는 편이다 5. 매우 도움이 된다

Ac1-2) 귀하가 수급하는 기초연금 금액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만족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응답 후, **Ad.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가십시오.

Ac2) 귀하는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 Ac2-1 2. 아니오 ➜ Ac2-2

Ac2-1) 귀하가 현재 기초연금을 수급 받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격이 되지 않아서(소득 및 자산 등의 수급자격 요건 초과)
2. 수급연령(생일이 속한 달)이 되면 받을 예정임
3. 기타(_____)

Ac2-2) 귀하가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소득 및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신청 자격(소득 하위 70%)이 되지 않아서
2. 제도의 세부 내용(신청기간, 자격요건 등)을 잘 몰라서
3. 신청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혹은 신청하기 귀찮아서)
4.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5.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인식이 싫어서
6. 타 제도에서 충분히 지원 받고 있음(예: 기초생활수급 등)
7. 연령 미달로 인해서(만 65세 미만)
8. 별다른 이유 없음

응답 후, **Ad.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가십시오.

Ad. 노인 일자리 사업

조사원 참고사항

※ 노인일자리사업 : 만65세 이상 (일부 사업은 60세도 가능)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노인복지관, 사회적기업 등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임.

Ad1) 귀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예. 들어본 적이 있고 잘 알고 있다. ➔ Ad1-1
2. 예.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 Ad1-1
3. 아니오. 들어본 적 없다. ➔ 먼저 제도에 대해 설명 들은 후, Ad3

Ad1-1) 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1.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2. 주민센터 직원이나 복지기관을 통해
3. 가족(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친·인척 등)을 통해
4. 이웃이나 친구 등을 통해
5. 우편물, 집 근처의 알림판 등 홍보물을 통해
6. 기타 (_____)

Ad2) 귀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 Ad2-1
2. 아니오 ➔ Ad2-4

Ad2-1) 귀하께서 참여하셨던 노인일자리 사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유형	일자리 예시	참여여부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공공형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지역상생 활동 등	① 참여 ② 미참여	①	②	③	④	⑤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 서비스, 공공전문 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	① 참여 ② 미참여	①	②	③	④	⑤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① 참여 ② 미참여	①	②	③	④	⑤

Ad2-2) 귀하는 향후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Ad2-3) (Ad2-1)에서 모두 '2. 미참여'에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였음
2. 건강악화 등으로 시작 전, 본인이 그만 둠
3. 기타(_____)

응답 후, **Ad4)**로 가십시오.

Ad2-4) 귀하께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아서
2. 제도의 세부 내용(신청기간, 자격요건 등)을 잘 몰라서
3. 신청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혹은 신청하기 귀찮아서)
4. 일하는 것 대비 급여가 적어서
5.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소득 및 재산이 있어서
6. 본인의 자유 시간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
7.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8. 건강상의 이유로
9. 기타(_____)

Ad3) 귀하는 향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Ad4) 귀하는 정년 연장에 찬성하십니까?
1. 예 (만 _____ 세)
2. 아니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 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응답 후, **Ae. 노후준비서비스**로 가십시오.

Ae. 노후준비서비스

조사원 참고사항

· **노후준비서비스 :**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 모두가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영역에 대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

Ae1) 귀하는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예, 들어본 적이 있고 잘 알고 있다. ➜ Ae1-1
2. 예,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 Ae1-1
3. 아니오, 들어본 적 없다. ➜ 반드시 제도에 대해 설명 들은 후, Ae2

Ae1-1) 귀하는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1.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2. 주민센터 직원이나 복지기관을 통해
3. 가족(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친·인척 등)을 통해
4. 이웃이나 친구 등을 통해
5. 우편물, 집 근처의 알림판 등 홍보물을 통해
6. 국민연금공단(지사)을 통해
7 기타 (_____)

Ae2) 귀하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 Ae2-1　　2. 아니오 ➜ Ae2-4

Ae2-1) 귀하께서 이용하셨던 노후준비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종류	소개	이용 여부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온라인 진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노후준비 종합진단지를 활용하여 현재 노후준비 수준과 유형을 측정	① 이용 ② 미이용	①	②	③	④	⑤
오프라인 진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노후준비 종합진단지를 활용하여 현재 노후준비 수준과 유형을 측정	① 이용 ② 미이용	①	②	③	④	⑤
상담	노후준비 진단 결과, 취약한 부분에 대해 실천 과제를 설정하고 개선 방법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	① 이용 ② 미이용	①	②	③	④	⑤
교육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전문강사들이 노후준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주제별로 제공하는 맞춤형 강의	① 이용 ② 미이용	①	②	③	④	⑤
관계기관 연계	노후준비와 관련한 국민연금공단 외 기관의 전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연계 또는 소개	① 이용 ② 미이용	①	②	③	④	⑤
사후관리	상담시 설정한 실천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노후 관련 정보를 제공	① 이용 ② 미이용	①	②	③	④	⑤

Ae2-2) 귀하는 향후에도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를 갖고 계십니까?

1. 예 ➜ Ae2-3　　2. 아니오 ➜ Ae2-4

Ae2-3) 귀하는 어떤 노후준비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고 싶으십니까?

1순위		2순위	

1. 온라인 진단서비스　2. 오프라인 진단서비스　3. 상담서비스
4. 교육서비스　5. 관계기관 연계 서비스　6. 사후관리서비스

Ae2-4) (Ae2) 또는 Ae2-2)에서 '2. 아니오'에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이용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2.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잘 몰라서
3.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4.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접근성 측면에서 이용하기 어려워서
5. 기타 (_____)

Ae3) 귀하는 향후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를 갖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개인용 조사가 끝났습니다.

참고문헌

김재광·정상아, 2024,『통합 표본 가중치 설정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

통계청, 2022,『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전: 통계청.

한신실·유희원·홍정민·박주혜, 2023,『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조사표 평가틀 개발과 적용: 문항 노후화·무용화 문제를 중심으로』,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한신실·홍정민·박주혜, 2024,『제10차(2023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본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저자 약력

- **한신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現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홍정민**
  한양대학교 경제학 석사
  現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

- **박주혜**
  한성대학교 경제학 석사
  現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

조사보고서 2025-01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제10차(2024년도) 부가조사 기초분석보고서
- 중·고령자의 복지태도 및 사회보장제도 인식수준 -

2025년 12월 인쇄
2025년 12월 발행
발행인 : 김 성 주
편집인 : 한 정 림
발행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70(만성동)
TEL : 063-713-6776 / FAX : 063-900-3250

ISBN 978-89-6338-756-7(93330)